

N A T I O N A L  
H U M A N R I G H T S  
C O M M I S S I O N O F  
K O R E A A N N U A L  
R E P O R T 연 간 보 고 서

2 0 0 4





국가인권위원회

2004 연간보고서

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과 향후과제 등을 담아

발간하는 연간보고서입니다.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1부 | 총론 011

| 2부 | 위원회 주요 활동 019

제1장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활동 021

제1절 개 요 02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022

1.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022
2.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권고 040
3. 인권상황 실태조사 041
4. 청문회·토론회 등 운영 048
5. 기타 : 인권논문 공모 및 인권백서 발간 등 056

제3절 평 가 059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061

제1절 개 요 06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062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현황 062
2. 권리구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면전진정제도 및 지역순회  
인권상담 080
3. 질 높은 인권상담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마련 085

제3절 평 가 088

제3장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091

제1절 개 요 09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092

1.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 092

- 
- 2. 검찰·경찰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01
  - 3.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04
  - 4.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109
- 제3절 평 가 112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13

제1절 개 요 11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14

- 1. 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114
- 2. 평등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122
-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23
- 4.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26
- 5.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30
- 6.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33
- 7.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37
- 8.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140
- 9. 기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42

제3절 평 가 143

제5장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45

제1절 개 요 14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46

- 1. 인권교육의 장기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 146
- 2.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147
- 3.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 영역 인권교육 기반 조성 151
- 4. 인권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154
- 5. 월간 <인권> 발간 159
- 6.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 홍보 161

제3절 평 가 162

제6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165

제1절 개 요 16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66

- 1. 인권단체와 협력 강화 166



|                                    |     |
|------------------------------------|-----|
| 2. 세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및 국제협력체제 구축 | 172 |
| 제3절 평 가                            | 176 |

### | 3부 | 특별사업 179

|                     |     |
|---------------------|-----|
| 제1장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 181 |
| 제1절 추진 배경           | 181 |
| 제2절 대회              | 181 |
| 제3절 평가 및 향후 계획      | 183 |
| 제2장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185 |
| 제1절 개요              | 185 |
| 제2절 권고 내용           | 186 |
| 제3절 평가              | 188 |
| 제3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189 |
| 제1절 추진 배경           | 189 |
| 제2절 추진 내용           | 189 |
| 제3절 평가와 향후 과제       | 191 |
|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  | 193 |
| 제1절 추진 경과           | 193 |
| 제2절 개정안 주요 내용       | 194 |
| 제3절 향후 추진 계획        | 196 |
| 제5장 차별금지법(안) 제정 추진  | 197 |
| 제1절 추진 배경           | 197 |
|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98 |
| 제3절 평가 및 향후 계획      | 198 |
| 제6장 북한인권사업          | 199 |
| 제1절 추진 배경           | 199 |
| 제2절 활동 사항           | 199 |
| 제3절 평가 및 향후 계획      | 201 |

---

| 4부 |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 203

제1장 인권정책 업무의 기반 강화 및 적극적 수행 205

1. 차별시정 업무 등 확대 개편 205
2. 중·장기적 인권정책 방향제시와 인권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205
3.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 점검 206
4. 인권정책 업무기반 강화 206

제2장 상담 및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인권보호 기능 강화 209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의 효율성 제고 209
2. 인권침해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209
3. 차별시정 기능 확대·강화 210

제3장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213

1.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213
2. 공공기관 관계자 인권교육 지속적 추진 및 대상 확대 213
3. 인권교육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14
4.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214

제4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협력관계 활성화 217

1. 인권단체와 공동사업 내실화 217
2. 인권단체와 상시 협력체제 구축 217
3.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국제협력 추진 218
4. 국제협력 사업의 다양화 및 내실화 218

| 부록 |

1. 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21
2. 조직 및 정원 227
3. 예산 228
4. 위원회 활동일지 229
5.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서울선언문 249
6. 위원회 발간자료 259
7. 보도자료 262



## 표목차

|            |                           |    |
|------------|---------------------------|----|
| [표 2-1-1]  |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23 |
| [표 2-1-2]  | 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 26 |
| [표 2-1-3]  |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현황         | 41 |
| [표 2-1-4]  | 청문회 및 토론회 개최현황            | 48 |
| [표 2-2-1]  | 연도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 63 |
| [표 2-2-2]  | 경로별 상담·진정·민원 접수 현황        | 64 |
| [표 2-2-3]  | 경로에 따른 상담 실시 현황           | 65 |
| [표 2-2-4]  | 상담처리 결과 분석                | 65 |
| [표 2-2-5]  | 상담종결 사건의 유형별 현황           | 66 |
| [표 2-2-6]  |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           | 67 |
| [표 2-2-7]  | 인권침해 상담 내용별 현황            | 68 |
| [표 2-2-8]  | 차별행위 주체에 따른 상담 실시 현황      | 70 |
| [표 2-2-9]  | 차별행위 사유에 따른 상담 실시 현황      | 71 |
| [표 2-2-10] | 차별영역에 따른 상담 실시 현황         | 72 |
| [표 2-2-11] | 기타 상담의 유형별 현황             | 73 |
| [표 2-2-12] | 내담자의 지역별 분포 현황            | 74 |
| [표 2-2-13] | 내담자의 성별 분포 현황             | 75 |
| [표 2-2-14] | 경로에 따른 진정 접수 현황           | 75 |
| [표 2-2-15] | 진정사건 접수 분류 현황             | 76 |
| [표 2-2-16] | 진정사건 유형별 분류               | 77 |
| [표 2-2-17] | 진정인의 지역별 분포 현황            | 78 |
| [표 2-2-18] | 진정인의 성별 분포 현황             | 79 |
| [표 2-2-19] | 진정인의 연령별 분포 현황            | 79 |
| [표 2-2-20] | 경로에 따른 안내 및 민원 현황         | 80 |
| [표 2-2-21] |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 81 |
| [표 2-2-22] | 시설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 82 |

---

|            |                            |     |
|------------|----------------------------|-----|
| [표 2-2-23] | 면전진정 신청 사례 중 상담종결 사유별 현황   | 83  |
| [표 2-2-24] | 면전진정 신청 철회 사유              | 83  |
| [표 2-2-25] | 진정 관련 구금시설 순위              | 84  |
| [표 2-2-26] | 지역순회 인권상담센터 운영 성과          | 85  |
| [표 2-3-1]  |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92  |
| [표 2-3-2]  | 연도별·처리유형별 현황               | 94  |
| [표 2-3-3]  | 대상기관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94  |
| [표 2-3-4]  | 대상기관별 주요 조치내역              | 95  |
| [표 2-4-1]  |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 115 |
| [표 2-4-2]  | 차별행위 진정사건 영역별 진정 현황        | 116 |
| [표 2-4-3]  |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진정 현황        | 117 |
| [표 2-4-4]  |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처리 현황        | 118 |
| [표 2-4-5]  | 2004년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사건 조치내역 | 119 |
| [표 2-4-6]  | 기타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 142 |
| [표 2-5-1]  |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구성             | 148 |
| [표 2-5-2]  | 초·중등학교 교사대상 인권교육과정 운영 현황   | 150 |
| [표 2-5-3]  | 최우수상 수상자 명단                | 151 |
| [표 2-5-4]  | 강사단 강의활동 실적                | 151 |
| [표 2-5-5]  | 교정·검찰 분야 인권교육 운영 현황        | 152 |
| [표 2-5-6]  | 인권 영화 2 제작 현황              | 154 |
| [표 2-5-7]  | <여섯 개의 시선> 국제영화제 초청 현황     | 155 |
| [표 2-5-8]  | 감독별 애니메이션 제작 현황            | 157 |
| [표 2-5-9]  | 작가별 추진 내역                  | 158 |
| [표 2-5-10] | 월간 <인권> 주요 내용              | 160 |
| [표 2-6-1]  | 2004년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 현황       | 167 |
| [표 2-6-2]  | 2004년 시민실천프로그램 용역사업 추진 현황  | 169 |
| [표 2-6-3]  | 국제회의의 참가 현황                | 174 |
| [표 2-6-4]  |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 방문 현황   | 175 |
| [표 3-4-1]  |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 발의 현황  | 194 |

#### | 그림목차 |

|            |                       |    |
|------------|-----------------------|----|
| [그림 2-2-1] | 연도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 63 |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1부

## 총론





겨우내 얼었던 대지를 밀고 올라온 새싹처럼 갓은 산고(産苦) 끝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한 지 3년. 매운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위원회는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제법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됐다. 아쉬운 점도 적잖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성취를 이뤄낸 데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국민과 시민사회의 지지, 그리고 인권에 헌신하는 많은 이들의 열정과 의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인권이라는 마침표 없는 과정은 우리 위원회의 새로운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산고 속에 단련된 의지와 열정을 잊지 않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키우는 것이 도약의 열쇠가 될 것이다.

2004년은 인권 파수꾼으로서 위원회의 활동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빨라졌던 해라고 자평할 만하다. 인권의 영역이 확대되고 그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위원회의 ‘인권 그물’은 점점 커지고 촘촘해졌으며 대응은 더욱 신속해졌다.

이 같은 위원회의 성장은 무엇보다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의 정도에 비례한다. 위원회의 존재와 그 활동이 국민 인권의식의 향상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위원회에 부단한 발전과 노력을 요청하고, 그것이 다시 국민의 인권 현실 개선으로 이어지는, ‘상호 견인’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인권 관련 정책과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를 통해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신장시키려는 위원회의 역할은 2004년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위원회는 1년 이상의 내부 검토와 연구 작업을 통해, 제정 당시부터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50여 년간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눌러온 국가보안법을 “청산되어야 할 낡은 유물”로 선언했다.



또한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져 역시 태생적 원죄를 갖고 있으면서 이중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사회보호법에 대해서도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고 치료감호를 위한 대체 입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전근대적 현실’을 상징하고 있는 2개의 법에 대해 인권의 이름으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다.

그 외에도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권고 등 형사사법 제도에 관련된 의견표명,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차별 개선 권고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고, 군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권고, 공공기관의 방법 CCTV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권고 등 자유권에서부터 사회권, 또 새롭게 대두되는 정보인권 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책과 법령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중장기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작업은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내·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추진기획단의 치열한 논의와 25개 과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는 NAP 수립을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하였다.

2004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권침해와 차별로 인한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며 위원회를 찾아왔다. 진정사건 접수와 상담, 안내는 전년보다 15~40% 늘어나 출범 이후 계속된 급증 현상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양적 증가와 함께 상담 및 진정접수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위원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활동은 구금시설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 군, 기타 공공기관을 상대로 펼쳐졌다. 수용자 서신을 부당하게 열람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진술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검찰사무 규칙』 개정 권고, 부안 핵폐기장 강제 견학에 대한 자기운명결정권 침해 결정, 부당한 불심검문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2004년에

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권침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직권조사를 활발히 벌였다는 점이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사건, 공공도서관 등의 개인정보 침해사건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차별행위 관련 진정사건은 전년보다 8% 늘어난 총 389건의 진정이 접수돼 국민의 차별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위원회가 내린 59건의 차별 관련 권고 하나하나가 던진 파장은 컸다.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 응시연령에 남녀 차이를 둔 것,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관내 택시 운전 무사고 경력만 인정한 것, 동성간 성 접촉 사실만으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는 관련 규정, 청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제약하는 선거법의 수화통역 규정, 기간제 교원이나 색각 이상자에 대한 차별 등은 우리 사회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것들이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 권고나 실태조사는 일상화된 차별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4년엔 특히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중결을 유도하여 진정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조사 중 해결’ 사건이 급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위원회의 본래 취지에 적극 부합하는 방식으로, 위원회의 분쟁 해결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한편 위원회가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권위를 확보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 대해 다각적으로 인권을 교육·홍보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저변의 인권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학교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 영역의 인권교육 기반을 조성한 것은 눈에 띄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등 학교 인권교육 자료를 발간했으며 교사 연수를 통해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다소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인권’을 친숙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은 2004년에도 여러 방식으로 전개됐다.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소재로 한 인권 동화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권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여섯 개의 시선>을 통해 인권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위원회는 두 번째 인권 영화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인권 애니메이션을 완성하였다. 또 매달 발간되는 <인권>은 학교 도서관, 병원, 은행 등에서 일반 국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권 소식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2004년에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시민실천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 간담회, 업무설명회 등을 통해 인권단체와 교류, 협력하였다. 또한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라는 대규모 국제 인권행사를 치러 내면서 국제적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확인하는 큰 경험을 했다.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이 대회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권단체 대표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하여 국가인권기구와 NGO 간의 새로운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앞으로 서울 선언문에 명시된 서울 결의(Seoul Commitment)에 대한 후속작업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북한인권 관련 사업은 주로 재외 탈북자의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었다. 앞으로는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인권 및 북한 내 인권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05년, 위원회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그 변화는 위원회에 기회이면서 동시에 도전이다. 무엇보다 여성부 등 타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 기능이 위원회로 통합된다. 이 같은 위원회로의 일원화는 차별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역량에 대한 하나의 실험대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차별업무 일원화에 대비해 국가인권위원법시행령, 직제령 및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차별시정위원회, 차별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차별시정기구의 설치를 계기로 차별 관련 진정사건의 조사·구제는 물론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차별사유별 판단기준과 차별예방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2004년에 골격을 잡은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차별금지법은 위원회가 차별시정 업무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차별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사형제도, 군사법제도, 비정규직, 생명윤리법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해 실태조사와 토론회 등을 실시하는 등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05년에는 이에 대한 위원회의 모색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2005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정부정책의 입안과 집행, 그리고 모니터링이 NAP에 의해 점검되고 평가될 것이다.

인권 취약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는 물론 다수인 보호시설, 군대 등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더욱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아직도 적잖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원회는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정교화하고 기초교재 개발에 주력하여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2005년 과제 중의 하나다. 인권단체와 협력관계를 실질화·체계화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선정하여 입안 단계에서부터 함께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한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낮고 어두운 곳’으로 더욱 더 열심히 달려가는 한편,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연대하여 실질적인 ‘인권’의 향상을 이뤄낼 것이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2부

## 위원회 주요 활동

제 1 장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활동

제 2 장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제 3 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 4 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 5 장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 6 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활동

### | 제 1 절 | 개 요

인권정책의 개발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한 국가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운용과 배치, 활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했을 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힘과 자원을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 ‘인권정책’이며, 올바른 인권정책의 수립과 실시는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어 이를 정부에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권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는 각종 인권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논란이 첨예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의 경우 관련 전문가와 이해집단이 참석하는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04년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반인권법으로 지적되어 온 『사회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는 등 20여 개 법령에 대한 의견표명과 개선 권고를 하였으며,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납북자 가족의 인권침해 실태파악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권고,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권고 등 인권보호·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6건의 현안에 대해 권고하였다.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2004년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설정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조사에 집중되었으며, 법·제도·정책 개선 권고와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문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다.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인권 관련 지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인권논문 공모 사업과 우수논문 발굴사업을 실시하였고, 위원회 출범 이후 3년간의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현안을 종합적으로 조망한 <인권백서>도 발간하였다.

## | 제 2 절 | 주요 추진실적

### 1.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 포함)·제도·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제·개정 과정에 있는 법률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거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도록 관계 부처나 입법부에 권고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표명과 호주제에 대한 의견제출 등 23건의 의견표명과 권고 등을 한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는 총 27건의 인권 관련 법령과 정책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입법부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특히 오랫동안 위헌 시비와 개폐 논란이 그치지 않은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하였고,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개정령안,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여 구금시설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법령이나 정책, 제도 등에 관한 개선 권고는 많은 진정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상의 요건에 의해 각하될 수밖에 없는 진정에 대한 포괄적인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이나 군 의문사 관

런 정책 권고,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 권고 등이 그러한 예다.

2004년의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27건 중 6건이 해당기관에 의해 수용되었거나 일부 수용되었으며, 6건이 미수용되었고 나머지는 해당기관에서 검토 중이다.

[표 2-1-1]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2004.12.31. 현재)

|   | 권고 또는 의견표명                     | 내 용                                                                                                                           | 의결일자       | 해당기관    | 수용여부 |
|---|--------------------------------|-------------------------------------------------------------------------------------------------------------------------------|------------|---------|------|
| 1 | 아동복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법률안이 아동 및 보호자 등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폐기해야 함                                                                                        | 2004.1.26. | 보건복지부   | 수용   |
| 2 |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규율위반행위 및 징벌부과기준 등을 완화하고, 연속징벌을 금지하는 등 수정이 필요함                                                                                 | 2004.1.26. | 법무부     | 일부수용 |
| 3 |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등에 관한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계구사용 요건을 강화하고 사슬, 안면보호구를 폐지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함                                                                                      | 2004.1.26. | 법무부     | 일부수용 |
| 4 |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는 본연의 목적달성에 실패하였고 현재 보호감호의 집행 여건에서 볼 때도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통해 보호감호제도를 없애고 치료감호 등에 대한 대체법안이 마련되어야 함         | 2004.1.26. | 국회, 법무부 | 검토 중 |
| 5 |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 인터넷언론 선거계시관 실명제 도입 반대, 선거연령 하향조정,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의 개선이 필요함                                       | 2004.2.16. | 국회      | 일부수용 |
| 6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개정 권고         | 65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무공명예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제16조의2 조항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개정되어야 함                                        | 2004.3.17. | 국가보훈처   | 검토 중 |
| 7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개정 권고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제2항 관련 한 [부표] 중에 감리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경우 등급, 경력 및 실적평가시 차순위 점수로 평가한다는 감리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 산정기준은 나이에 근거한 차별이므로 개정해야 함 | 2004.3.29. | 건설교통부   | 미수용  |



|    | 권고 또는 의견표명                             | 내 용                                                                                                                                                              | 의결일자       | 해당기관    | 수용여부 |
|----|----------------------------------------|------------------------------------------------------------------------------------------------------------------------------------------------------------------|------------|---------|------|
| 8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03년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표명 내용 중 미수용된 부분을 반영하고 화성기 등의 소음기준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법률로 규정해야 함                                                                  | 2004.4.19. | 경찰청     | 미수용  |
| 9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인력에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이 포함되도록 개선해야 함                                                                                        | 2004.4.26. | 노동부     | 검토 중 |
| 10 | 소년원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분류수용 기준 세분화, 감호장비 최소 사용, 징계자의 면회·통신 제한 완화, 면회 제한 삭제, 퇴원·기퇴원의 요건내용 예시 등의 개선이 필요함                                                                                  | 2004.5.12. | 법무부     | 일부수용 |
| 11 |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거나 추가로 마련해야 함                                                                                                      | 2004.5.27. | 법무부     | 미수용  |
| 12 |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행정예고 대상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정책과 약식절차에 의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정책을 포함시키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 관련 규정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은 제외하며, 정책 관련 사항의 공표예외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국민들의 행정예고 청구 가능 규정을 신설해야 함 | 2004.6.9.  | 행정자치부   | 일부수용 |
| 13 | 공직후보자등의인물정보수집및관리에관한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공직후보자의 인물정보 구축목적·수록범위를 축소하고 인물정보의 타기관 제공에 관한 상세 규정을 마련해야 함                                                                                                       | 2004.7.5.  | 중앙인사위원회 | 수용   |
| 14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 권고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관련 별표11에서 품질관리원의 자격인정 범위를 기술자격자의 경우 '건설공사업무 수행'으로 규정하여 품질관리업무 수행만을 인정받고 있는 학·경력자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개정해야 함                                        | 2004.7.26. | 건설교통부   | 검토 중 |
| 15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성매매 예방교육과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책임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지원시설 등에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녀도 입소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함                                                                           | 2004.8.23. | 여성부     | 미수용  |

|    | 권고 또는 의견표명                         | 내 용                                                                                                                     | 의결일자        | 해당기관        | 수용여부 |
|----|------------------------------------|-------------------------------------------------------------------------------------------------------------------------|-------------|-------------|------|
| 16 |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국가보안법은 각 조항의 인권침해 소지로 인하여 국내외에서 폐지여론이 높은 악법이므로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전면 폐지되어야 함                                                | 2004.8.23.  | 국회의장<br>법무부 | 검토 중 |
| 17 | 실종아동찾기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유전자검사 대상 아동의 범주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유전자검사 결과 관리, 유전자정보 보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항이 법률로 규정되어야 함                                      | 2004.9.6.   | 보건복지부       | 검토 중 |
| 18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보호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보완이 필요함                                                      | 2004.10.8.  | 법무부         | 검토 중 |
| 19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관련 규정을 위원회의 NEIS 관련 권고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학교생활기록 및 신체검사에 관한 자료 작성, 관리와 관련하여 학생의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2004.10.11. | 교육<br>인적자원부 | 검토 중 |
| 20 | 소년원법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다른 보호소년의 범법·규율위반행위를 직원에게 알릴 것을 보호 소년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퇴원·가퇴원의 대략적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며 수용기간 또는 수용일수 산정시 출원일을 산입하도록 개선해야 함 | 2004.10.11. | 법무부         | 일부수용 |
| 21 | 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인척을 가족의 범위로 하고 자녀의 성과 본 변경제도를 신설하며 친양자제도 도입시 친양자의 연령제한을 삭제해야 함                                 | 2004.10.25. | 국회          | 검토 중 |



[표 2-1-2] 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2004.12.31. 현재)

|   | 권 고                                         | 내 용                                                                                                                                    | 의결일자       | 해당기관              | 처리결과 |
|---|---------------------------------------------|----------------------------------------------------------------------------------------------------------------------------------------|------------|-------------------|------|
| 1 | 군 의문사 관련 정책 권고                              | 과거 군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군 의문사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2004.2.16. | 국회<br>국방부         | 검토 중 |
| 2 |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br>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br>련 정책 권고 | 방법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방법CCTV에 대한 법적근거를 갖추어야 함                                                          | 2004.4.19. | 국회<br>행정자치부       | 검토 중 |
| 3 | 납북가족 관련 특별법 제정<br>권고                        | 납북자 가족들이 당한 인권침해의 실태파악과 그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위<br>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 2004.4.26. | 국회의장<br>국무총리      | 검토 중 |
| 4 |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br>권고                          |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대우,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 차별적<br>지위가 개선되어야 함                                                                   | 2004.5.24. | 교육인적<br>자원부       | 검토 중 |
| 5 |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2차<br>피해자화 관련 권고                |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br>형사절차 진행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받<br>을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 의료지원 서비스체<br>계를 강화하며, 수사 담당자·공판 검사 등의<br>전문성 함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2004.5.27. | 경찰청<br>여성부<br>법무부 | 일부수용 |
| 6 | 외국인 입국심사제도 개선에<br>대한 권고                     | 입국심사 결과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이 부합하지<br>않은 것으로 최종판단을 받은 외국인의 법무부<br>장관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이를 해당<br>외국인에게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br>련해야 함                  | 2004.5.27. | 법무부               | 미수용  |

## (1) 정치 및 사회생활 영역에 관한 주요 권고 및 의견표명

### 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국가보안법은 제주도 4·3사건과 여수·순천 군(軍)봉기사건을 계기로 1948년 12월 1일 제정·공포된 비상조치법이었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 소지로 논란을 빚었고, 법 운용과정에서도 반민주성과 빈번한 인권침해 사례 때문에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유엔 인권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수차에 걸쳐 우리 정부에 그 개폐를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청하는 40여 건의 진정과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2003년 1월 7일 전원위원회 워크숍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체계적·심층적 검토를 시작하였다. 위원회는 태스크포스팀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2004년 8월, 국회와 법무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

자세한 권고 내용 등은 제3부 특별사업(185쪽)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 나. 집회 및 시위 관련 의견표명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3년 11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 중 집회신고기간, 집회취소통지, 주요도로행진 등 주요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이중 일부만 수용되었다.

2004년 1월 법률의 개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그대로 담겨 있어 위원회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재차 표명하였다. 특히 시행령에서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은 집회 또는 시위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이어서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정도이고,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자문을 담당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소음기준과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2004년 9월 개정안을 공포·시행하였다.



#### 다.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그 자체가 인권의 고유한 내용이자 인권의 보편적 실현과 실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다.

위원회는 2004년 총선 출마 예정자의 진정과 시민단체의 의견표명 요청을 계기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과 같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검토하여 표현의 자유, 참정권, 공무담임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였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 중 인터넷 언론사 선거 게시판 실명인증제 도입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선거권 부여 연령을 현행과 같이 20세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 정도와 국민의식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인 정치인의 진출 기회 보장과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선거운동 및 선거후보자 선출 등 정치관계법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기하였다.

후원회 설치,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등 일부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위원회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향후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정치관계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

#### (2)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가.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전형적인 보안처분 제도로 1980년 신군부의 집권과정에서 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이중처벌금지 위반 여부 및 피보호감호자 처우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위원회는 2003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보호감호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보호감호제도는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태스크포스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국회와 법무부에 폐지를 권고하였다.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결정에 대한 브리핑 (2004.1.13.)

보호감호제도는 본래 상습적이거나 특별히 위험성 있는 범죄인을 대상으로, 응보형 제도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나 오늘날 형벌과 그 본질에 있어 실질적 차이가 없고 형법에 누범·상습범에 대한 가중 규정이 있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법원이 아닌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에서 보호감호에 대한 가출소, 감호면제 등을 결정하고 있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규정 등도 결여되어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도 크다. 더구나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의 열악한 처우 및 생활실태는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준비한다는 사회보호법의 본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

결국 현행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본래의 의미를 이미 상실하였고, 현재 보호감호 집행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제도의 개혁에도 한계가 있어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치료감호에 대한 대체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 나.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권고

위원회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수사·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2차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경찰청, 여성부에 각각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검토 결과,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공판 담당기관의 잦은 출석 요구로 인한 의사들의 성폭력 피해자 진료 거부 △수사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현행 형사 절차상 수사·공판 관련 정보의 소외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의료지원센터와 전담 의료기관의 실효성 있는 운영 대책을 마련하고, 증인 출석 요구 등을 우려해 의사들이 성폭력 피해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성폭력 피해자 담당 의사를 조사할 때에는 참고인 서면진술서를 우선하도록 여성부와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수사·공판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그 보호자 등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사법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서마다 아동 성폭력 관련 전문 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수사시 범죄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제반 권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 다.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의견표명

수용자 징벌제도 개선에 대한 위원회의 세 차례에 걸친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개정안과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위원회 검토 결과, 위 개정안들은 유엔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이나 헌법의 기본권 보장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먼저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개정안은 징벌 사유를 필요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최장 금지기간을 축소하며 징벌의 참작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징벌위원회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외부인사를 반드시 위촉하되 그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금지 중이라 해도 수용자의 집필권과 운동

권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개정안도 계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용요건과 종류를 제한하고, 사용할 때에는 수용자의 상황을 잘 관찰하여 일시 중지·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더욱 확대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구금시설 관련 규칙은 수용자의 일상생활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것으로 다른 어떤 법령보다 그 적용 결과가 즉각적이므로 제·개정 과정에서 수용자의 인권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가 위원회의 의견을 일부만 수용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법무부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수사관행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경우에 그 통지기한을 명확히 하고,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새로 제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등에 맞추어 13세 미만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그 보호자 및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 신문 등을 위한 조사실 설치, 성매매 피해 여성 조사시 지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 고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마. 수용 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수용 소년에 대한 가혹한 처분을 배제하고 보호적·교육적·교화지향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된 『소년원법』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은 감호장비의 사용요건 및 한계를 명확히 하며 징계자의 면회와 통신을 허용하여 소년의 정신적 건강을 배려하고 분류수용의 기준을 명확히 규



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행규칙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보호 소년에게 다른 보호 소년의 범법·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보호 소년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2004년 10월 14일 위원회는 법무부에 이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고, 법무부는 행정관리 목적의 감호장비 사용과 면회 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위원회의 의견을 부분 수용하였다.

#### 바.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

외국인 보호시설 내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법무부는 보호 외국인에 대한 계호업무에 관한 사항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피보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인 강제퇴거의 대상이며, 도주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아닌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피보호자의 법적 지위에 근거할 때, 보호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보장하되 그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명확한 규정과 내용의 적정성이 요구되는데, 개정안은 행형법상의 수형자나 미결수용자보다 보호 외국인의 기본권을 더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보호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의 요건과 종류, 신체 및 소지품 검사를 필요불가결한 경우로 제한하고 면회, 서신왕래 등은 최대한 보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3)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권고

#### 가. 군 의문사 관련 정책 권고

군 의문사와 관련하여 2003년 9월까지 54건의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나, 대부분의 사건이 군 수사가 진행·종결되었거나 진정 원인 발생 후 1년 이상이 경과되는 등 위원회법상의 각하요건에 해당되었다.

위원회는 1998년 이후 군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자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있고, 2002년에는 50%에 이른 점과 2002년 이후 군기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가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추월하였으며 부대 내 문제로 자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사망원인에 대해 의혹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주목하여, 진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군 의문사는 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잠정적인 사망원인과 사망구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7일 이내에 서면보고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군수사관이 12~18시간 안에 촉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군 의문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규정을 폐지하여 군검찰의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유가족에게 수사내용을 가능한 한 공개하며, 사체 검안·부검시 민간 전문가가 원칙적으로 입회 또는 참가하게 하여 군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군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내사망사고발생시처리지침』을 보완·개정하여 자살 동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며 이 지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하는 한편, 과거 군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였다.

#### 나. 「납북가족관련특별법」 제정 권고

납북자가족모임은 가족의 납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를 당하고 연좌제로



인해 공직 진출과 출국이 제한되는 등 개인의 생계 및 신상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 진정은 진정 원인 발생 후 1년 이상이 경과되어 위원회법에 따라 각하되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납북자 가족에 대한 과거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청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사 결과, 납북자 가족들은 일상생활에서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출국제한, 군 입대 후 자대배치에서 전방배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했고 연좌제 적용이 두려워 국가시험이나 사관학교 등에는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등 공직 진출에도 제한을 받아왔다는 증언을 수집할 수 있었다.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 사례는 대부분 1960~70년대에 발생하여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고, 그동안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납북자 가족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04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정부 차원에서 납북자 가족의 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인권침해가 명확한 부분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4)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호 및 차별 시정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가. 아동 인권 관련 의견표명

보건복지부가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집회참가를 제한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폐기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동학대 및 유기나 방임에 이르지 않고 아동을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에 참가시킨 보호자의 행위까지 처벌하고, 아동에게 집회 및 시위 참가를 강요한 자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아동복지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안을 폐기하였다.

#### 나.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의견표명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하여 위원회는 장애인 고용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정부 부문에서 법정 의무고용률을 적극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직종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을 포괄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장애의 정도와 다양함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하다는 차별의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향후 이의 근거가 되는 법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 중 장애인 직업재활 등을 위한 전문인력에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직업담당교사 등 자격검증을 거친 인력을 포함시켜 장애인의 입장과 이해가 더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다.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차별 개선 권고

대학 시간강사 제도는 본래 특수하고 한정된 범위에서 타교 교수나 기타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지만 전임교수를 채용해야 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되어 현재 대학 강의의 상당 부분을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다.

시간강사가 전임교원 임용 전 수련과정의 일부로 인식되던 과거와는 달리 하나의 직업군이 되고 있으나 대학 내에서는 이들의 지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 없이 일용잡급직으로 분류하고, 고용시 명시적인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시간강사는 전임교원에



비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 같은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수도 전임강사의 1/5 이하 수준으로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위원회는 시간강사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임교원에 준하는 합리적 대우를 통하여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04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 시간강사의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서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라. 나이에 의한 차별 시정 권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보상기준을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이 아닌 ‘나이’에 두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은 감리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차순위 점수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 두 법령이 합리적 이유 없이 보상 여부나 업무수행 능력을 나이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 마. 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4년 6월 『민법』과 관련하여 법무부, 이경숙 의원, 노회찬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각각 국회에 상정되었다. 민법 중 개정법률안의 각 안은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법조항을 정비하고 자녀의 성 변경제도 및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와 향상에 바람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안을 비교 검토한 위원회는 △가족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국민 정서 및 다른 법

령을 고려하여 가족의 범위를 일정 범위의 혈족 및 인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 자녀의 성(姓)변경제도와 어머니의 성 취득제도,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되 친양자가 될 자의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고, 현행법상 성(姓)불변의 원칙 때문에 이혼·재혼 가정의 자녀가 겪고 있는 고통이 감소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바. 기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은 품질관리원의 자격요건을 학·경력자에 비해 기술자격자에게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차별을 시정하라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외국인 입국심사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은 입국불허 결정을 받은 외국인에게 합리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지 않아 외국인이 부당한 입국불허 처분을 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외국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 (5) 사생활 영역의 보호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가.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운영 관련 권고

2002년 12월 서울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논현동 일대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5대를 시범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위원회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에 주목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강남구 일대에는 효율적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명목으로 230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데 그 장비의 성능이 점차 향상되고 있어 촬영되는 사람들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설치 지역 주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의 설치·운영은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에서 정한 적법 절차의 원칙과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관하여, 그 설치·운영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하였다.

#### 나. 「공직후보자등의인물정보수집및관리에관한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중앙인사위원회는 개정 「국가공무원법」의 위임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등의인물정보수집및관리에관한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이 제정안이 공직후보자의 인물정보 구축 목적과 범위를 국가공무원법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해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수집된 정보의 타기관 제공에 대한 아무런 통제조항이 없어 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물정보 구축 목적과 그 범위를 축소하고 인물정보를 타기관에 제공할 경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견표명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과 관련하여 학생 정보인권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위원회는 2004년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종아동찾기지원법」 제정안과 「교육기본법」 등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실종아동찾기지원법 제정안의 골자는 실종 아동의 조기발견과 신분확인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보호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아동, 검사를 원하는 입양아동 등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계된 대부분의 아동을 유전자검사 대상으로 하여 그 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유전자검사 결과 관리, 유전자정보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원회는 아동의 개인정보 인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유전자검사 대상을 분명하게 밝혀 검사 대상 범주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유전자검사 결과 관리, 유전자정보 보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9월 7일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학생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보건법」의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이미 NEIS와 관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가 학교 밖으로 집적·유출·이용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입·진학과 관련한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반대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의 개정안은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책임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이에 따른 정보의 작성·관리의 책임을 학교장의 책임으로 각각 규정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된 정보에 대한 임의적인 접근권까지 허용한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이에 위원회는 NEIS 관련 권고에 부합하도록 학생정보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과 정보 유출 금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규정을 보완하도록 의견을 표명하였다.



## 2.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권고

오늘날 각종 국제인권규약과 조약 등 국제인권기준은 각국이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한 나라가 다양한 국제인권기준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는가는 그 나라의 인권상황을 측량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고 있다.

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정부에 대해 각종 인권 관련 국제규약 및 조약의 가입과 준수를 촉구하고, 이미 비준된 조약에 대해서는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이는 인권 관련 국내법과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함이다.

한편,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는 2004년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를 검토하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일반적 지침과 제1차,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 견해 등을 토대로 정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행정부의 소관 법령 및 정책 위주로만 기술되어 전체적인 인권 이행상황의 조망이 어려운 점, 제2차 정부보고서 심의 때 지적된 사항이 해결 또는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특히 보고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법원의 판례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규약의 효력이 국내법보다 사실상 우선한다고 기술하고 제·개정된 법령의 실제 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누락하고 있는 등 우리 사회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장 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부의 관련 정책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2004년 2월 23일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법무부는 정부보고서를 2005년 초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 3.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위원회 사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법령·정책 관련 권고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다.

2004년 위원회는 각종 인권 문제에 관하여 총 25건에 달하는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주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이 중 22건은 완료되었으며, 3건은 2005년 연계사업으로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표 2-1-3]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현황

| 연번 | 과 제 명                                                          | 연구 수행자            | 비고 |
|----|----------------------------------------------------------------|-------------------|----|
| 1  |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현황조사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완료 |
| 2  |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4대 사회보험) 기초현황조사             | 중앙대학교             | "  |
| 3  |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권 기초현황조사                       | 한국도시연구소           | "  |
| 4  |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강권 기초현황조사                       | 서울대보건대학원          | "  |
| 5  |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3권) 기초현황조사      | (사)국제노동법연구원       | "  |
| 6  |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개별적 노사관계 :노동조건, 기업복지) 기초현황조사 |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 "  |
| 7  |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권 기초현황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 "  |
| 8  |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권 기초현황조사                       | 밝은노후를만들어가는 사람들의모임 | "  |
| 9  |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권 기초현황조사                       |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      | "  |
| 10 |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  |



| 연번 | 과 제 명                                 | 연구 수행자         | 비고   |
|----|---------------------------------------|----------------|------|
| 11 |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 12 | 집회·결사의 자유 분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    |
| 13 | 양심·종교의 자유 분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 〃    |
| 14 | 언론자유와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적 쟁점들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    |
| 15 | 피의자, 피고인, 증인, 참고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 16 | 인터넷 및 정보통신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서울산업대학교        | 〃    |
| 17 |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    |
| 18 | 외국인 분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 (사)한국조사연구학회    | 〃    |
| 19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초안 개발   | 서울대학교          | 〃    |
| 20 | 원폭피해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조사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    |
| 21 | 문화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와 정책연계 방안  | 문화연대           | 〃    |
| 22 | 차별금지법이 국가의 재정부담에 미치는 효과               | 한국노동연구원        | 〃    |
| 23 | 환경권 분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     | 녹색연합           | 진행 중 |
| 24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 실태조사   | 일다             | 진행 중 |
| 25 | 국민인권의식조사                              | 한국리서치          | 진행 중 |

####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2004년의 실태조사는 NAP 권고안에 포함될 영역별 현황과 실태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NAP 관련 실태조사는 자유권·사회권·사회적 소수자 및 차별 분야에서의 현행 법령·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제도 및 유엔 등의 권고사항, 관련 전문가들의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5년간 정부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과제별로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4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가. 자유권 영역 기초현황 조사

자유권 영역의 실태조사는 형사사법 절차상의 범죄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증인, 참고인, 구금시설 수용자, 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터넷 등 정보통신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분야에서 실시되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범죄 그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언론의 취재 공세와 보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공판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 인권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각 형사사법 절차상의 개선방안과 범죄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제도 도입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수용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용방법, 교육과 작업, 의료, 외부교통, 징벌·계구사용, 권리구제 등 전반적인 수용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소년 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 방안도 검토하였다.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각종 독소조항과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경찰 당국의 법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옥외 집회에 대한 신고의무 등 여러 규제조항, 집회와 시위에 대한 언론의 왜곡된 보도 실태와 문제점, 경찰의 과도한 개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양심·종교의 자유 분야는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를 고려하지 않는 중·고등학교 추첨 배정, 기소유예 처분시 반성문 제출 강제 등 현행 제도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대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권의 적절한 비교 형량, 인격권과의 조화, 접근권 보장을 위한 언론 관계 법규 재정비 등을 검토하였다.

인터넷 및 정보통신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는 인터넷 등급제, 인터넷 실명제, 검열과 통제 관련 기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



한 원칙의 강화,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스팸메일 규제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나. 사회권 영역 기초현황조사

사회권 영역에 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사회보장,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에 대한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보장 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4대 사회보험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급자 선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판별기준, 재산기준 및 소득환율의 설정 등 현행 제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실태조사는 각 사회보험의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특성에 따른 급여자격과 수준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 문제점과 각국의 관련 실태를 고찰하였다.

주거권 관련 실태조사는 강제철거 및 퇴거, 주거 빈곤가구, 홈리스 등 적절한 주거수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부 분야별 쟁점을 정리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체계 정비 등 기존 주거복지 정책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건강권에 대해서는 의료보장이 취약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급여 범위, 보험료 산정기준,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등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노동권에 대해서는 단결권, 단체행동권, 교섭권 등 노동3권에 대한 집단적 노사관계와 노동조건, 기업복지에 대한 개별적 노사관계로 나누어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자유로운 단체 설립과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절차, 파업권의 실질적 보장, 부당노동행위로부터의 보호, 외국인·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철폐 등의 문제영역에서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

들을 고찰하였다.

개별적 노사관계의 과제는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고용에 대한 차별금지, 노동시장에서의 평등한 결과를 중시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 도입 등 적극적 고용정책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권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탈북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평등한 교육기회, 폭력이나 참여권 등 각급 학교에서 제기되는 일상적인 인권문제,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제공 등 교육 관련 분야별 현황을 조사하고,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 권리는 아직 적극적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태조사는 문화권을 문화자유권, 문화평등권, 문화참여권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쟁점들을 검토하면서 개선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 다. 사회적 소수자 및 차별영역 기초현황 조사

여성·장애인·연령·학벌·학력 등 차별영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이어 2004년에는 노인·아동·외국인·성적 소수자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노인인권은 주거·건강·교육·소득 등의 영역에서 노인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노인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인권은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별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아동과 관련한 인권정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인권 분야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이주여성, 외국국적 재외동포, 난민, 화교 등 각각의 대상이 처한 인권상황과 우리 사회 전반의 인종차별 실태를 살피고,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선안 마련 및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1997년 영국에서 체세포핵 이식기술로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이래, 생명윤리 관련법의 제정 및 강화 필요성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왔고, 국내에서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은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2004년 3월부터 생명윤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생명윤리법의 문제점 파악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바람직한 생명윤리법의 개정방안과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의 초안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태스크포스팀의 활동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권의 관점에서 생명윤리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3) 원폭 피해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 실태조사

위원회는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원폭 피해자 2세에 대한 기초현황과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통해 위원회는 원폭 피해자 2세의 현황과 건강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원폭 피해자의 건강과 의료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좀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 조사는 △원폭 피해자 1세와 2세를 대상으로 한 건강 관련 우편 설문조사(1세 1256명, 2세 1226명)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진단(1세 223명, 2세 49명) 및 심층 인터뷰(2세 47명) △원폭 피해와 관련된 일본과 한국의 지원제도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피해자 자신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조사 결과, 생존해 있는 원폭 피해자 1세대들은 피폭에 따른 후유증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그 자녀인 2세의 경우에도 1세의 피폭 후유증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조사에 응한 원폭 피해자 2세는 원폭 피해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2세 이후에까지 미칠 건강상의 피해 문제에 대해 더욱 종합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폭 피해자의 건강권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 (4) 「차별금지법」이 국가 재정부담에 미치는 효과

위원회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2005년 이의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차별해소의 인권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및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아직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특히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정부 및 민간 부문에 미칠 영향, 주로 재정적인 측면의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위원회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차별금지법이 국가의 재정부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위원회는 차별의 개념 정의와 유형화를 시도하고 차별금지법안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함으로써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수렴하고자 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구체적으로 추계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추상적인 논란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보고서는 특히 성·장애·고용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정부 재정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고용 평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에 수반되는 재정부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추계된 재정부담은 공공부문의 비용, 그중에서도 직접적인 비용만을 다루었고, 차별금지법과 관련이 있다 해도 다른 법이나 정책에 의해 이미 예정되어 있는 비용은 제외했다. 연구결과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둘러싼 논의를 충실하게 하고 이후 법의 실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4. 청문회·토론회 등 운영

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을 조사·검토하면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관계자가 모여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공개,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열고 있다.

2004년 위원회는 검토 중인 법령·제도 및 정책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총 15건의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2-1-4] 청문회 및 토론회 개최 현황

| 연번 | 주 제                              | 일시         | 토 론 내 용                                                   |
|----|----------------------------------|------------|-----------------------------------------------------------|
| 1  |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 2004.3.18. |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와 근로조건<br>·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조건<br>· 개선방안       |
| 2  | 군대내 성폭력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 2004.4.8.  | · 군부대 방문 성폭력 및 성의식 관련 설문조사의 의미<br>· 군대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등 |
| 3  |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                  | 2004.4.28. | · 국제 인권규범<br>· 미국, 일본 등 외국 사례<br>· 사형제도 개선방안              |
| 4  | 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 2004.5.11. | · 군교도소 수감자 대상 사법절차상 인권침해 현황 설문조사 결과<br>· 군사법제도 개선방안 등     |
| 5  | 국가보안법 공청회                        | 2004.5.20. | · 국가보안법 존치론 및 부분개정론 입장에 대한 검토와 논의 등                       |

| 연번 | 주 제                           | 일시          | 토 론 내 용                                                            |
|----|-------------------------------|-------------|--------------------------------------------------------------------|
| 6  | 재외 탈북자의 인권현황과 과제 공청회          | 2004.6.30.  | · 재외탈북자의 현황과 지위, 그리고 인권보호 과제, 정부·비정부기구의 협력방안 등                     |
| 7  | 유전자정보 보호 관련 토론회               | 2004.9.22.  | · 유전자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대책 등                                          |
| 8  |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청문회 | 2004.10.27. | · 국제인권협약의 국내 법률과의 관계<br>· 국제인권협약의 '헌법적 지위'와 관련한 대안 등               |
| 9  | 지문 등 생체정보 이용, 무엇이 문제인가?       | 2004.11.23. | · 생체인식기술의 활용 현황 및 인권적 쟁점<br>· 생체정보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제방안 등          |
| 10 | 영·유아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호·향상을 위한 토론회  | 2004.11.29. | · 장애아동의 학령전 조기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br>· 유상 조기교육기관의 현황 및 인허가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
| 11 | 법정장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 2004.11.30. | · 인권의 관점에서 본 법정장애제도<br>·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 및 향후 정책방향 등                  |
| 12 | 학령기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호·향상을 위한 토론회   | 2004.12.7.  | ·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의 현황과 과제 등                                             |
| 13 |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보장을 위한 토론회 | 2004.12.16. | · 장애인 고등교육, 평생교육, 야학의 현황과 과제                                       |
| 14 | 탈북자 인권 토론회                    | 2004.12.22. | · 재외탈북자의 인권실태와 기획탈북의 문제<br>· 중국, 미국의 탈북자 정책 등                      |
| 15 |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 2004.12.29. | ·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 (1) 청문회

### 가.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

2003년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위원회는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적 인권규범, 유럽·미국·일본 등 외국의 사형제도와 폐지운동의 전개상황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피해자 증언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층인 언론종사자, 법관, 변호사, 국회의원 등의 50~60%, 시민단체 상근자와 교정위원의 80% 이상이 사



형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경우 65.9%는 사형 존치에 찬성하고 있으나, 사형 존치의 근거인 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의 구체적인 설문에서는 이와 상이한 대답을 하고 있고, 사형이 적용되어야 할 범죄의 범위 축소와 생명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문회에서는 구미 유학생간첩단사건(1985년)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 4개월간 사형수 생활을 한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하는 한편 △국제적 인권규범과 유럽의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당시 사회적 배경과 상황 △미국과 일본의 사형제도의 역사와 현황 △사형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관련 단체, 법무부 등 관계기관, 법조인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나.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국제인권협약과 관습법은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국제인권법이 국내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학계, 법조계와 실무 전문가 등이 참석한 청문회에서는 △재판과정에서 국제인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관한 토론회

권법의 국내이행 △헌법에 규정된 국제인권법의 지위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입법·행정·사법부의 역할과 이행방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행방안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위원회는 국제인권법이 국내에서 법적 규범으로서 구속력을 가지고 국민의 인권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2) 토론회

### 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2004년 3월 1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위원회가 2003년 7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경우, △규모가 약 161만 명에 달해 민간 부문에 비하여 적지 않은 점 △공공부문 노동자의 1/3이 OECD 기준상의 저임금계층이며 그중 비정규직이 72.9%에 달하는 점 △특히 여성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나. 군대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위원회는 2004년 4월 8일 ‘군대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가 2003년부터 진행한 ‘군대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 자리에서는 실태조사 과정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들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군대내의 성폭력이 일상적 문제이고 가해자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81.7%에 달할 정도로 성폭력 피해가 악순환되고 있으며, 주로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군대의 위계성과 관련이 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이루어졌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는 군대내 성폭력을 군기위반 사고가 아닌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라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 전문적인 신고접수 기관 및 전문 상담인력 배치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마련, 이를 위한 국방부의 별도 예산 할당, 민간 외부 전문가와의 협조체계 구성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 다. 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위원회는 2004년 5월 11일 ‘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2003년 9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울산대학교와 공동으로 군교도소 수용자 114명을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 검찰수사와 재판 과정, 군교도소 수감생활 등 군사법제도의 운영 전반에 걸쳐 인권침해 및 권리보장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군 수사과정에서의 고문·협박·폭행 등의 인권침해 문제와 군사법제도 중 지휘관 사면권의 일종인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자의적 운용 문제 등에 대하여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책 마련, 군검찰권의 강화와 헌병 수사권의 견제를 통한 군 검찰제도의 개선,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폐지 등의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 라. 유전자정보 보호 관련 토론회

유전자정보는 생명과학의 영역뿐 아니라 개인 식별이 가능한 특성을 이용한 실종자의 확인과 범죄의 수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아직 발현하지 않은 유전적 질병 소지 여부 등 대부분의 경우 자신도 알 수 없는 유전적 특

정까지 파악되고 관리될 우려가 있어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차별이 발생하는 등의 역기능을 수반한다. 이에 위원회는 유전자정보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유전자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2004년 9월 22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유전자정보의 법적 보호 △유전자정보 이용현황과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관련 기관, 인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국가기관의 유전자 이용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관련한 법률이 부재하여 내밀한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있으므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나 국가기관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위원회는 관련 법령, 정책 등 유전자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안을 검토할 때 토론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 마. 지문 등 생체정보 이용에 대한 토론회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대학 등에서 개인 신원 확인을 이유로 지문인식기를 설치함에 따라 설치기관과 이용자 간에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어 위원회는 지문 등 생체정보 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지문 등 생체정보 이용현황, 생체정보 이용과정에서 우려되는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적 기술 영향평가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제시되었다.



토론회 결과는 지문·홍채·유전자 등 각각의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 가이드라인 작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 바. 법정장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위원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을 법정장애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에 대하여 이 사안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한정되지 않고 법정장애제도로 확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4년 11월 30일 ‘법정장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법정장애제도와 관계, 법정장애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법정장애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법정장애 개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였으나, 확대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토론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법정장애제도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사. 장애인 교육권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위원회는 2004년 11월과 12월에 장애인 교육권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장애인복지발전계획이나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장애인 교육권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교육기회와 교육환경, 교육 지원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전지역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의 입학 거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 교육 관련 법·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장애인 교육권이 그 자체로서 기본적 인권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생존권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하여 특수교육진흥법을 비롯한 현행

관련 법령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생애주기별 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1차 토론회는 영·유아기 장애아동, 2차 토론회는 학령기 장애아동, 3차 토론회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을 주제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학부모, 장애 학생, 교사를 비롯한 교육 담당자, 관련 기관의 정책 담당자 등 당사자들이 참석하여 각 교육과정의 장애인 교육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토론회 결과를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며,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사업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 (3) 공청회

#### 가. 「국가보안법」 관련 공청회

위원회는 2004년 5월 20일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법 적용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소지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분 개정을 통한 존치냐 아니면 전면 폐지냐를 놓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온 과제다.

공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부분 개정을 통해 이제까지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개정론과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악법이니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전면폐지론 입장을 가진 토론자들이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100여 명이 넘는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전개된 공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적용상의 반인권성 및 남북관계개선 등에 비추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이 집중 부각되었다.

#### 나.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4년 8월 3일 현행 신상공개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2회



이상의 실행 전과 경력을 가진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사진과 현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정보등록 및 제공 제도의 도입을 위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현행 신상공개제도와 개정안의 세부정보등록 및 제공 제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청소년의 성보호 강화라는 공익과 신상공개 대상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사익간의 조화로운 대안을 찾고자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는 헌법, 형법, 범죄심리학, 성폭력 상담, 갱생보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성범죄자 얼굴공개의 필요성 여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라는 주제 발표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준으로 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문제점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해 활발한 지정 토론을 벌였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개정안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청소년의 성보호와 신상공개 대상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문제의 조화로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5. 기타 : 인권논문 공모 및 인권백서 발간 등

### (1) 인권논문 공모

위원회는 신진 연구자의 인권분야 연구를 장려하고 인권 관련 지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4년 인권논문 공모사업과 우수논문 발굴사업을 실시하였다.

대학(원)생, 인권시민단체 관련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논문 공모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배제와 인권 딜레마에 관한 연구 : 사회적 배제와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한 노숙인의 인권> (김수영,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강원도 사

북의 석탄산업합리화 과정의 보상체계를 통해서 본 광부의 인권 : 사회문화권으로서의 인권 개념 형성을 위한 전망> (이금숙 외 공저, 강원대학교) 두 편이佳作으로 선정되었다.

우선 김수영의 논문은 보편적인 인간 범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노숙인의 인권 배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현장성 있는 분석을 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이금숙(공저)의 논문은 강원도 사북의 폐광 피해자인 광부들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과 『폐광지역개발지역에관한특별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광부들의 비인권적 현실을 통하여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조명하여 소수 노동자의 인권을 부각시켰다는 이유로 선정되었다.

위원회는 2004년에 일반인, 시민단체, 학회,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총 24편의 논문 중에서 우수상 1편을 선정하였다.

민지원(고려대학교 대학원)의 논문 <국제협약상 난민자격 결정기준으로서 ‘젠더’ 박해와 그 근거에 관한 연구 : 북한 여성의 난민자격에 대한 성인지적 해석을 중심으로>는 국제협약상 난민자격 결정기준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 여성의 난민자격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업적과 차별성을 가지며, 북한 사회의 가정폭력, 인신매매, 강제결혼, 강제낙태, 성폭력, 성고문 등을 ‘젠더’ 박해라는 개념 정립을 통해 난민자격과 연관시켰다는 점에서 그 우수성이 인정되었다.

## (2) <인권백서> 등 발간사업

### 가. 인권백서

위원회는 2004년 11월 위원회 설립 이후 최초의 <인권백서>를 발간하였다. 인권백서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3년 동안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현안을 영역별로 정리·종합한 ‘인권 종합 보고서’이다.



인권백서의 집필에는 정치·경제·사법·사회복지·교육·여성·사회적 소수자 등 13개 영역에 걸쳐 2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인권백서는 우리나라의 인권 현안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쟁점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인권백서를 3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 나. 연간보고서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행한 주요 사업 및 활동 내용 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 배포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법령·제도·관행 등의 개선활동, 인권상담과 진정접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활동, 인권교육·홍보,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등의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위원회는 2004년 4월 30일,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청와대,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공공 도서관, 인권시민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 다. 인권정책 분야 결정례집

2004년 12월, 위원회는 출범부터 2004년 말까지 이루어진 법령과 정책, 그리고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을 모아 <인권정책분야 결정례집>을 발간하였다. 이 결정례집은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인권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제 3 절 | 평 가

위원회는 2004년 한 해 동안 법령개선 권고 21건, 정책개선 권고 6건,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권고 1건 등, 인권 관련 법령·정책·제도·관행 등의 개선과 관련하여 총 28건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25건에 달하는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15차례에 걸쳐 각종 토론회·공청회를 실시하였다.

내용면에서 보면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표명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같은 고전적인 자유권의 문제, 노동자의 권리, 사회보장과 같은 사회권의 문제, 외국인·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인권문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나 사회보호법, 사형제도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에 대해서도 권고나 연구·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개인정보 보호, 생명윤리와 같이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인권보호와 향상이라는 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2004년 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동안 수많은 인권단체들과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인권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로 지적하여 온 국가보안법에 대해 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에 인권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조사 작업이 이루어진 것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2003년에 이어 2004년에 행해진 20여 건의 실태조사·연구용역작업까지 합하면, 그 연구 주제들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인권영역을 두루 포괄하게 된다. ‘인권’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주요한 영역 대부분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2005년에 마련될 예정인 NAP 권고안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인권’에 관한 전국가적이고 포괄적인 최초의 종합정책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 | 제1절 | 개 요

2004년 한 해도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위원회를 찾아 권리구제를 호소하였다.

진정사건 접수는 전년도에 비해 40% 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상담과 안내 또한 15~20% 증가하였다. 특히 면전진정은 신청의 증가와 더불어 상담과정 중 조정과 화해를 통해 문제점이 해결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여 효과적인 권리구제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4년 위원회는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전문상담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문상담원 운영과 관련한 규정과 지침을 정비하였으며, 전문상담원의 인권전문성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상담사례집>이나 <인권상담 가이드북2>, <면전진정 가이드북2>와 같은 자료 발간과 맞물려 상승 효과를 발휘하였다.

출범 이후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2004년에는 면전진정 업무체계 개선, 다수인 보호시설 내 진정함 설치, 순회 인권상담센터 운영, 인권 관련 NGO와의 협력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 | 제 2 절 | 주요 추진실적

###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현황

위원회가 진정접수 업무를 처음 시작한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인권상담 14,327건, 진정접수 12,776건, 안내 32,175건으로 총 59,278건에 이른다. 2004년 한 해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5,368건으로 2003년과 비교하여 40.7%가 증가했는데, 이중



제외동포 차별에 대한 중국동포의 집단진정 (2004.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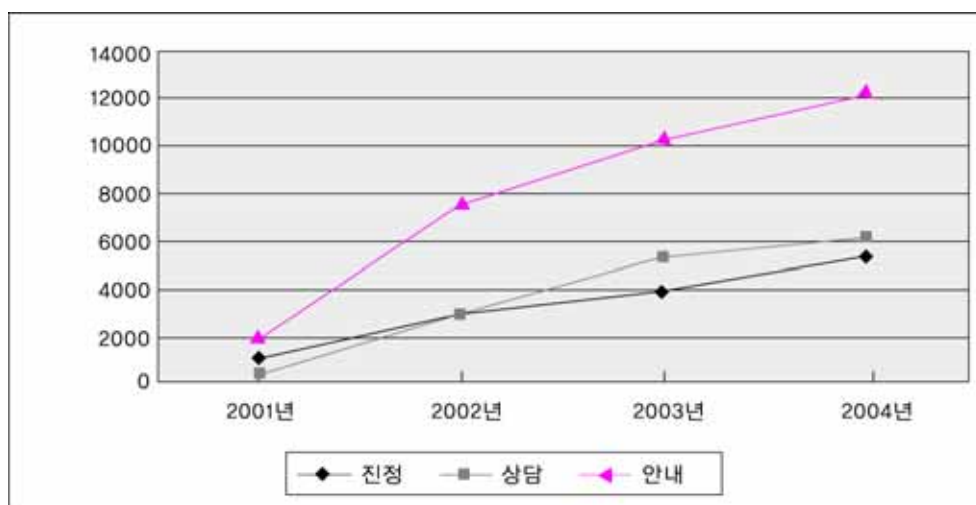
1,249건은 「재외동포법」과 관련된 집단 진정이다. 집단 진정을 제외한 나머지 진정 건수는 총 4,120건으로 전년도에 비교하면 8.0% 증가하였다. 상담은 6,057건, 안내는 12,42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15.1%, 20.2% 증가하였다.

국민들이 인권 관련 상담이나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방문, 전화, 우편 및 팩스, 인터넷, 면전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경로별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화를 통한 민원접수가 총 33,949건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우편/팩스와 방문이 각각 7,316건(12.3%)과 7,140건(12.0%)으로 많고, 면전과 인터넷이 각각 5,490건(9.3%)과 5,383건(9.1%)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2-2-1] 연도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건)

| 연 도   | 상 담    | 진 정    | 안 내    | 합 계    |
|-------|--------|--------|--------|--------|
| 2001년 | 348    | 803    | 1,852  | 3,003  |
| 2002년 | 2,661  | 2,790  | 7,558  | 13,009 |
| 2003년 | 5,261  | 3,815  | 10,340 | 19,416 |
| 2004년 | 6,057  | 5,368  | 12,425 | 23,850 |
| 누계    | 14,327 | 12,776 | 32,175 | 59,278 |



[그림 2-2-1] 연도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표 2-2-2] 경로별 상담·진정·민원 접수 현황

(단위: 건)

| 연도    | 방 문   | 전 화    | 우편/FAX | 인터넷   | 면 전   | 합 계    |
|-------|-------|--------|--------|-------|-------|--------|
| 2001년 | 497   | 2,140  | 320    | 38    | 8     | 3,003  |
| 2002년 | 1,599 | 8,425  | 1,741  | 389   | 855   | 13,009 |
| 2003년 | 2,037 | 11,493 | 2,381  | 1,498 | 2,007 | 19,416 |
| 2004년 | 3,007 | 11,891 | 2,874  | 3,458 | 2,620 | 23,850 |
| 합계    | 7,140 | 33,949 | 7,316  | 5,383 | 5,490 | 59,278 |

## (1) 인권상담

### 가. 인권상담 실시 및 처리현황

인권상담은 내담자에게 위원회의 조사대상과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 안내해 주고 (길잡이의 역할), 내담자의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충분히 들어 줌으로써 분노의 해소와 회복을 돕고(공감적 청취자의 역할), 내담자의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 정리하여 조사자에게 전달하고(중간자로서의 역할), 현장의 인권문제를 발굴·모니터링 하는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갈등 해소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004년에는 전화·방문·면전 등을 통해 총 6,05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표 2-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의 경우 전화를 통한 상담이 3,798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6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면전상담이 1,346건(22.2%), 위원회 방문 상담이 856건(14.1%)건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통한 상담은 57건(1%)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경로에 따른 상담 실시 현황

(단위: 건(%))

| 연도                  | 방 문         | 면 전         | 전 화         | 인터넷     | 계             |
|---------------------|-------------|-------------|-------------|---------|---------------|
| 2003년               | 890(16.9)   | 878(16.7)   | 3,487(66.3) | 6(0.1)  | 5,261(100.0)  |
| 2004년               | 856(14.1)   | 1,346(22.2) | 3,798(62.7) | 57(1.0) | 6,057(100.0)  |
| 총누계<br>(2001~2004년) | 2,335(16.3) | 2,529(17.7) | 9,400(65.6) | 63(0.4) | 14,327(100.0) |

상담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총 상담건수의 61.9%인 3,149건은 상담사건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내담자가 상담만을 원해 상담종결한 경우인 반면, 상담 후 진정으로 이어진 건은 375건으로 전체 상담 중 7.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2-4] 상담처리 결과 분석

(단위: 건(%))

| 처리유형     | 2003년        | 2004년        | 2001~2004년 누계 |
|----------|--------------|--------------|---------------|
| 상담종결     | 2,377(50.3)  | 3,149(61.9)  | 6,948(54.8)   |
| 타기관 안내   | 612(12.9)    | 33(0.7)      | 1,147(9.0)    |
| 진정 예정    | 894(18.9)    | 1,014(19.9)  | 2,283(18.0)   |
| 재상담 예정   | 404(8.6)     | 453(8.9)     | 1,166(9.2)    |
| 상담후 진정접수 | 346(7.3)     | 375(7.4)     | 893(7.0)      |
| 기 타      | 96(2.0)      | 62(1.2)      | 254(2.0)      |
| 합 계      | 4,729(100.0) | 5,086(100.0) | 12,691(100.0) |

※ 합계=총 상담건수-면전진정 상담건수+상담 후 진정접수 건수임.

#### 나. 인권상담 유형별 사례

상담으로 종결된 사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례는 2,160건으로 전체 상담종결 사례의 45.9%, 차별행위 관련 상담사례는 448건으로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사건은 2,103건(44.6%)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 상담종결 사건의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연도            | 인권침해         | 차별행위        | 기 타          | 계              |
|---------------|--------------|-------------|--------------|----------------|
| 2003년         | 1,766 (40.3) | 395 (9.0)   | 2,222 (50.7) | 4,383 (100.0)  |
| 2004년         | 2,160 (45.9) | 448 (9.5)   | 2,103 (44.6) | 4,711 (100.0)  |
| 2001~2004년 누계 | 4,965 (42.1) | 1,046 (8.9) | 5,787 (49.0) | 11,798 (100.0) |

### 1) 인권침해 상담

[표 2-2-6]은 인권침해 관련 상담에 있어 침해 주체별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경찰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이 847건(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 행정기관 혹은 특별 행정기관 등 기타 국가기관 관련 사건이 444건(20.6%)을 차지하였다. 또한 검찰과 다수인 보호시설이 각각 216건(10.0%), 176건(8.1%)이었다.

2003년의 인권침해 주체에 따른 상담현황과 비교할 때, 검찰이나 구금시설 관련 상담은 비율이 약간 감소한 반면, 특별사법경찰관리, 다수인 보호시설이나 기타 국가기관 관련 상담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이 향상되고, 국가기관의 다양한 업무수행에 대한 인권적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로 파악된다.

[표 2-2-6]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

(단위: 건(%))

| 구 분        | 2003년        | 2004년        |
|------------|--------------|--------------|
| 합 계        | 1,766(100.0) | 2,160(100.0) |
| 검 찰        | 269(15.2)    | 216(10.0)    |
| 경 찰        | 676(38.3)    | 847(39.2)    |
| 국가정보원      | 18(1.0)      | 16(0.7)      |
| 특별사법경찰관리   | 7(0.4)       | 19(0.9)      |
| 지방자치단체     | 129(7.3)     | 152(7.0)     |
| 사법기관       | 39(2.2)      | 33(1.5)      |
| 입법기관       | —            | 7(0.3)       |
| 기타 국가기관    | 313(17.7)    | 444(20.6)    |
| 구금시설       | 104(5.9)     | 103(4.8)     |
| 보호시설       | 3(0.2)       | 24(1.1)      |
| 다수인 보호시설   | 117(6.6)     | 176(8.1)     |
| 군검찰        | 9(0.5)       | 15(0.7)      |
| 군헌병        | 6(0.3)       | 5(0.2)       |
| 국군기무사령부    | —            | 6(0.3)       |
| 군 구금시설     | 1(0.1)       | 1(0.1)       |
| 기타 군 관련 기관 | 75(4.2)      | 96(4.4)      |

인권침해 상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2-2-7]과 같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검찰, 군헌병,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수사기관(수사관)에 의한 인권침해 내용은 주로 △편파, 불공정 수사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 혹은 장구 사용 △과도한 신체검사, 욕설 등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것이며, 이중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상담은 162건으로 2003년의 98건에 비해 68.8%나 증가하였다.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권침해 내용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고, 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상담도 크게 증가하였다.



다수인 보호시설이나 구금·보호시설, 군부대 등 군사기관 관련 상담은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표 2-2-7] 인권침해 상담 내용별 현황

(단위: 건(%))

| 유 형                                                    |                            | 연 도 | 2003년            | 2004년            |
|--------------------------------------------------------|----------------------------|-----|------------------|------------------|
| 총 계                                                    |                            |     | 1,766<br>(100.0) | 2,160<br>(100.0) |
| 검찰, 경찰,<br>국가정보원,<br>특별사법경찰관리,<br>군검찰, 군헌병,<br>국군기무사령부 | 소 계                        |     | 985(55.8)        | 1,124(52.0)      |
|                                                        | 불심검문, 부당압수·수색·검열·도감청, 과잉진압 |     | 55               | 69               |
|                                                        |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 장구 사용    |     | 197              | 213              |
|                                                        | 과도한 신체검사 등 인격권 침해          |     | 98               | 162              |
|                                                        | 편파, 불공정 수사                 |     | 369              | 301              |
|                                                        | 불법체포, 임의동행, 부당감금           |     | 59               | 82               |
|                                                        | 함정수사, 부당·강압 증거확보           |     | 29               | 20               |
|                                                        | 피의자 권리 미고지, 가족에 미통지        |     | 11               | 22               |
|                                                        | 집전·교통권 제한                  |     | 3                | 2                |
|                                                        | 알 권리 침해                    |     | 16               | 21               |
|                                                        | 공소권 남용                     |     | 32               | 32               |
|                                                        | 전과기록 미삭제                   |     | 9                | 4                |
|                                                        | 부당한 사건분류                   |     | 15               | 8                |
|                                                        | 피의사실 유포                    |     | 7                | 12               |
|                                                        | 의료권 방해·제한                  |     | 12               | 24               |
|                                                        |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     | 11               | 17               |
|                                                        | 기타                         |     | 62               | 135              |
| 기타 국가기관,<br>지방자치단체                                     | 소 계                        |     | 481(27.2)        | 636(29.5)        |
|                                                        | 위법, 부당한 처분                 |     | 106              | 144              |
|                                                        | 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               |     | 54               | 137              |
|                                                        | 폭행, 가혹행위                   |     | 34               | 23               |
|                                                        | 인격권 침해                     |     | 78               | 95               |

| 유 형                            |                 | 연 도 | 2003년    | 2004년    |
|--------------------------------|-----------------|-----|----------|----------|
| 기타 국가기관,<br>지방자치단체             | 사생활 비밀 침해       |     | 45       | 55       |
|                                | 알 권리 침해         |     | 13       | 11       |
|                                | 공무원 부당 처우       |     | 14       | 25       |
|                                | 행정, 제도개선        |     | 68       | 55       |
|                                | 출입국 제한          |     | 33       | 36       |
|                                | 기타              |     | 36       | 55       |
| 구금·보호시설<br>(군 구금시설 포함)         | 소 계             |     | 108(6.1) | 128(5.9) |
|                                | 의료조치 미흡         |     | 37       | 41       |
|                                | 권리구제절차 제한       |     | 6        | 5        |
|                                | 서신 집필 제한        |     | 6        | 2        |
|                                | 부당한 조사, 징벌      |     | 7        | 6        |
|                                | 폭행, 가혹행위        |     | 21       | 23       |
|                                | 부당처우            |     | 19       | 30       |
|                                | 기타              |     | 12       | 21       |
| 다수인 보호시설                       | 소 계             |     | 117(6.6) | 176(8.1) |
|                                | 강제수용            |     | 58       | 60       |
|                                | 폭행, 가혹행위        |     | 29       | 49       |
|                                | 외부교통권 제한        |     | 6        | 17       |
|                                | 의료조치 미흡         |     | 5        | 13       |
|                                | 강제노동            |     | 2        | 5        |
|                                | 인격권 침해          |     | 7        | 8        |
|                                | 시설, 환경문제        |     | 2        | 8        |
|                                | 기타              |     | 8        | 16       |
| 군사기관<br>(군 수사기관,<br>군 구금시설 제외) | 소 계             |     | 75(4.2)  | 96(4.5)  |
|                                | 생명권 침해          |     | 14       | 12       |
|                                | 폭행, 가혹행위        |     | 26       | 23       |
|                                | 인격권 침해          |     | 1        | 7        |
|                                | 근무환경(의료조치 미흡 등) |     | 7        | 6        |
|                                | 불합리한 행정제도       |     | 10       | 21       |
|                                | 기타              |     | 17       | 27       |



## 2) 차별행위 상담

2004년 차별행위 상담사례 중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행위가 226건으로 50.4%를 차지하고, 법인·단체·사인간의 차별행위가 166건(37.1%),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의한 차별행위가 56건(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비교해 보면, 국가기관과 교육기관에 의한 차별사례가 20% 이상 증가하였다.

[표 2-2-8] 차별행위 주체에 따른 상담 실시 현황

(단위: 건(%))

| 구 분        |         | 2003년      | 2004년      | 2001~2002년 누계 |
|------------|---------|------------|------------|---------------|
| 계          |         | 395(100.0) | 448(100.0) | 1,046(100.0)  |
| 국가기관       | 소계      | 185(46.8)  | 226(50.4)  | 547(52.3)     |
|            | 검찰/경찰   | 75(18.4)   | 74(16.5)   | 240(22.9)     |
|            | 구급시설    | 1(0.6)     | 1(0.2)     | 2(0.2)        |
|            | 군대      | 7(1.8)     | 6(1.3)     | 14(1.3)       |
|            | 기타 국가기관 | 86(21.8)   | 111(24.8)  | 231(22.1)     |
|            | 지방자치단체  | 15(3.8)    | 34(7.6)    | 57(5.5)       |
|            | 보호시설    | 3(0.8)     | —          | 3(0.3)        |
| 법인·단체·사인 등 | 소계      | 165(41.8)  | 166(37.1)  | 389(37.2)     |
|            | 법인      | 125(31.7)  | 137(30.6)  | 308(29.5)     |
|            | 개인회사    | 17(4.3)    | 15(3.4)    | 35(3.4)       |
|            | 단체      | 6(1.5)     | 4(0.9)     | 13(1.2)       |
|            | 사인      | 17(4.3)    | 10(2.2)    | 33(3.1)       |
| 교육기관       | 소계      | 45(11.4)   | 56(12.5)   | 110(10.5)     |

차별 사유에 따른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행위는 주로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 시설 내 부당처우 등 기타 사유로 분류되는 내용이 41.4%에 달하며, 이를 제외하면 차별행위 주체와 관계없이 사회적 신분, 나이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표 2-2-9] 차별행위 사유에 따른 상담 실시 현황

(단위: 건(%))

| 차별행위 주체<br>합 계<br>차별사유 | 국가기관(%)    |            | 법인/단체/사인(%) |            | 교육기관(%)   |           |
|------------------------|------------|------------|-------------|------------|-----------|-----------|
|                        | 2003년      | 2004년      | 2003년       | 2004년      | 2003년     | 2004년     |
|                        | 185(100.0) | 226(100.0) | 165(100.0)  | 166(100.0) | 45(100.0) | 56(100.0) |
| 장애                     | 17(9.2)    | 17(7.5)    | 28(17.0)    | 22(13.3)   | 4(8.9)    | 7(12.5)   |
| 사회적 신분                 | 31(16.8)   | 42(18.6)   | 36(21.8)    | 40(24.1)   | 10(22.2)  | 17(30.4)  |
| 출신국가                   | 13(7.0)    | 6(2.7)     | 12(7.4)     | 6(3.6)     | —         | 2(3.4)    |
| 병력                     | 3(1.6)     | 4(1.8)     | 9(5.5)      | 13(7.8)    | 1(2.2)    | —         |
| 성별                     | 5(2.7)     | 8(3.5)     | 17(10.3)    | 11(6.6)    | 4(8.9)    | 6(10.7)   |
| 나이                     | 13(7.0)    | 22(9.7)    | 16(9.7)     | 22(13.3)   | 4(8.9)    | 2(3.6)    |
| 출신지역                   | 6(3.3)     | 6(2.7)     | 1(0.6)      | 1(0.6)     | —         | —         |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4(2.2)     | 12(5.3)    | 3(1.8)      | 6(3.6)     | —         | 1(1.8)    |
| 용모 등 신체적 조건            | —          | 4(1.8)     | 6(3.6)      | 5(3.0)     | —         | 1(1.8)    |
| 혼인 여부                  | 1(0.5)     | 1(0.4)     | 3(1.8)      | 3(1.8)     | —         | 1(1.8)    |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1(0.5)     | 2(0.9)     | 4(2.4)      | 2(1.2)     | 1(2.2)    | 2(3.6)    |
| 종교                     | 1(0.5)     | —          | —           | 3(1.8)     | 3(6.7)    | 2(3.6)    |
| 가족상황                   | —          | 5(2.2)     | 1(0.6)      | 4(2.4)     | —         | 2(2.6)    |
| 성적 지향                  | —          | —          | 1(0.6)      | 3(1.8)     | —         | —         |
| 출신민족                   | 2(1.1)     | —          | —           | 1(0.6)     | —         | —         |
| 임신 또는 출산 여부            | 2(1.1)     | 2(0.9)     | 1(0.6)      | 3(1.8)     | 1(2.2)    | —         |
| 인종                     | —          | —          | —           | —          | 1(2.2)    | —         |
| 피부색                    | —          | —          | —           | —          | —         | —         |
| 학력, 학벌                 | 3(1.6)     | 2(0.9)     | 6(3.6)      | 3(1.8)     | 4(8.9)    | 4(7.1)    |
| 기타                     | 83(44.9)   | 93(41.1)   | 21(12.1)    | 18(10.9)   | 12(26.7)  | 9(16.1)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행위와는 달리 국가기관 등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해 그 사유와 영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편의상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행위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함. 국가기관에 의한 기타 차별행위에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 구금·보호시설내 부당처우 등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등 차별 행위가 이루어진 영역별 상담 현황을 보면, 차별 주체에 상관없이 고용 영역의 차별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데, 특히 법인·단체·사인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중 76.5%가 고용 영역에 대한 것이다.

[표 2-2-10] 차별 영역에 따른 상담 실시 현황

(단위: 건(%))

| 차별주체<br>차별영역   | 국가기관(%)    |            | 법인/단체/사인(%) |            | 교육기관(%)   |           |
|----------------|------------|------------|-------------|------------|-----------|-----------|
|                | 2003년      | 2004년      | 2003년       | 2004년      | 2003년     | 2004년     |
| 합 계            | 185(100.0) | 226(100.0) | 165(100.0)  | 166(100.0) | 45(100.0) | 56(100.0) |
| 고 용            | 56(30.3)   | 93(41.2)   | 121(72.7)   | 127(76.5)  | 29(64.5)  | 32(57.1)  |
|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용 | 25(13.5)   | 41(18.1)   | 31(18.8)    | 29(17.5)   | 2(4.4)    | 1(1.8)    |
| 교육시설 등 이용      | 4(2.2)     | 4(1.8)     | 3(1.8)      | 1(0.6)     | 10(22.2)  | 19(33.9)  |
| 기 타            | 100(54.0)  | 88(38.9)   | 10(6.7)     | 9(5.4)     | 4(8.9)    | 4(7.2)    |

### 3) 기타 상담

위원회법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 상담사례는 2,103건으로 전년도 2,222건보다 약간 감소했다. 기타 상담사례는 주로 사인간의 분쟁이나 폭행, 재산권 침해, 법률문의, 재판과 관련한 불만 등이며 상담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표 2-2-11] 기타 상담의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유 형            | 2003년        | 2004년       | 2001~2004년 누계 |
|----------------|--------------|-------------|---------------|
| 합 계            | 2,222(100.0) | 2,103(10.0) | 5,787(100.0)  |
| 사인간 인권침해       | 737(33.2)    | 746(35.5)   | 2,049(35.4)   |
| 재산권            | 203(9.1)     | 186(8.8)    | 523(9.1)      |
| 국가기관에 의한 기타 침해 | 116(5.2)     | 95(4.5)     | 275(4.8)      |
| 법률문의           | 158(7.1)     | 152(7.2)    | 419(7.2)      |
| 사법기관에 대한 불만    | 127(5.7)     | 143(6.8)    | 386(6.7)      |
| 법령제도개선 요구      | 124(5.6)     | 100(4.8)    | 295(5.1)      |
| 위원회 업무에 대한 불만  | 103(4.7)     | 83(4.0)     | 234(4.0)      |
| 위원회 업무 문의      | 51(2.3)      | 72(3.4)     | 170(2.9)      |
| 위원회 관련 제안      | 96(4.3)      | 34(1.6)     | 167(2.9)      |
| 기 타            | 507(22.8)    | 492(23.4)   | 1,269(21.9)   |

#### 다. 내담자 현황

내담자들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287건(27.3%), 경기도 741건(15.7%), 부산 220건(4.7%), 인천 189건(4.0%), 경상남도 161건(3.4%), 강원도 139건(3.0%)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위원회의 상담센터를 방문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인권보호 및 구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사무소 설치와 같은 인권상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2-2-12] 내담자의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건(%))

| 구 분 | 2003년        | 2004년        | 2001~2004 누계  |
|-----|--------------|--------------|---------------|
| 합 계 | 4,383(100.0) | 4,711(100.0) | 11,798(100.0) |
| 서 울 | 750(17.1)    | 1,287(27.3)  | 2,462(20.9)   |
| 부 산 | 181(4.1)     | 220(4.7)     | 486(4.1)      |
| 대 구 | 88(2.0)      | 135(2.9)     | 265(2.2)      |
| 인 천 | 143(3.3)     | 189(4.0)     | 396(3.4)      |
| 광 주 | 87(2.0)      | 86(1.8)      | 202(1.7)      |
| 대 전 | 69(1.6)      | 79(1.7)      | 180(1.5)      |
| 울 산 | 39(0.9)      | 29(0.6)      | 82(0.7)       |
| 경 기 | 487(11.1)    | 741(15.7)    | 1,498(12.7)   |
| 강 원 | 70(1.6)      | 139(3.0)     | 252(2.1)      |
| 충 북 | 59(1.3)      | 101(2.1)     | 199(1.7)      |
| 충 남 | 100(2.3)     | 106(2.3)     | 248(2.1)      |
| 전 북 | 86(2.0)      | 125(2.7)     | 252(2.1)      |
| 전 남 | 77(1.8)      | 97(2.1)      | 223(1.9)      |
| 경 북 | 81(1.8)      | 120(2.5)     | 255(2.2)      |
| 경 남 | 111(2.5)     | 161(3.4)     | 327(2.8)      |
| 제 주 | 26(0.6)      | 34(0.7)      | 74(0.6)       |
| 미 상 | 1,929(44.0)  | 1,062(22.5)  | 4,397(37.3)   |

내담자들의 성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총 3,632건으로 전체의 77.1%인 반면 여성은 1,072건으로 전체의 22.8%로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하고 있어, 인권상담 서비스의 성평등적 제공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2-2-13] 내담자의 성별 분포 현황

(단위: 건(%))

| 구분           | 2003년            |                  |                |                  | 2004년           |                 |               |                 |
|--------------|------------------|------------------|----------------|------------------|-----------------|-----------------|---------------|-----------------|
|              | 합계               | 인권침해             | 차별             | 기타               | 합계              | 인권침해            | 차별            | 기타              |
| 남            | 3,164<br>(72.2)  | 1,350<br>(76.4)  | 271<br>(68.6)  | 1,543<br>(69.4)  | 3,632<br>(77.1) | 1,720<br>(79.6) | 343<br>(76.6) | 1,569<br>(74.6) |
| 여            | 1,216<br>(27.7)  | 415<br>(23.5)    | 123<br>(31.1)  | 678<br>(30.5)    | 1,072<br>(22.8) | 438<br>(20.3)   | 104<br>(23.2) | 530<br>(25.2)   |
| 여<br>(트랜스젠더) | -                | -                | -              | -                | -               | 1<br>(0.05)     | -             | -               |
| 미상           | 3<br>(0.1)       | 1<br>(0.1)       | 1<br>(0.3)     | 1<br>(0.1)       | 6<br>(0.1)      | 1<br>(0.05)     | 1<br>(0.2)    | 4<br>(0.2)      |
| 합계           | 4,383<br>(100.0) | 1,766<br>(100.0) | 395<br>(100.0) | 2,222<br>(100.0) | 4,711           | 2,160           | 448           | 2,103           |

## (2) 진정 접수

## 가.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04년에는 총 5,368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되었다. 경로에 따른 진정접수 현황은 [표 2-2-14]와 같다. 2002년과 2003년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진정접수가 50%에 육박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데 반해, 2004년에는 방문(31%), 면전(24%), 우편과 팩스(34%) 등의 경로를 통해 고르게 접수되었다.

[표 2-2-14] 경로에 따른 진정 접수 현황

(단위: 건(%))

| 연도 \ 경로    | 방문          | 면전          | 전화        | 우편/팩스       | 인터넷      | 계             |
|------------|-------------|-------------|-----------|-------------|----------|---------------|
| 2001.11~12 | 247(30.8)   | 5(0.6)      | 203(25.3) | 310(38.6)   | 38(4.7)  | 803(100.0)    |
| 2002년      | 445(15.9)   | 553(19.8)   | 177(6.3)  | 1,442(51.7) | 173(6.3) | 2,790(100.0)  |
| 2003년      | 555(14.5)   | 1,129(29.6) | 76(2.1)   | 1,760(46.1) | 295(7.7) | 3,815(100.0)  |
| 2004년      | 1,670(31.1) | 1,274(23.7) | 122(2.3)  | 1,844(34.4) | 458(8.5) | 5,368(100.0)  |
| 총누계        | 2,917(22.8) | 2,961(23.2) | 578(4.5)  | 5,356(41.9) | 964(7.6) | 12,776(100.0) |



2004년에 접수된 진정사건 5,368건 중 인권침해 사건은 4,627건(86.2%)이며, 차별행위 사건은 389건(7.2%)이고 기타 사건은 352(6.6%)건이다.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사건의 접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2-15] 진정사건 접수 분류 현황

(단위: 건(%))

| 연 도   | 인권침해        | 차별행위      | 기 타       | 합 계          |
|-------|-------------|-----------|-----------|--------------|
| 2001년 | 619(77.1)   | 53(6.6)   | 131(16.3) | 803(100.0)   |
| 2002년 | 2,214(79.4) | 136(4.8)  | 440(15.8) | 2,790(100.0) |
| 2003년 | 3,041(79.7) | 358(9.4)  | 416(10.9) | 3,815(100.0) |
| 2004년 | 4,627(86.2) | 389(7.2%) | 352(6.6)  | 5,368(100.0) |

#### 나. 진정사건 유형별 사례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이며, 차별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를 포함하여 장애, 병력,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성별,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성적 지향, 나이, 용모 등 신체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를 말한다.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표2-2-16]과 같다.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은 총 4,62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서 교도소 등 구금시설을 상대로 한 진정이 1,835건으로 인권침해 사건 전체의 39.6%에 이른다.

[표 2-2-16] 진정사건 유형별 분류

(단위: 건(%))

| 인권침해     |              |              | 차별행위   |            |            | 기타     |            |            |
|----------|--------------|--------------|--------|------------|------------|--------|------------|------------|
|          | 2003년        | 2004년        |        | 2003년      | 2004년      |        | 2003년      | 2004년      |
| 계        | 3,041(100.0) | 4,627(100.0) | 계      | 358(100.0) | 389(100.0) | 계      | 416(100.0) | 352(100.0) |
| 검찰       | 173(5.7)     | 164(3.5)     | 장애     | 14(3.9)    | 54(13.9)   | 사인간 침해 | 43(10.4)   | 36(10.2)   |
| 경찰       | 702(23.1)    | 688(14.9)    | 병력     | 15(4.2)    | 7(1.8)     | 회사     | 11(2.6)    | 31(8.8)    |
| 국가정보원    | 5(0.2)       | 11(0.2)      | 사회적 신분 | 36(10.0)   | 64(16.5)   | 기타 단체  | 3(0.7)     | 6(1.7)     |
| 특별사법경찰관리 | 26(0.9)      | 26(0.6)      | 출신지역   | 2(0.6)     | 6(1.5)     | 재산권    | 12(2.9)    | 6(1.7)     |
| 지방자치단체   | 81(2.7)      | 115(2.5)     | 출신국가   | 9(2.5)     | 10(2.6)    | 법령, 제도 | 166(39.9)  | 111(31.5)  |
| 사법기관     | 35(1.2)      | 41(0.9)      | 출신민족   | 1(0.3)     | —          | 입법, 재판 | 22(5.3)    | 40(11.4)   |
| 입법기관     | 2(0.1)       | 8(0.2)       | 인종     | —          | —          | 기타 진정  | 159(38.2)  | 122(34.7)  |
| 기타 국가기관  | 201(6.6)     | 1,553(33.5)  | 피부색    | —          | —          |        |            |            |
| 구금시설     | 1,686(55.4)  | 1,835(39.6)  | 성별     | 34(9.5)    | 25(6.4)    |        |            |            |
| 다수인보호시설  | 57(1.8)      | 126(2.7)     | 혼인여부   | 4(1.1)     | 7(1.8)     |        |            |            |
| 군검찰      | 1(0.0)       | 4(0.1)       | 임신출산   | 15(4.2)    | 4(1.0)     |        |            |            |
| 군헌병      | 4(0.1)       | 7(0.2)       | 가족상황   | 2(0.6)     | 4(1.0)     |        |            |            |
| 국군기무사령부  | 3(0.1)       | 3(0.1)       | 성적 지향  | 2(0.6)     | 1(0.3)     |        |            |            |
| 군구금시설    | 6(0.2)       | 11(0.2)      | 나이     | 21(5.9)    | 57(14.7)   |        |            |            |
| 기타 군관련기관 | 59(1.9)      | 35(0.8)      | 용모 등   | 4(1.1)     | 6(1.5)     |        |            |            |
|          |              |              | 종교     | 5(1.4)     | 8(2.1)     |        |            |            |
|          |              |              | 정치적 의견 | 7(2.0)     | —          |        |            |            |
|          |              |              | 전과     | 1(0.3)     | 7(1.8)     |        |            |            |
|          |              |              | 평등권침해  | 127(35.4)  | —          |        |            |            |
|          |              |              | 학력, 학벌 | 27(7.5)    | 12(3.1)    |        |            |            |
|          |              |              | 기타     | 32(8.9)    | 117(30.0)  |        |            |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에 의한 차별행위를 차별 사유와 관계없이 '평등권침해'로 분류해 왔으나, 2004년 4월부터 이를 해당 차별 사유로 재분류함.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은 총 389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진정이 6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나이와 장애의 차별 사유도 각각 57건, 54건으로 2003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352건이 접수된 기타 사건은 재산권 침해나 사인간에 발생한 인권침해 등이 대부분으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들이다. 기타 사건 중 인권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111건으로 개별 진정사건은 위원회법에 의해 각하 처리되었으나 진정 내용은 위원회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는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 다. 진정인 현황

진정인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경기·경북·대구·부산 등의 순으로 인구분포도가 높은 지역에서 진정인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7] 진정인의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건(%))

| 지 역 | 건 수         | 지 역 | 건 수          |
|-----|-------------|-----|--------------|
| 서 울 | 2,012(37.4) | 경 기 | 770(14.3)    |
| 부 산 | 309(5.8)    | 강 원 | 145(2.7)     |
| 대 구 | 355(6.6)    | 충 북 | 105(2.0)     |
| 인 천 | 139(2.6)    | 충 남 | 157(2.9)     |
| 광 주 | 199(3.7)    | 전 북 | 131(2.4)     |
| 대 전 | 196(3.7)    | 전 남 | 146(2.7)     |
| 울 산 | 59(1.1)     | 경 북 | 390(7.3)     |
|     |             | 경 남 | 201(3.7)     |
|     |             | 제 주 | 27(0.5)      |
|     |             | 미 상 | 27(0.5)      |
| 합 계 |             |     | 5,368(100.0) |

진정인의 성별 분포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5,368건 중 남성이 3,645건(67.9%), 여성이 344건(6.4%)으로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2-17]을 통해, 전반적으로 권리구제 요구자는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평등권 침해 등 차별문제에서는 여성들의 권리구제 요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18] 진정인의 성별 분포 현황

(단위: 건(%))

| 지 역 | 계            | 인권침해         | 차별행위       | 기 타        |
|-----|--------------|--------------|------------|------------|
| 합 계 | 5,368(100.0) | 4,627(100.0) | 389(100.0) | 352(100.0) |
| 남   | 3,645(67.9)  | 3,059(66.1)  | 300(77.1)  | 286(81.2)  |
| 여   | 344(6.4)     | 233(5.0)     | 77(19.8)   | 34(9.7)    |
| 미 상 | 1,379(25.7)  | 1,335(28.9)  | 12(3.1)    | 32(9.1)    |

진정인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40대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영역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9] 진정인의 연령별 분포 현황

(단위: 건(%))

| 지 역    | 계            | 인권침해         | 차별행위       | 기 타        |
|--------|--------------|--------------|------------|------------|
| 합 계    | 5,368(100.0) | 4,627(100.0) | 389(100.0) | 352(100.0) |
| 10~19세 | 32(0.6)      | 13(0.3)      | 18(4.6)    | 1(0.3)     |
| 20~29세 | 570(10.6)    | 493(10.7)    | 54(13.9)   | 23(6.5)    |
| 30~39세 | 1,252(23.3)  | 1,086(23.5)  | 99(25.5)   | 67(19.0)   |
| 40~49세 | 1,249(23.3)  | 1,049(22.7)  | 113(29.0)  | 87(24.7)   |
| 50~59세 | 483(9.0)     | 367(7.9)     | 52(13.4)   | 64(18.2)   |
| 60~69세 | 184(3.4)     | 129(2.8)     | 20(5.1)    | 35(10.0)   |
| 70세 이상 | 127(2.4)     | 109(2.4)     | 4(1.0)     | 14(4.0)    |
| 미 상    | 1,471(27.4)  | 1,381(29.8)  | 29(7.5)    | 61(17.3)   |



또한, 진정인이 외국인인 진정사건은 2003년 49건에서 2004년에는 1,44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중 1,249건이 재외동포법과 관련한 단체 진정이라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외국인 실제 진정접수는 191건에 달해 전년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3) 안내 및 민원처리

위원회의 민원안내는 주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이나 진정접수 절차,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에 대한 안내, 진정요건 보완을 위한 처리 등이 주요 내용이며 처리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민원안내 가운데 전화와 방문을 통한 안내의 비중은 해마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편 및 팩스를 통한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인터넷 민원처리는 2001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이 2004년에는 2,943건(23.7%)이 접수 처리되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2-20] 경로에 따른 안내 및 민원 현황

(단위: 건(%))

| 연 도        | 방 문        | 전 화          | 우편/팩스      | 인터넷         | 계             |
|------------|------------|--------------|------------|-------------|---------------|
| 2001.11~12 | 129(7.0)   | 1,713(92.5)  | 10(0.5)    | -           | 1,852(100.0)  |
| 2002년      | 686(9.1)   | 6,357(84.1)  | 299(4.0)   | 216(2.8)    | 7,558(100.0)  |
| 2003년      | 592(5.7)   | 7,930(76.7)  | 621(6.0)   | 1,197(11.6) | 10,340(100.0) |
| 2004년      | 481(3.6)   | 7,971(64.2)  | 1,030(8.5) | 2,943(23.7) | 12,425(100.0) |
| 누계         | 1,888(5.9) | 23,971(74.5) | 1,960(6.1) | 4,356(13.5) | 32,175(100.0) |

## 2. 권리구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면전진정제도 및 지역순회 인권상담

### (1) 면전진정제도의 안정화

면전진정은 시설 수용자가 위원회 위원이나 소속 직원과 만나 직접 진정하기를 원

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이나 소속 직원이 구급·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제도로,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2001년 11월부터 2004년 12월말 현재까지 총 7,372건이 신청되었고, 2003년에 월평균 신청건수가 218건이던 것이 면전진정제도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2004년에는 29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폭주하는 면전진정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접수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2003년에 <면전진정 가이드북1>을 발간한 데 이어 <면전진정 가이드북2>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면전진정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면전진정 처리건수가 2003년에 비해 34.4%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신청된 총 건수가 2003년에 비해 900건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신청에서부터 면담까지 면전진정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23일로 면전진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005년 광주, 부산 지역사무소가 개설되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2-2-21]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건(월평균))

| 구 분 | 2001~2002년 | 2003년       | 2004년       | 총 계         |
|-----|------------|-------------|-------------|-------------|
| 신 청 | 1,243 (89) | 2,615 (218) | 3,514 (293) | 7,372 (194) |
| 처 리 | 1,104 (79) | 2,600 (217) | 3,385 (282) | 7,089 (187) |

※ 처리=진정+상담종결+철회

면전진정 신청자는 대부분 교정시설 수용자들이나 보호시설 수용자들의 면전진정 신청건수도 34건으로 2003년에 비해 20건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군 구급시설 수용자의 신청은 2003년 단 1건에 불과하여, 면전진정 신청제도가 전체 시설 수용자들을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면전진정 신청자 중 위원회 직원과 면담한 후 진정을 접수한 경우는 1,274건이고, 상담종결 처리한 경우는 1,346건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면전진정 접수는



43.2%에서 36.2%로 감소한 반면 상담종결은 33.6%에서 38.2%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위원회 직원이 축적된 경험과 교육을 바탕으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면전진정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리구제 조치를 안내하고, 구금시설의 적절한 조치를 이끌어 내는 등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 수용자들이 상담만을 원하여 면전진정을 신청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인권취약지구를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인권상담 서비스가 질적으로도 향상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표 2-2-22] 시설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처리결과<br>시설명 | 2003년            |               |                 |               |              | 2004년            |               |                 |                 | 누적<br>미처리 |
|-------------|------------------|---------------|-----------------|---------------|--------------|------------------|---------------|-----------------|-----------------|-----------|
|             | 신청               | 철회            | 진정              | 상담<br>종결      | 미처리          | 신청               | 철회            | 진정              | 상담<br>종결        |           |
| 합 계         | 2,615<br>(100.0) | 593<br>(22.7) | 1,129<br>(43.2) | 878<br>(33.6) | 154<br>(5.9) | 3,514<br>(100.0) | 765<br>(21.8) | 1,274<br>(36.2) | 1,346<br>(38.2) | 283       |
| 교정시설        | 2,595            | 590           | 1,122           | 870           | 152          | 3,473            | 762           | 1,250           | 1,329           | 282       |
| 군구금시설       | 1                | —             | 1               | —             | —            | —                | —             | —               | —               | —         |
| 경찰서         | 7                | 3             | 2               | —             | 1            | 7                | 1             | 5               | 3               | 1         |
| 보호시설        | 12               | —             | 4               | 8             | 1            | 34               | 2             | 19              | 14              | —         |

※ 철회+진정+상담종결=신청이지만 합계가 맞지 않는 경우는 수용자가 면전진정 신청 후 타시설로 이송, 이입한 경우는 신청시 수용된 시설이 아닌 이입한 시설의 처리건수로 처리한 데 따른 것임.

또한 면전진정 신청을 철회한 경우는 765건(21.8%)으로, 이는 위원회 직원이 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신청인이 면담의사를 철회하거나 시설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거절한 경우다. 면전진정 철회나 면담 거절이 발생하는 것은 ‘진정을 하고자 했던 사유 해소’(420건), ‘심경의 변화’(142건)나 ‘출소로 인한 자동 철회’(90건) 등이 주된 이유다.

진정하고자 했던 사유가 해소되는 빈도가 높은 이유는 많은 수의 구금시설이 면전진정신청자와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2-23] 면전진정 신청 사례 중 상담종결 사유별 현황

(단위: 건(%))

| 상담종결 사유                                     | 2003년      | 2004년      |
|---------------------------------------------|------------|------------|
| 위원회법 제32조 각하 사유에 해당                         | 98(11.2)   | 158(11.7)  |
| 법률상담                                        | 18(2.0)    | 39(2.9)    |
|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 11(1.2)    | 12(1.0)    |
| 위원회가 시설에 건의·시정할 것을 원함                       | 93(10.6)   | 96(7.1)    |
| 상담 자체를 원함                                   | 82(9.3)    | 237(17.6)  |
| 인권위의 도움을 원함                                 | 23(2.5)    | 46(3.4)    |
| 이미 진정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                           | 148(16.8)  | 192(14.2)  |
| 진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촉구                             | 87(9.9)    | 40(3.0)    |
| 향후 다시 진정하기로 함                               | 49(5.6)    | 80(5.9)    |
| 진정하고자 했던 문제가 해결됨                            | 102(11.6)  | 188(14.0)  |
| 법령, 제도 개선에 해당                               | 26(3.2)    | 36(2.7)    |
| 기 타 (형기만료, 인권위 진정 실효성 의문, 동료 수용자 보복행위 우려 등) | 141(16.1)  | 222(16.5)  |
| 총 계                                         | 878(100.0) | 1,346(100) |

[표 2-2-24] 면전진정 신청 철회 사유

(단위: 건(%))

| 철회사유           | 2003년      | 2004년      |
|----------------|------------|------------|
|                | 건수(%)      | 건수(%)      |
| 진정사유 해소        | 218(36.8)  | 420(55.0)  |
| 심경의 변화         | 89(15.0)   | 142(19.0)  |
| 출소로 인한 자동 철회   | 61(10.3)   | 90(11.6)   |
| 진정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 | 16(2.7)    | 12(1.5)    |
| 서면진정으로 전환      | 13(2.2)    | 9(1.2)     |
|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 6(1.0)     | 1(0.1)     |
| 소송을 위해         | 13(2.2)    | 7(0.8)     |
| 조사를 원치 않음      | 1(0.2)     | 5(0.5)     |
| 기진정사건과 동일      | 37(6.2)    | 9(1.2)     |
| 출소 후 진정예정      | 0(0.0)     | 3(0.4)     |
| 미상             | 139(23.4)  | 67(8.7)    |
| 계              | 593(100.0) | 765(100.0) |



면전진정을 신청한 수용자의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4년에는 대구교도소 수용자들의 경우가 3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광주교도소,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 부산구치소, 청송제2교도소, 청송교도소 순으로 나타났다. 면전을 통해 진정을 접수한 건수는 대구교도소가 13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구치소, 광주교도소, 대전교도소, 부산구치소 순이다.

[표 2-2-25] 진정 관련 구금시설 순위

(단위: 건)

| 순위 | 시설         | 2003년 |            | 2004년      |            |
|----|------------|-------|------------|------------|------------|
|    |            | 신청건수  | 진정접수건수     | 신청건수       | 진정접수건수     |
| 1  | 대구교도소(265) |       | 광주교도소(119) | 대구교도소(357) | 대구교도소(130) |
| 2  | 광주교도소(232) |       | 서울구치소(109) | 광주교도소(274) | 서울구치소(124) |
| 3  | 서울구치소(228) |       | 대구교도소(108) | 서울구치소(253) | 광주교도소(99)  |
| 4  | 대전교도소(189) |       | 청송교도소(83)  | 대전교도소(23)  | 대전교도소(78)  |
| 5  | 청송교도소(173) |       | 부산교도소(79)  | 부산구치소(212) | 부산구치소(76)  |

## (2) 지역순회 인권상담센터 운영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지역순회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인권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정 사건을 접수하였다. 주요 광역시를 순회했던 2003년과는 달리 2004년에는 춘천, 청주 등 중소도시를 위주로 운영하였다. 이번 지역순회에서는 72건의 인권상담과 25건의 안내, 18건의 진정사건 접수 등 총 11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이와 함께 순회상담 실시 지역에 있는 다수인 보호시설 세 곳을 각각 방문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진정함을 설치하였다.



대구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임시 지역인권상담센터 (2004.5.6.)

[표 2-2-26] 지역순회 인권상담센터 운영 성과 - 상담 및 진정 접수

(단위: 건수)

| 주요활동<br>지역 | 인권상담 |      |    |    | 진정 접수 |      |    |    | 안내 | 합계  |
|------------|------|------|----|----|-------|------|----|----|----|-----|
|            | 인권침해 | 차별행위 | 기타 | 소계 | 인권침해  | 차별행위 | 기타 | 소계 |    |     |
| 대 구        | 9    | 3    | 21 | 33 | 5     | 2    | 1  | 8  | 4  | 45  |
| 청 주        | 3    | 0    | 11 | 14 | 8     | 1    | 0  | 9  | 8  | 31  |
| 춘 천        | 0    | 0    | 25 | 25 | 0     | 1    | 0  | 1  | 13 | 39  |
| 합 계        | 12   | 3    | 57 | 72 | 13    | 4    | 1  | 18 | 25 | 115 |

지역순회 인권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민들의 위원회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 현지 변호사들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앞으로 사업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리기 위해서 광역시 외의 지방 중소도시 및 도서벽지, 보호시설 등 인권구제 및 위원회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3. 질 높은 인권상담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마련

인권상담센터는 인권침해 및 차별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이 고충을 토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는 위원회의 최전방 창구다. 따라서 인권상담센터의 활동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담센터의 핵심인 인권상담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은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3년간 5만여 건에 이르는 상담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는 개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상담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였다.

#### (1) 인권상담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시스템의 체계화

2004년에는 상담활동에 참여하는 전문상담원과 직원들의 인권전문성 및 인권감수



성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인권상담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 또한 독자적인 교육과정 외에도 위원회 내·외부의 교육기회도 적극 활용하였으며, 특히 전문상담원들이 중심이 되어 상담사례 연구모임, 슈퍼비전 및 주제별 스터디 모임 등 다양한 학습공동체를 통해 인권상담 전문가로서 역량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한 상담인력의 안정화와 전문상담원제 운영의 체계화를 위해서 전문상담원의 정식 직원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전문상담원위촉및운용에관한규정」, 「전문상담원운용및평가지침」 등과 같은 규정과 지침 등을 새로 정비하였다.

## (2) 인권상담 현장화 및 절차개선을 통한 권리구제 접근성 제고

인권상담의 현장화를 위해 지역순회 임시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외국인 이주노동자 단체, 성매매 여성 관련 단체 등을 방문하여 위원회 관련 업무와 사업을 소개하고 인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규칙」 등 인권상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안내, 상담, 진정접수와 관련된 규정을 제·개정함으로써 업무절차를 개선하였다.

면전진정과 더불어 구금·보호시설의 진정함 설치 확대, 관련 기관의 지침 개정, 면전진정 서식 제정 등 시설 수용자들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다수인 보호시설에 진정함을 설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역순회 상담 기간 중 다수인 보호시설에 진정함을 설치하는 모습 (2004.6.16.)

기율여 설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200%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 수용자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 (3) 인권상담 관련 책자 발간

2004년의 <인권상담사례집>, <인권상담 가이드북2>, <면전진정 가이드북2> 등의 발간은 업무절차의 효율화 및 표준화, 교육 프로그램 등과 맞물려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승효과를 불러왔다.

#### 가. 인권상담사례집

<인권상담사례집>은 6,000여 건에 달하는 상담사례 가운데 상담 종결되는 주요 내용을 찾아 주요 상담 사례, 인권 관련 제도 및 정책개선에 반영되어야 할 사례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상담내용 및 관련 규정 등과 함께 묶어 낸 것이다. 상담이 종결됨으로써 자칫 사장되기 쉬운 각종 상담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여 앞으로 법·제도 등의 개선 활동과 인권상담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마련하였다.

#### 나. 인권상담 가이드북2

위원회의 구제 및 조사대상을 중심으로 한 <인권상담 가이드북1>에 이어 2004년에는 진정사건 중 위원회법 제32조 및 제39조에 의해 각하·기각된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인권상담 가이드북2>를 발간하였다. <인권상담 가이드북2>는 상담내용과 진정내용, 결정문 및 외국 사례,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 판례 등 풍부한 관련 자료를 통해 진정내용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위원회 조사 및 권리구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상담 및 구제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 다. 면전진정 가이드북 2

면전진정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3년에는 면전진정 접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매뉴얼로 <면전진정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2004년에는 그동안 축적된 면전진정 상담사례 및 업무를 유형별로 분석한 <면전진정 가이드북2>을 발간하여 면전진정 관련 업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면전진정 업무 체계를 크게 개선하고자 하였다.

## | 제 3 절 | 평 가

2004년에는 인권상담, 진정사건 접수, 안내 등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양적·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는 위원회가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면전진정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면전진정 및 상담에 대한 구금·보호시설 수용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가 전보다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권상담사례집> 및 <인권상담 가이드북2>를 발간하고, 인권상담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권 상담 시스템의 체계화를 꾀하였으며, 전문상담원 및 직원들의 인권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낼 수 있었다.

한편, 위원회는 인권 소외계층의 위원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장애인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의 상담이나 진정제기는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따라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  |  |
|--|--|--|
|  |  |  |
|--|--|--|

전문상담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상담 인력을 불안정한 지위의 자원활동 전문상담원 제도를 통하여 충원하고 있어, 상담직의 정규직화를 통하여 상담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업무의 공신력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 제1절 | 개 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함)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을 조사한 후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사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각하 또는 기각하고,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재발방지 및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2004년 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를 시행함과 아울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접수된 진정사건을 분석하여 경찰, 검찰, 구금시설,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을 도출하고,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하였다. 나아가 각하나 기각으로 종결된 진정이라도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련 부서에 이첩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2004년은 특히 직권조사를 활성화한 해였다. 군 순직자 처리과정에 대한 직권조사, 공공도서관 등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직권조사,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인권침해 예방지침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사건 조사 후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보다 인권교육 등 관련자의 인권의식을 높여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 제 2 절 | 주요 추진실적

### 1.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

2004년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표 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627건이 접수되어 전년도에 비해 52.1%(1,586건) 증가하였다. 진정은 해마다 대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가 국민에게 인권보호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04년 종결한 사건수는 4,93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56.3%(1,795건) 증가하였다. 진정사건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조사관의 사건해결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진정처리 체계가 안정화된 결과로 보인다.

[표 2-3-1]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건)

| 구 분      | 접수건수   | 사건종결  | 조사진행  |
|----------|--------|-------|-------|
| 누 계      | 10,501 | 9,434 | 1,067 |
| 2004년    | 4,627  | 4,932 | -     |
| 2003년    | 3,041  | 3,137 | -     |
| 2002년 이전 | 2,833  | 1,365 | -     |

#### (1) 인권침해사건 처리실적

2004년에 처리한 4,932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2-3-2]

와 같다. 즉, 고발 및 수사의뢰 6건, 법률  
구조 요청 4건, 징계권고 2건, 권고 79  
건, 합의종결 54건 등 인용처리건수가  
모두 145건이고, 그 밖에 기각 1,280  
건, 각하 3,306건, 이송 148건, 조사중  
지 53건이다.

2004년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활동  
의 주요한 특징은 사건 해결방법의 하  
나인 합의종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합의종결이란 조사과정에서 위원회의 개  
입 또는 주도로 진정사건의 당사자들이 갈등을 신속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  
는 것으로 위원회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한다. 합의종결은 단순 폭언 또는 반  
말, 불친절, 사소한 업무상의 실수 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진정인이 피진정인  
의 처벌 등을 원하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등에 주로 이용되었다.

또한 2004년 각하사건 3,306건 중  
진정을 취하한 경우는 1,477건으로 전  
체의 45%에 이른다. 진정 취하의 사유  
는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후 진정 원  
인이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사  
관의 해결 능력 향상 및 진정처리 체계  
가 일정한 수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진정취하의 사유는 주로 위원회 조사  
착수 후 진정원인이 해소된 경우가 많아, 조사관의 해결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진정사건에 대해 논의 중인 인권침해조사국 조사관들



[표 2-3-2] 처리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 분     | 처리 유형 |         |        |       |     |      |      |       |       |     |      |
|---------|-------|---------|--------|-------|-----|------|------|-------|-------|-----|------|
|         | 소계    | 고발, 수사외 | 법률구조요청 | 징계 권고 | 권고  | 긴급구제 | 합의종결 | 기각    | 각하    | 이송  | 조사중지 |
| 사건수     | 9,434 | 18      | 4      | 21    | 144 | 4    | 77   | 2,133 | 6,690 | 290 | 53   |
| 2004년   | 4,932 | 6       | 4      | 2     | 79  | -    | 54   | 1,280 | 3,306 | 148 | 53   |
| 2003년   | 3,137 | 9       | -      | 3     | 57  | 2    | 23   | 717   | 2,210 | 116 | -    |
| 2002년이전 | 1,365 | 3       | -      | 16    | 8   | 2    | -    | 136   | 1,174 | 26  | -    |

한편, 인권침해 분야 진정사건의 대상 기관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표 2-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급시설 관련이 4,634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이 2,229건으로 21%를 차지하고 있다. 군대 및 보호시설은 각각 243건, 217건으로 약 2%의 낮은 수치를 보여 인권침해 논란이 많음에도 실제 진정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에 따른 상명하복 구조로 진정제기가 곤란한 군대 조직과 소외계층인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통해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표 2-3-3] 대상 기관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출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건)

| 구 분    | 접 수 (A) | 사 건 종 결 |         |       |      |     |      |       |     |       |      |      |
|--------|---------|---------|---------|-------|------|-----|------|-------|-----|-------|------|------|
|        |         | 소계 (B)  | 고발, 수사외 | 징계 권고 | 긴급구제 | 권고  | 법률구조 | 기각    | 이송  | 각하    | 합의종결 | 조사중지 |
| 계      | 10,501  | 9,434   | 18      | 21    | 4    | 144 | 4    | 2,133 | 290 | 6,690 | 77   | 53   |
| %      | -       | 100.0   | 0.2     | 0.2   | 0.0  | 1.5 | 0.0  | 22.6  | 3.1 | 70.9  | 0.8  | 0.6  |
| 검찰     | 637     | 575     | 2       | -     | 2    | 6   | -    | 112   | 6   | 444   | -    | 3    |
| 경찰     | 2,229   | 1,973   | 7       | 18    | 2    | 39  | -    | 512   | 32  | 1,290 | 58   | 15   |
| 구급     | 4,634   | 4,205   | 2       | 2     | -    | 68  | 4    | 1,208 | 246 | 2,640 | 7    | 28   |
| 보호     | 217     | 162     | 3       | -     | -    | 2   | -    | 58    | 3   | 90    | 3    | 3    |
| 군대     | 243     | 198     | 1       | -     | -    | 3   | -    | 18    | -   | 175   | -    | 1    |
| 기타국가기관 | 2,541   | 2,321   | 3       | -     | -    | 26  | -    | 225   | 3   | 2,051 | 9    | 3    |

## (2) 인권침해 진정사건 주요 조치내역

위원회가 처리한 인권침해 분야 진정사건 중 고발, 수사개시 의뢰, 권고, 합의권고 등 인용사건의 대상 기관별 주요 현황은 [표 2-3-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3-4] 대상기관별 주요 조치내역

### □ 검찰 관련

| 조치유형 | 사 건 명                   | 조 치 내 용                                                                                          | 의결일자        | 이행현황                 |
|------|-------------------------|--------------------------------------------------------------------------------------------------|-------------|----------------------|
| 수사의뢰 |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 혐의인정, 현직검사 수사의뢰                                                              | 2004.2.23.  | 무혐의처분<br>(자체인권교육 실시) |
| 권고   | 전과사면복권 관련 인권침해          | 사면복권 사실을 경찰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2004.3.31.  | 수용                   |
| 권고   | 부당 소재 수사                | 기소종지자에 대한 소재 수사시 동명이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규정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 2004.4.30.  | 수용                   |
| 권고   | 성폭력 피해자 부당 수사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시 보호자입회를 불허하고 장시간 조사한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 및 재발방지 권고                                 | 2004.5.10.  | 수용                   |
| 권고   | 긴급체포사실 미통지              | 고소인 조사 중 무고죄로 긴급체포 후 가족에게 체포사실 미통지한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권고                                             | 2004.5.10.  | 수용                   |
| 권고   | 진술조서 등사거부로 인한 알권리 침해    | 사건관계인이 자신의 진술조서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개정권고                                                    | 2004.6.9.   | 검토 중                 |
| 권고   |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 피의자접견교통권을 제한할 경우 피의자접견금지결정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규정상 제반절차를 준수하도록 인권교육 실시 권고                                 | 2004.6.23.  | 수용                   |
| 권고   | 피의자 주거진술서 작성시 진술거부권 미고지 |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주거진술서’ 양식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명시할 것과 이 진술서 작성 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할 것, 양식과 명칭을 정형화·표준화할 것 권고 | 2004.8.23.  | 수용                   |
| 권고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할 것, 피의자 접견금지결정을 할 경우 접견금지 대상의 범위, 그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실시할 것 권고      | 2004.11.23. | 검토 중                 |



□ 경찰 관련

| 조치유형   | 사건명(기관분류)              | 조치내용                                                                                      | 의결일자       | 이행현황                                         |
|--------|------------------------|-------------------------------------------------------------------------------------------|------------|----------------------------------------------|
| 수사의뢰   | 긴급체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진정인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상태로 진정인의 얼굴을 구타한 피진정인에 대해 수사 의뢰                                   | 2004.1.26. | 무혐의처분                                        |
| 인권교육   |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 수배해제를 지연 처리한 피진정인에 대해 자체인권 교육 수강 권고                                                       | 2004.2.11. | 수용                                           |
| 고발     | 수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참고인 조사과정 중 야구방망이 등으로 구타한 피진정인 고발                                                          | 2004.2.23. | 불구속 기소                                       |
| 고발     | 집회참여방해 및 불법감금          | 집회참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정인을 차량에 태워 4~5시간 동안 감금한 피진정인 고발                                           | 2004.2.23. | 불기소처분<br>⇒ 재정신청<br>(2004.5.28.<br>서울고법) ⇒ 기각 |
| 경고     |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            | 변호인과의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한 피진정인 징계 및 부서책임자에 대한 서면경고 권고                                           | 2004.3.31. | 수용                                           |
| 인권교육   |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 체포 및 구속사실 통보를 지연한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교육 실시 권고                                    | 2004.3.31. | 수용                                           |
| 인권교육   | 적법절차 위반                | 밀실조사한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및 직원교육 실시 권고                                                            | 2004.4.2.  | 수용                                           |
| 인권교육   | 신체의 자유 침해              | 긴급체포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체포행위를 한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 수강 권고                                                 | 2004.4.16. | 수용거부                                         |
| 인권교육   | 미란다원칙 미고지              |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구인장을 집행한 피진정인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 2004.4.30. | 수용                                           |
| 인권교육 등 | 구속전 피의자신문 신청권 침해       | 피의자 의사와 달리 구속영장신청서에 심문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잘못 기재하여 영장실질심사기회를 박탈한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실시 및 사례전파 등 재발방지 권고 | 2004.5.10. | 수용                                           |
| 인권교육 등 | 불심검문절차 미준수에 의한 인권침해    |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심검문을 실시한 피진정인에 대해 불심검문 관련 위원회 제시자료 소감문 제출, 소속기관에는 정기적인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 2004.6.4.  | 수용                                           |

| 조치유형 | 사건명(기관분류)        | 조치내용                                                                                               | 의결일자       | 이행현황 |
|------|------------------|----------------------------------------------------------------------------------------------------|------------|------|
| 인권교육 | 부당수사             | 조사과정에서 폭언 및 밤샘조사를 행한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및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 2004.6.9.  | 수용   |
| 인권교육 | 위법한 불심검문         | 일선경찰관이 불심검문의 요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불심검문 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기관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 2004.6.9.  | 수용   |
| 인권교육 | 강제지문 채취          | 진정인의 지문을 영장 없이 강제로 채취한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 실시 권고                                                         | 2004.6.28. | 수용   |
| 권고   | 부당면회 금지          | 피해자의 면회요청을 부당하게 금지한 행위에 대해 범죄수사규칙,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서대문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주의조치 및 직원교육 실시 권고 | 2004.8.9.  | 수용   |
| 경고 등 | 장애청소년 보호조치 미흡    | 정신지체장애인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제반 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피진정인들에 대해 경고 주의조치 및 자체 직원교육 실시 권고                     | 2004.10.11 | 수용   |
| 권고   | 경찰서 유치장 처우 관련    | 유치장 수용자에게 침구류 및 세면도구 등 기초적인 생활용품을 적절히 지급하도록 할 것 권고                                                 | 2004.11.8. | 검토 중 |
| 권고   |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 체포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면회 제한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및 소속직원들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 2004.11.8. | 수용   |

#### □ 구금시설 관련

| 조치유형 | 사건명                        | 조치내용                                                                  | 의결일자       | 이행현황   |
|------|----------------------------|-----------------------------------------------------------------------|------------|--------|
| 권고   | 의료 관련 인권침해                 | 보유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진료 및 검사가 어려운 경우 외부 의료인 활용 등 수용자 진료를 위한 종합적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 | 2004.1.16. | 수용     |
| 권고   | 수용자 수면권 침해                 | 교정사고의 발생위험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침시간에 조도를 낮추어 수용자의 수면권을 보장할 것 권고            | 2004.1.16. | 수용     |
| 법률구조 | 시설 및 처우 관련 인권 침해(수용자 자살사건) | 구금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생명권이 침해된 점 인정, 대한변협에 법률구조 요청                    | 2004.1.16. | 수용(변협) |
| 권고   | 운동, 목욕, 계구 사용 등            | 조사실 수용자에 대해 운동, 목욕을 금지하지 않도록 권고                                       | 2004.2.11. | 검토 중   |



| 조치유형   | 사 건 명                      | 조 치 내 용                                                                                                           | 의결일자       | 이행현황                |
|--------|----------------------------|-------------------------------------------------------------------------------------------------------------------|------------|---------------------|
| 권고     | 시설 및 처우 관련                 | 수용자간 싸움 등 발생시 같은 거실 다른 수용자들의 TV시청 및 선풍기 사용 제한에 대해 시정 권고                                                           | 2004.2.27. | 수용                  |
| 권고     | 시설 및 처우 관련                 | 징벌실 면적을 법무시설규칙에 정하고 있는 1인당 0.9평으로 개수할 것 권고                                                                        | 2004.2.27. | 수용                  |
| 인권교육   | 수용자 인격권 침해                 | 진정인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인격적 모욕을 준 피진정인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 2004.4.2.  | 수용                  |
| 권고     | 서신열람에 의한 사생활 침해            | 진정인 서신을 임의로 열람하고 검열한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권고 사동담당교도관의 수용자 서신 열람 및 검열 금지토록 권고                                             | 2004.4.2.  | 대체수용<br>(자체인권교육 실시) |
| 권고     | 외부병원 진료거부                  | 진정인에게 자비 외부 병원진료 허용할 것 권고                                                                                         | 2004.4.2.  | 수용                  |
| 권고     | 위암 수용자 항암제 투약비 지급요구        | 위암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값 지급 및 필요시 형집행정지 건의 권고                                                                              | 2004.4.16. | 검토 중                |
| 권고     | 독거실 창문 관련                  | 독거실 외벽창문 자연채광 및 통풍이 되도록 별도 시설기준 수립하거나 법무부시설기준규칙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 권고                                             | 2004.4.17. | 수용                  |
| 권고     | 처우 관련 인권침해                 | 의료적 관점에서 진정인에게 운동화 착용 허가하도록 권고                                                                                    | 2004.4.30. | 수용                  |
| 법률구조 등 | 수용자 사망 관련                  | 자살징후가 있었음에도 관리감독 소홀로 진정인이 자살했다고 판단, 자살우려자에 대한 상담 및 교화 활동 강화 등 자살사고 예방 대책 수립 권고(법무부)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대한변협)      | 2004.4.30. | 대한변협 수용<br>법무부 검토 중 |
| 권고 등   | 변형계구(일명 '족자승')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 규정에 어긋난 계구사용(족자승)으로 진정인에게 고통을 준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및 피진정기관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 권고, 변칙적 계구사용 전면금지 권고(법무부장관)                     | 2004.5.19. | 검토 중                |
| 경고     |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수용자의 목을 조른 피진정인들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 권고                                                                   | 2004.6.4.  | 검토 중                |
| 권고     | 정신질환자 연속 징벌                |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의료체계 개선 및 과도한 징벌 집행이 없도록 재발방지 권고                                             | 2004.6.4.  | 수용                  |
| 인권교육   | 의료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 응급치료를 마치지 않은 진정인을 파출소로 연행한 피진정인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치아통증을 호소했음에도 2개월여 동안 방치하고 진단서 미발급으로 피해입증에 불이익을 준 의무과장 경고 토록 권고 | 2004.6.4.  | 수용                  |

| 조치유형 | 사 건 명                         | 조 치 내 용                                                                                                   | 의결일자        | 이행현황                          |
|------|-------------------------------|-----------------------------------------------------------------------------------------------------------|-------------|-------------------------------|
| 권고   | 미결수용자에 대한 부당계구 사용             | 중형선고 예상 미결수용자에 대한 장기간 계구 사용에 대해 기관장 경고 및 제도개선 권고                                                          | 2004.6.14.  | 일부수용<br>(제도개선 수용,<br>경고조치 거부) |
| 권고   | 수용자 신상명세서에 의한 인권침해            | 관리를 목적으로 수용자 신상명세서를 작성한 피진정기관에 대해 교도소장 경고 및 기작성된 신상명세서 폐기, 직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 2004.7.14.  | 수용                            |
| 권고   | 교도소 일반직원에 의한 부당 의료행위          |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 피진정인 주의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교육 등 실시 권고                                                           | 2004.8.16.  | 검토 중                          |
| 권고   | 교정작품전시회 작품작 저작권 침해            | 교정작품 전시회 작품작에 대해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처분토록 하고 교도소에서 제작비를 지원한 경우 사전에 자원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교정작품 관련 규정을 마련, 시행할 것 등 권고  | 2004.8.16.  | 수용                            |
| 권고   | 서신분실로 인한 통신의 자유 침해            | 수용자의 서신이 분실 또는 누락되는 일 없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 2004.8.23.  | 검토 중                          |
| 법률구조 | 수용자 사망사건 관련                   | 수용자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 소홀 인정, 대한변협에 법률구조 요청                                                                   | 2004.8.23.  | 검토 중                          |
| 법률구조 |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수용자 생명권 침해       | 진정인이 관찰소홀 및 진료 부주의로 사망했다고 인정, 대한변협에 법률구조 요청                                                               | 2004.8.23.  | 검토 중                          |
| 법률구조 |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수용자 생명권 침해       |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뇌종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 대한변협에 법률구조 요청                                                         | 2004.8.23.  | 검토 중                          |
| 권고   | 구금시설 수용거실내 CCTV 설치, 운영 등 인권침해 | 임의로 수용거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행위에 대해 구금시설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법무부)과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피진정기관) 권고 | 2004.10.12. | 검토 중                          |
| 권고   | 가출소 취소 결정 관련 인권침해             | 사회보호위원회의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감호가출소 취소업무 개선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권고                                    | 2004.11.8.  | 검토 중                          |
| 주의   | 외부교통권 침해                      | 구치소측에서 출정을 보내주지 않아 법원 3차 공판에 불출석 처리, 소송권을 침해받은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및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 2004.11.22. | 검토 중                          |



□ 군 관련

| 조치유형       | 사 건 명           | 조 치 내 용                                                                                                       | 의결일자       | 이행현황           |
|------------|-----------------|---------------------------------------------------------------------------------------------------------------|------------|----------------|
| 권고         | 군교도소 시설 및 처우 관련 | 형의 선교로 제적된 남자장교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일반 교도소 이송을 제한하는 규정 개정토록 권고                                                        | 2004.2.27. | 검토 중           |
| 권고<br>법률구조 | 육군본부 직무유기       | 훈령 개정으로 순직 처리된 사실을 지연통지하여 지연기간 동안 보호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최고책임자 징계 권고 및 해·공군도 전면 재심사후 즉시 통보할 것 권고, 진정인을 위해 법률구조 요청 | 2004.7.12. | 수용/<br>법률구조 거부 |

□ 기타 기관 관련

| 조치유형 | 사 건 명                | 조 치 내 용                                                                                                  | 의결일자       | 이행현황    |
|------|----------------------|----------------------------------------------------------------------------------------------------------|------------|---------|
| 권고   | 직업의 자유 침해            | 논산시청이 기능직 10급을 채용하면서 특정분야 근무경력을 요구한 행위는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이므로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 2004.2.11. | 수용      |
| 권고   |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 주차위반 체납과태료 납부안내문 발부시 사생활 노출 등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통지방법 개선 권고                                                    | 2004.4.17. | 수용      |
| 고발 등 | 정신병원 수용자 신체의 자유 침해   | 정신보건법상 6개월 이상 계속 입원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 퇴원처리한 행위에 대해 해당 병원장 고발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정내용 통보 | 2004.6.4.  | 벌금100만원 |
| 고발 등 | 정신병원 수용자 신체의 자유 침해   |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 명령이 났음에도 실제 퇴원을 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처리한 행위에 대해 해당 병원장 고발                                   | 2004.6.4.  | 불구속 기소  |
| 권고   | 비밀 전학생 신상정보 보호 소홀    | 가정폭력으로 인한 비밀 전학시 교육기관은 학생의 신상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등 권고                                                       | 2004.6.4.  | 수용      |
| 권고   | 도서관 이용시 사생활 침해 등     | 진정인의 실명이 거론된 인신공격성 글을 도서관 휴게실에 게시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직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 조치 권고 및 직원 인권교육,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 2004.7.14. | 수용      |
| 주의   | 대학병원 간병인직업 소개소 등록 관련 | 간병인들에게 유료 직업소개소 등록을 강요한 행위와 관련, 대학병원장에게 주의 촉구                                                            | 2004.7.14. | 수용      |

| 조치유형 | 사 건 명                    | 조 치 내 용                                                                                                                                                                                     | 의결일자        | 이행현황 |
|------|--------------------------|---------------------------------------------------------------------------------------------------------------------------------------------------------------------------------------------|-------------|------|
| 권고   | 중국동포 배우자<br>사증발급 불허      |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동포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br>입국금지해제 및 사증발급 권고                                                                                                                                               | 2004.8.16.  | 수용   |
| 권고   | 재판중 병역기피자<br>제제조치        |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진정인의 직장<br>에 해직을 권고한 행위에 대하여 병역법 제76조 등<br>개정 권고                                                                                                                         | 2004.8.23.  | 수용   |
| 권고   | 부안 핵폐기장 관련<br>자기운명결정권 침해 |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br>주의할 것과 부도덕한 행위 및 관련사업 추진비<br>집행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사실규명과<br>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부안군수에게는<br>미건학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유서를 당사자에게 반<br>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br>할 것을 권고 | 2004.10.12. | 검토 중 |
| 권고   | 보도교 설치 관련<br>직권남용        | 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br>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급경사 보완, 참 및 손<br>잡이 설치, 편평한 인도의 확보 등) 권고                                                                                                       | 2004.10.12. | 수용   |
| 권고   | 교수 인격권 침해                | 학교에서 피해자가 부정입학하였다는 내용의 유인<br>물을 배포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징계권고                                                                                                                                       | 2004.11.8.  | 수용   |
| 권고   | 행려병자 취급상의<br>인권침해        | 행려자의 신원확인 등 사후관리상의 의무해태에 대<br>하여 주의 권고                                                                                                                                                      | 2004.11.22. | 검토 중 |

## 2. 검찰·경찰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 경찰 가혹행위에 대해 고발

피해자 정모씨는 2003년 3월 발생한 농협 현금 불법인출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게 야구방망이로 구타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피진정인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며 야구방망이로 대퇴부와 가슴 등을 구타하는 등 약 7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물품을 압수 수색하면서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가혹행위 등을 주도한 경찰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위법행



위를 보조한 경찰관 등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검찰은 당해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해당 경찰서장은 경고조치 권고를 받은 4명의 경찰관을 경고조치하였다.

### (2) 체포사실 미통지 등 적법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 권고

진정인은 본인이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다 오히려 무고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나 체포 후 가족에게 통지할 기회 등을 얻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무고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가족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으며 다음날 오후 진정인을 불러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며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다음날 석방하였지만 진정인의 가족들에게 긴급체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87조의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하도록 권고하였다.

### (3)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관련 징계조치 권고

시위현장에서 체포, 연행된 진정인의 접견실에 경찰관이 들어와 접견내용을 청취·기록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접견실 담당 경찰관이 체포·구속인 접견부를 들고 접견실에 들어가 접견을 청취하고 변호인과의 대화내용을 기록하여 변호인이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재차 변호인의 주소지를 묻고 기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위가 헌법 제12조 제4항에 보장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피진정인들을 징계 또는 주의조치하도록 소속기관에 권고

하였다.

#### (4) 유치장 처우 관련 개선조치 권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수용자에게 세면도구 및 베개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기초적 생활용품인 베개, 세면도구 등을 필요로 하는 수용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수용자의 침구류 및 생활필수품 지급 등에 관한 행형법, 같은 법 시행령,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됨은 물론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관서 유치장 수용자에게 침구류 및 세면도구 등 기초적 생활용품을 적절히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 (5) 성폭력사건 조사시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지방검찰청 소속 피진정인들이 미성년자인 강간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 무리한 대질조사 및 장시간 조사를 강행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강간으로 인해 임신중독증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소환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의사를 살피지 않고 조사를 실시한 점 △대질조사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란히 앉혀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장시간 계속하여 조사를 강행한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입회를 원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점 등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들이 『성범죄조사및공판관여시피해자보호에관한지침』(대검찰청 지침)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되는 인격권 및 헌법 제12조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을 경고하도록 권고하였다.



### (6) 부당한 불심검문 개선 권고

불심검문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알리지 않고, 본인의 소속·성명을 밝히지 않으면서 대학 등 특정장소의 출입을 막아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이 다수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불심검문의 요건을 획일적·기계적으로 판단하거나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문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관행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각 지방경찰청 및 각급 경찰교육기관을 통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불심검문을 할 경우 정복 경찰관은 물론이고 전·의경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다.

## 3.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 수용자간 연대책임제 폐지 권고

혼거실 수용자가 규율 위반으로 조사 수용되거나 징벌을 받을 경우 그와 무관한 다른 수용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해당 거실내 TV시청 및 선풍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 해당 교도소는 자체 수립한 ‘수용자 TV시청 제한 계획’에 따라 관규 위반자가 발생하면 해당 거실내 TV와 선풍기 사용을 3~10일간 제한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다른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를 이유로 TV시청 및 선풍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자기책임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교도소장에게 관규 위반에 대한 직접 책임이 없는 수용자가 불이

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용자 TV시청 제한 계획’을 개정할 것과 선풍기 사용 제한 조치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교도소를 포함한 전 구금시설에 수용자 연대책임에 의한 TV시청 및 선풍기 사용 제한을 중지하도록 지시하였다.

## (2) 수용자의 수면권 보장 권고

진정인은 ○○교도소 등에서 취침시간에 거실 조명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수면권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일부 교도소는 취침시간에 취침등을 사용하거나 부분소등하고 있으나 피진정기관을 포함한 28개 수용시설은 취침시간에도 동일한 조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수용자가 취침하는 시간에 동일하게 조도를 유지하는 것은 취침시 조도를 줄이게 되어 있는 『법무시설기준규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수면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교정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 취침시간에 조도를 낮출 것과 수용자의 수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설 개선 및 일선 교정기관을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2006년까지 취침등이 설치되지 않은 39개 구금시설에 취침등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 (3) 수용자 서신 부당 열람 금지 등 권고

○○교도소 김모씨는 서신담당이 아닌 사동 근무자가 자신의 서신을 열람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수용자 서신검열 권한은 교회직 공무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음에도 사동담당 교도관이 관행적으로 수용자의 서신을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사동담당 교도관이 수용자의 서신을 열람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사동 근무 교도관이 임의로 수용자의 서신을 개봉, 열람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교도소에서 제기된 ‘변호사 등에게 발송한 서신이 분실되어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의 등기서신 5통이 교무과 서신담당 교도관에게 인계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음을 밝혀내고 서신 인수인계와 관련된 서류를 구비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4) 계구의 변형 사용에 대해 인권교육 등 재발방지 권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이모씨는 가족수감 등 계구 시정이 억울하여 거실문을 차면서 이를 해제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포승으로 진정인의 다리와 팔을 뒤로 묶어 1시간 이상 방치하는 등 계구의 변형 사용으로 신체적 고통을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수용자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고성을 지르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일시적 격리나 다른 계구의 사용 등 이를 제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하반신을 완전히 제압하는 방식으로 계구를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계구의 변형 사용을 지시한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하고, 앞으로 계구를 변형 사용하지 않도록 피진정기관의 교도관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5) 자살 및 의료조치 미흡에 대한 법률구조 요청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가 5~6일 전부터 호흡곤란 증세 등을 일으켜 동료 수용자들이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구치소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

고 피해자 유족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가 보름간 두통 및 중이염을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진정에 대하여 의료진의 관찰 소홀 및 과오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인정,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교도소에서 자살한 서모씨에 대해 피해자가 자살하기 전 여러 가지 자살 예후가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자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과 교도소내 징벌자의 심리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 및 교화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 (6) 사회보호위원회의 가출소 취소 업무 개선 권고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고 만기출소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뒤늦게 가출소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현행 법령은 피보호 관찰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으로 구속되면 보호관찰을 해제하고 보호감호소에 수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들은 재범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만기출소한 후 1년여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보호감호소에 수감되었다.

위원회는 진정인들에 대한 가출소 취소결정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긴 하나 가출소 취소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나치게 도과하여 결정함으로써, 형기종료 및 집행유예 선고 이후 진정인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 및 사회 복귀 노력이 과도하게 제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위원회의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결정이 적시(고의재범 형 확정 후 2월 이내 등)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출소 취소업무 개선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

#### (7) 대용감방의 처우 및 운영 관련 정책 권고

대용감방의 의료, 운동, 급식, 보건 및 위생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전국 8개 대용감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대용감방 유치인들 중 환자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외부 진료에 의존하고 있고, 운동 및 일광욕 실시 전무, 식사의 질 열악, 보건 및 위생조치 미흡, 과밀수용 등 전반적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수용자의 경우 여성 근무자가 전무하여 남성근무자의 감시 아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행 경찰청 소관 업무인 대용감방의 운영을 법무부로 이관하고, 경찰청장은 이관시까지 △건강과 보건의료 조치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과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 규정된 일광욕과 외부 운동 실시 △충분한 영양과 위생적으로 잘 조리된 음식의 제공 △자연채광과 통풍이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 유지 △여성 유치인이 있는 경우 여성근무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 (8) 순직자 처리 사실 미통보에 대해 통지의무 이행 등 권고

육군본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 민모씨의 사망 구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하고도 이를 늦게 통지하여 6년 반 동안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육군본부가 직권으로 1996년과 1997년 네 차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창군 이후 병·변사 처리된 45,804명 중 9,756명을 전사 및 순직으로 변경하

고도 이를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공군·해군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조사 결과, 공·해군본부는 육군본부와 달리 직권으로 재심사한 사실은 없으나 민원이 제기된 자를 재심사해 해군 28명, 공군 4명을 순직으로 변경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해군의 경우 상당수 순직대상자들이 병·변사자로 잘못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공·해군 창군 이후 병·변사자의 사망 구분에 대하여 전면 재심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육군본부가 해당 유족에게 순직 변경 사실을 미통지한 것은 해당 유족의 알 권리 및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실무책임자를 징계할 것, 통지의무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 4.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 정신병원 수용자 신체의 자유 침해 관련 개선 권고

정신의료시설에서 모든 환자 차트에 동일한 상담내용을 기재하는 등 진료를 소홀히 하고, 10년 이상 수용된 환자들에 대해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처리를 함으로써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입원환자들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퇴원시키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이 같은 행위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4조 제4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을 고발조치하였다.



## (2) 도서관 이용시 사생활 침해 관련 경고 등 조치 권고

진정인은 ○○시립도서관이 도서관 열람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운영하고, 무인좌석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토록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글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실었으나 도서관 직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글을 무단 삭제하고, 진정인의 실명이 거론된 인신공격성 글을 도서관 휴게실에 게시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글이 비록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미 공개된 글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3자가 인쇄하여 특정한 의도로 공공장소에 전시하여 공중에게 보인 행위는 진정인의 명예 등 인격권(헌법 제10조)과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17조)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무인좌석발급기를 이용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된 정보를 1년 동안 보유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해당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의 경우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였으므로 구제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 실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3) 재판 중인 병역기피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폐지 권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임에도 소집통지에 불응,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직장에 다니던 진정인은 OO지방병무청이 진정인의 직장에 진정인을 해직시키도록 조치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피진정기관의 행위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취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위 규정이 무죄추정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병역법 제76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힘에 따라 진정인이 다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 (4) 중국동포 배우자에 대한 사증발급 권고

피해자는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다 진정인과 결혼하기 위해 자진 신고한 후 출국 명령에 따라 2003년 1월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6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두 차례 비자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증발급 불허처분은 헌법 및 국제규약, 아동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정 및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 보장의무에 반하는 처분이라 판단하고, 진정인과 피해자가 혼인을 위해 자진 신고한 후 출국한 점과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국가로 출입국한 점 등을 감안, 진정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해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사증을 발급해 줄 것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 (5) 핵폐기장 설치 관련 자기운명결정권 침해 관련 권고

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원자력발전소에 견학시키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받는 등 지역민과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관계기관의 부적



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미견학 공무원에게 사유서를 제출토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견학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유서를 당사자에게 반환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과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 | 제 3 절 | 평 가

2004년 진정사건 처리건수는 4,932건으로 2003년 3,137건에서 57% 증가하였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2003년 6개월에서 2004년 4개월로 단축되었다. 진정처리 결과 인권침해를 인정한 사건은 2002년 29건, 2003년 83건, 2004년 143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조사활동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 원만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합의종결’ 방식이 정착됐다는 점이다. 이는 당사자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정인, 피진정인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합의종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적극 연구하여 이런 해결방식의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둘째,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인권보장에 노력했다는 점이다. 특히, 여중생 성폭행 피해자 수사과정에 대한 직권조사는 성폭행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부안 핵폐기장 관련 진정은 국책사업에 대한 인권적 검토와 지역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함을 확인시켰다.

넷째, 위원회 출범 이후 인권침해 인용사례를 분야별·유형별로 정리한 <결정레집>을 발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도서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인권의식 향상을 꾀하였다.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 제1절 | 개 요

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 18개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고용(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 등)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그 우대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2004년 위원회는 389건의 차별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를 실시하여 21건을 시정 권고하고, 4건을 합의종결하였으며, 67건을 조사 중 해결하였다. 아울러 차별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주요 차별행위 권고사항에 대한 대국민 보도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차별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주력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차별문제로 아직 부각되지 못한 색각이상자에 대한 고용 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는 이후 진정 사건 처리 및 정책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 | 제 2 절 | 주요 추진실적

### 1. 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2004년 차별행위 관련 진정사건은 총 389건으로 전년 358건에 비해 소폭(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차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행위와 관련된 진정사건은 2004년 12월 말 현재 총 접수 936건 중 766건이 종결처리(81.9%)되었고, 170건이 조사 또는 검토 중에 있다.

종결처리된 766건을 살펴보면 진정의 내용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되어 제도개선 또는 인권교육 등을 권고한 것이 59건으로 총 종결사건 대비 7.7%이고,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종결된 사건이 9건으로 1.2%, 사실이 아니거나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의 이유로 기각된 사건이 140건



차별조사국의 사무실 전경

으로 18.3%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진정 후 취하한 경우 등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이 551건으로 총 종결건수의 71.9%를 차지하였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설득, 구제조치가 이루어져 해결된 사건이 2002년 7건, 2003년 16건, 2004년 44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04년 조사 중 해결된 사건으로는 B형 간염보균자 채용, 이화여대 금혼학칙 개정을 비롯해 주민등록번호 없는 외국인도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 시스템을 개선한 사건 등이 있다.

[표 2-4-1]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 분          | 접 수<br>[전년사건<br>이월] | 처 리 유 형      |             |            |            |               |               |            |            | 조사진행<br>[전년사건<br>이월] |
|--------------|---------------------|--------------|-------------|------------|------------|---------------|---------------|------------|------------|----------------------|
|              |                     | 소계           | 권고          | 합의<br>종결   | 조정         | 기각            | 각하            | 이송         | 조사<br>중지   |                      |
| 사건수<br>(비율%) | 936                 | 766<br>(100) | 59<br>(7.7) | 9<br>(1.2) | 1<br>(0.1) | 140<br>(18.3) | 551<br>(71.9) | 4<br>(0.5) | 2<br>(0.3) | 170                  |
| 2002년        | 189                 | 102          | 8           | 2          | -          | 18            | 73            | 1          | -          | 87                   |
| 2003년        | 358[87]             | 212[84]      | 14[16]      | 2[1]       | -          | 23 [25]       | 173[42]       | -          | -          | 146[3]               |
| 2004년        | 389[149]            | 238[130]     | 8[13]       | 3[1]       | -(1)       | 24[50]        | 201[62]       | 2[1]       | -[2]       | 151[19]              |

※ 2002년 통계는 2001.11.26.~12.31. 접수된 사건을 포함한 수치임.

※ [ ]는 전년까지 접수된 사건 중 이월되어 종결 및 처리 중인 사건수

※ 권고 : 재발방지 권고, 인권교육 권고, 제도·정책·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 (1) 차별행위 유형별 현황

#### 가. 영역별 진정사건 현황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04년 말까지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영역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36건 중 고용과 관련된 진정이 458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분야의 진정이 125건(13%), 교육시설 등 이용 분야의 진정이 53건(6%)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별사건 접수 현황은 2004년도 예외는 아니어서 총 389건의 진정 중 고용과 관련된 진정이 175건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분야의 진정이 54건(14%), 교육시설 등 이용 분야 진정이 26건(7%) 접수되었다. 고용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 영역은 총 175건이 접수되어 모집이 51건(29%), 채용이 22건(17.5%), 배치 18건(10%), 해고 17건(1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화·용역 등 공급이나 이용 영역은 총 54건 중 재화이용 관련이 40건(74%), 용역 관련이 10건(19%), 교통수단



관련이 2건(4%)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 이용 영역에서는 총 26건이 접수되었는데 교육시설 관련 진정이 24건(9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위 3개 영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차별사건으로 분류된 기타 사건은 300건으로 총 진정사건의 32.1%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2] 차별행위 진정사건 영역별 진정 현황

(단위: 건(%))

| 구 분 |            |     | 고용에서의 차별(458건) |     |     |     |     |     |     |           |     |     |     |     | 재화 등 공급이나<br>이용에서의 차별(125건) |      |      |     |      |      |            | 교육시설 등<br>이용 차별<br>(53건) |      |  | 기타 |
|-----|------------|-----|----------------|-----|-----|-----|-----|-----|-----|-----------|-----|-----|-----|-----|-----------------------------|------|------|-----|------|------|------------|--------------------------|------|--|----|
|     |            |     | 채용             | 해고  | 모집  | 임금  | 기타  | 배치  | 승진  | 임금외<br>급품 | 퇴직  | 정년  | 교육  | 재화  | 용역                          | 교통수단 | 상업시설 | 토지  | 주거시설 | 교육시설 | 직업<br>훈련기관 |                          |      |  |    |
| 접수  | 계          | 936 | 94             | 88  | 78  | 55  | 48  | 33  | 29  | 14        | 12  | 6   | 1   | 99  | 15                          | 4    | 4    | 1   | 2    | 45   | 8          | 300                      |      |  |    |
|     | 2002년      | 189 | 18             | 10  | 6   | 17  | 5   | 1   | 9   | 6         | 1   | 0   | 1   | 30  | 3                           | 2    | 2    | 0   | 1    | 7    | 3          | 67                       |      |  |    |
|     | 2003년      | 358 | 54             | 61  | 21  | 26  | 9   | 14  | 11  | 4         | 6   | 3   | 0   | 29  | 2                           | 0    | 1    | 1   | 0    | 14   | 3          | 99                       |      |  |    |
|     | 2004년      | 389 | 22             | 17  | 51  | 12  | 34  | 18  | 9   | 4         | 5   | 3   | 0   | 40  | 10                          | 2    | 1    | 0   | 1    | 24   | 2          | 134                      |      |  |    |
|     | 구성비<br>(%) | 100 | 10.0           | 9.4 | 8.3 | 5.9 | 5.1 | 3.5 | 3.1 |           | 1.5 | 1.3 | 0.6 | 0.1 | 10.7                        | 1.6  | 0.4  | 0.4 | 0.1  | 0.2  | 4.8        | 0.9                      | 32.1 |  |    |
| 종결  |            | 766 | 68             | 81  | 56  | 52  | 27  | 24  | 27  | 14        | 11  | 4   | 1   | 89  | 11                          | 2    | 4    | 1   | 2    | 34   | 8          | 250                      |      |  |    |
| 미결  |            | 170 | 26             | 7   | 22  | 3   | 21  | 9   | 2   | 0         | 1   | 2   | 0   | 10  | 4                           | 2    | 0    | 0   | 0    | 11   | 0          | 50                       |      |  |    |

## 나. 사유별 진정사건 현황

[표 2-4-3]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진정 현황

(단위: 건(%))

| 구 분 |            |     | 성별  | 종교  | 장애   | 나이  | 사회적<br>신분 | 출신<br>지역 | 출신<br>국가 | 출신<br>민족 | 용모  | 혼인<br>여부 | 임신<br>출산 | 가족<br>상황 | 인종  | 피부<br>색 | 사상  | 전과  | 성적<br>지향 | 병력  | 학력  | 기타   |
|-----|------------|-----|-----|-----|------|-----|-----------|----------|----------|----------|-----|----------|----------|----------|-----|---------|-----|-----|----------|-----|-----|------|
| 접수  | 계          | 936 | 73  | 19  | 105  | 88  | 187       | 13       | 49       | 1        | 12  | 13       | 19       | 7        | 1   | 1       | 11  | 17  | 7        | 33  | 40  | 240  |
|     | 2002년      | 189 | 13  | 6   | 33   | 7   | 48        | 5        | 20       |          | 2   | 2        |          | 1        | 1   | 1       | 4   | 7   | 4        | 10  |     | 25   |
|     | 2003년      | 358 | 35  | 5   | 18   | 24  | 75        | 2        | 19       | 1        | 4   | 4        | 15       | 2        |     |         | 7   | 3   | 2        | 16  | 28  | 98   |
|     | 2004년      | 389 | 25  | 8   | 54   | 57  | 64        | 6        | 10       |          | 6   | 7        | 4        | 4        |     |         |     | 7   | 1        | 7   | 12  | 117  |
|     | 구성비<br>(%) | 100 | 7.8 | 2.0 | 11.2 | 9.4 | 20.0      | 1.4      | 5.2      | 0.1      | 1.3 | 1.4      | 2.0      | 0.7      | 0.1 | 0.1     | 1.2 | 1.8 | 0.7      | 3.5 | 4.3 | 25.6 |
| 종결  |            | 766 | 66  | 15  | 79   | 74  | 158       | 9        | 48       | 1        | 6   | 10       | 16       | 5        | 1   | 1       | 10  | 17  | 6        | 29  | 16  | 199  |
| 미결  |            | 170 | 7   | 4   | 26   | 14  | 29        | 4        | 1        | 0        | 6   | 3        | 3        | 2        | 0   | 0       | 1   | 0   | 1        | 4   | 24  | 41   |

2004년 접수된 진정건을 차별사유별로 살펴보면 나이에 의한 차별이 2003년 24건에서 5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나이에 의한 차별은 그리 민감하지 않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나이차별 관련 결정과 정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나이 차별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으며 나이가 새로운 차별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04년까지 장애 관련 사건은 11%를 차지하여 단일 사유별로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2004년에는 54건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의 비율이 이토록 높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주요한 차별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과제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다. 사유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표 2-4-4]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처리 현황 (2004년)

| 조치유형<br>차별유형 | 제도개선 및 인권교육 등 시정권고                                                            | 합의종결                        |
|--------------|-------------------------------------------------------------------------------|-----------------------------|
| 소계(25건)      | 21건(병합 4건 포함)                                                                 | 4건                          |
| 사회적 신분(9건)   | 기간제교사 차별(병합3건), 계약직 경력인정 차별, 일용잡급영양사 차별, 국가공인민간자격 취득자 차별(2건 병합) 등(9)          | -                           |
| 성별(3건)       | YMCA 여성회원의 총회의결권 차별, 상이등급 구분 차별, 순경 공채 시 남녀응시 연령 차별(3)                        | -                           |
| 장애(5건)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차별, 공무원임용시험시 지체장애자 등에 대한 보완조치 마련(2건 병합), 장애를 이유로 한 승진 차별(4) | 장애를 이유로 한<br>교육시설 이용 차별(1)  |
| 출신국가(1건)     | 외국인 조교수 임용 차별(1)                                                              | -                           |
| 성적 지향(1건)    | 헌혈 문진시 성적 지향에 의한 평등권 침해(1)                                                    | -                           |
| 나이(2건)       |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1)                                                             | 나이에 의한 고용 차별(1)             |
| 종교(1건)       | -                                                                             | 고등학교 종교활동 강요(1)             |
| 출신지역(1건)     | 개인택시 면허 발급 차별(1)                                                              | -                           |
| 기타(2건)       |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참여배제의 평등권 침해(1)                                                    | 정치적 의견에 의한<br>교육시설 이용 차별(1) |

2004년 접수된 주요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개선 및 인권교육 등을 통해 시정을 권고한 사건이 21건, 조사과정에서 진정한 또는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원만히 합의종결된 사건이 4건,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진정의 원인이 해소된 사건이 44건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 및 인권교육을 권고한 사건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적 신분이 9건으로 가장 많고, 장애 5건, 성별 3건, 나이 2건, 종교 및 성적 지향, 출신국가 등이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분 중 기간제 교사, 계약직, 일용잡급직 등 이른바 비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출범 이후부터 2004년 말까지 차별행위에 대해 총 59건의 시

정 권고를 하였는데 이 가운데 46건(78%)이 수용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권고를 받은 기관에서 수용을 검토 중이다.

2004년에는 위원회의 중재로 조정이 처음 이루어졌다. 피해자 허모씨가 2003년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면서 장애인 화장실과 장애인용 책상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자, 위원회는 2004년 4월부터 3차에 걸쳐 피진정인인 ○○광역시교육감과 조정을 시도, 앞으로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장애인용 책상 및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 부설 보진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2) 2004년도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조치 현황

차별사유별 중요 진정사건의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4-5] 2004년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사건 조치내역

□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

| 조치유형       | 사 건 명                   | 조 치 내 용                                          | 의결일자       | 이행 현황 |
|------------|-------------------------|--------------------------------------------------|------------|-------|
| 권고<br>(1건) |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참여배제의 평등권 침해 | 미결수용자에 대해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권고 | 2004.1.19. | 수용    |

□ 성별에 의한 차별

| 조치유형       | 사 건 명                      | 조 치 내 용                                                                                | 의결일자        | 이행현황  |
|------------|----------------------------|----------------------------------------------------------------------------------------|-------------|-------|
| 권고<br>(3건)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 서울 YMCA에게 여성회원들에 대하여 총회의결권 등 허용할 것 권고                                                  | 2004.5.10.  | 수용 거부 |
|            | 성별을 이유로 한 재화이용 공급 차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별표 3] 상이등급구분에 남녀차별 요소가 없도록 개정 권고                              | 2004.6.21.  | 수용    |
|            |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남녀 응시연령 차별 | 순경 공채시험시 남녀에 따라 응시연령을 달리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규정 개정 권고 | 2004.10.18. | 수용    |



#### □ 장애에 의한 차별

| 조치유형         | 사 건 명                  | 조 치 내 용                                                                                   | 의결일자        | 이행현황            |
|--------------|------------------------|-------------------------------------------------------------------------------------------|-------------|-----------------|
| 권고<br>(3건)   | 장애를 이유로 한<br>교육시설이용 차별 |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 외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할 것 권고 및 관행 시정권고                       | 2004.2.16.  | 일부 수용 및<br>검토 중 |
|              | 장애를 이유로 한<br>고용 차별     | 진정인의 평정과 승진에 누적적으로 가해진 장애인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 재발방지를 위해 근무성적평정지침 등에 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 금지조항을 마련할 것 권고 | 2004.11.8.  | 수용              |
|              | 장애를 이유로 한<br>고용 차별     |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시험시간 연장, 컴퓨터 사용 등 보완조치를 취할 것 권고              | 2004.11.22. | 검토 중            |
| 의견표명<br>(1건) | 장애를 이유로 한<br>기타 차별     | 선거법은 수화통역을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각장애 선거인들이 참정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 2004.10.25. | 검토 중            |

#### □ 나이에 의한 차별

| 조치유형       | 사 건 명             | 조 치 내 용                                                 | 의결일자       | 이행현황 |
|------------|-------------------|---------------------------------------------------------|------------|------|
| 권고<br>(1건) | 교원임용시험<br>응시연령 제한 | 교원임용시험시 응시연령을 40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나이 차별이므로 응시연령제한을 폐지할 것 권고 | 2004.6.28. | 수용   |

#### □ 출신국가·출신지역에 의한 차별

| 조치유형       | 사 건 명                     | 조 치 내 용                                                                                       | 의결일자        | 이행현황 |
|------------|---------------------------|-----------------------------------------------------------------------------------------------|-------------|------|
| 권고<br>(2건) | 평등권 침해의 고용<br>차별(외국인 조교수)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조교수 재임용심사를 하지 않고 해임한 진정인에 대해 재임용심사할 것 권고                                           | 2004.1.12.  | 수용   |
|            | 개인택시면허 발급<br>차별           |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관내 택시 무사고 경력만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및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규정 개정 권고 | 2004.10.11. | 검토 중 |

□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 조치유형       | 사 건 명                   | 조 치 내 용                                                                                   | 의결일자       | 이행현황                |
|------------|-------------------------|-------------------------------------------------------------------------------------------|------------|---------------------|
| 권고<br>(6건) | 사회적신분(기간제 교원)에 의한 고용 차별 | 기간제 교원에 대한 방학 중 임금, 퇴직금 불지급에 대해 차별행위 중지 및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것 권고                          | 2004.3.22. | 수용 거부               |
|            | 평등권 침해(계약직 경력인정 차별)     | 일반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정규직에만 인정하고 계약직 등 임시직에는 불인정하는 차별행위를 시정할 것 권고                                | 2004.5.3.  | 검토 중                |
|            | 사회적 신분(영양사)을 이유로 한 차별   |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 영양사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 권고                                                    | 2004.5.24. | 수용                  |
|            | 국가공인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차별     | 문서실무사 자격증 취득자에게도 승진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권고                                               | 2004.6.14. | 수용                  |
|            | 조교 재임용 차별               | 제정공포일 전후를 기준으로 한 임용차별을 개선하도록 교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것 권고                                           | 2004.9.6.  | 수용                  |
|            | 지방연구직공무원 호봉인정 차별        | 지방연구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대학 등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한 경력의 일정부분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에 산입하도록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개정 권고 | 2004.9.20. | 수용 거부<br>(장기과제로 검토) |

□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 조치유형       | 사 건 명                  | 조 치 내 용                                                                        | 의결일자      | 이행현황 |
|------------|------------------------|--------------------------------------------------------------------------------|-----------|------|
| 권고<br>(1건) | 헌혈문진시 성적 지향에 의한 평등권 침해 | 동성간 성접촉 사실만으로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 12조 제1항 가목의 별지5호 개정 권고 | 2004.8.3. | 검토 중 |



#### □ 기타 진정사건 주요 처리 현황

| 조치유형       | 사 건 명                      | 조 치 내 용                                                                          | 의결일자        | 이행현황 |
|------------|----------------------------|----------------------------------------------------------------------------------|-------------|------|
| 권고<br>(6건) | 개인택시면허발급 차별                | 개인택시면허규정에 평등권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 권고                                                    | 2004.4.9.   | 검토 중 |
|            | 법령제도(전력기술 관리법시행령)          | 고졸자에게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자격을 허용하지 않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권고                                 | 2004.5.17.  | 수용   |
|            | 법령제도(평생교육법시행령)             | 2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수업연한 단축대상에서 제외한 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 권고                                      | 2004.5.17.  | 수용   |
|            | 해외파견교사의 직급별 나이 차별          | 해외파견교육인사관리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3호 관련)의 개정 권고                                            | 2004.7.26.  | 수용   |
|            | 개인택시면허 발급 차별               | 개인택시면허규정에 평등권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 권고                                                    | 2004.9.20.  | 수용   |
|            | 법령제도(고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 처리규정) |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 중 동일회사 근무 및 동일회사에서의 성실의무이행 요건을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요소 없도록 개정할 것 권고 | 2004.11.22. | 검토 중 |

※ 수용 여부는 2005년 1월 20일 상황임.

## 2. 평등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평등권 침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주로 행정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도소에 수용 중인 문모씨는 2003년 8월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교도소내 종교교육 및 집회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정하였다.

법무부와 ○○교도소는 미결수용자에게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불허하는 이유를 △기결수형자에 반해 미결수용자는 교정교화의 대상이 아니며 △행형법상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는 분리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종교집회 참가를 위해 구금시설내에서 미결수용자 다수가 회동하게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와 공범관리의 어려움

이 있고 △현재 시설 및 인력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기결수형자에게는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락하면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행형법 제67조 제1항(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행할 수 있다) △법무부 예규 『수용자신양생활에 관한지침』 및 『수용자교회및복지활동지침』(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종교단체 및 종교인이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므로, 희망자 중 동일사건 관련 수용자를 분리하는 등 수사나 재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에게 미결수용자도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가할 것을 권고하였다.

###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는 성 평등이라는 기초 위에서 모든 사회적인 영역에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대상에는 특정한 성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평등한 대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준이나 규칙들이 특정한 성별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낳게 하는 간접차별도 해당된다.

#### (1) 서울YMCA 여성회원 총회의결권 불허 차별

2003년 1월 김모씨는 서울YMCA(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여성회원들에게 총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일종의 의결기구인 총회의 회원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YMCA현장’에는 ‘2년 이상 회원으로 서울YMCA 활동에 참여한 만20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인 사람’으로만 자격을 한정하고 있을 뿐, 성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전국 43개의 지역YMCA 중 서울YMCA를 제외한 나머지 42개 지역YMCA는 여성회원들도 총회 의결권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YMCA는 남성 본위로 성립된 단체로 그 정체성도 남성단체라는 서울YMCA측의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는 △서울YMCA가 설립된 100여 년 전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미약하여 남성 중심적인 조직운영이 이루어져 왔을 수도 있으나 현재 사회변화의 흐름을 감안할 때 이는 설득력이 없으며 △여성회원을 총회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서울YMCA현장’에도 총회 구성원의 성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과 전국 42개 지역YMCA에서는 여성회원에게도 총회 의결권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YMCA의 행위는 불합리한 성차별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2) 얼굴 흉터에 대한 등급지정 남녀 차별

진정인 박모씨는 군복무 중 얼굴이 약 10cm 찢어지고 치아 3개가 파손되는 공상으로 상이등급 ‘6급2항’ 판정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지원법시행령』상 박모씨와 같은 정도의 상이를 입은 여성의 경우에는 ‘5급’ 등급으로 판정돼 연금 등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차별이라며 2004년 5월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국가유공자지원법시행령(제14조 관련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는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녀의 등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경우 여성은 ‘5급96’ 등급에 해당되나, 남성은 ‘6급2항90’으로 분류되고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경우 여성은 ‘6급2항90’으로, 남성은 ‘7급601’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사회생활에서 흉터로 인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이 남성

보다 여성이 더 크다는 사회통념과 여성으로서의 군복무 등을 감안하여 2000년에 별도 신설한 것”이라며 “이후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 및 보훈병원 전문의 워크숍을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상이등급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러한 입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등급 판정은 △의학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고 △얼굴의 흉터는 남녀에게 모두 고통과 피해를 주며 △국가유공자지원법시행령과 유사한 법률인 『국가배상법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등에서는 남녀간 차별을 두지 않고, ‘외모에 추상(흉터)이(가) 남은 자(사람)’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 (3) 순경 채용시 남녀 응시연령 차별

진정인 김모씨는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자격을 남자는 30세 이하, 여자는 27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성별에 따른 평등권 침해라며 2003년 10월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은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남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여자는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각각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남자의 경우 대체로 고졸 이후 군복무를 하므로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1세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응시연령을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이 응시연령을 적용함으로써 군면제 남자의 경우 21세가 될 때까지 응시할 수 없고 △4년제 대졸자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남녀 모두 대학졸업 시점인 25세 이상 응시자의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성의 응시 기회가 적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남녀 응시연령을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이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있어 군복무 여부를 응시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경찰청이 남자에 대해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또는 전역예정자 포함)’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응시연령을 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고려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남자의 경우 군복무 여부와 상관없이 21세가 될 때까지 응시할 수 없고 △여자의 경우 남자(30세)보다 3세 낮은 27세에 응시기회가 끝나게 되므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등 성별에 따라 응시연령을 차등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있어 남녀에 따라 응시연령을 달리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다.

#### 4.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장애에 의한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고용·교육 등에서 배제하거나 구별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정년, 퇴직, 해고 등)과 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등), 교육시설 등의 이용(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으로 구분되며, 위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행위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들을 배제·구별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차별행위로 본다.

### (1) 장애인 특별전형시 장애유형에 의한 응시기회 차별

이모씨는 2003년 2월 ○○대학교 등이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자격을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으로 제한한 것은 위 유형외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해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2003년 ○○대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하려 했으나 해당 대학이 지원자격으로 제시한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서조차 접수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2003년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가운데 일부는 지원자격을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일 경우 일단 지원접수를 받은 후 장애 정도 등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대개의 대학은 시각·청각·지체부자유 등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현행법상 대학이 반드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에 따른 최종적인 학생 선발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평등성과 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교육적·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대해서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각 대학은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으로 제한한 것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신지체,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가진 자에게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것으로, 이는 장애의 종류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서 차별한 행위라고 판



단하였다.

이에 ○○대학교 총장 등에게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 외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각 대학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에서 특정 장애 유형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게 할 것을 권고하였다.

## (2) 장애를 이유로 한 승진 차별

김모씨는 “1977년에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20년 동안 6급 승진에서 누락되고 있다”며 2004년 2월 해당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 김모씨는 3급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2급 정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1977년 ○○대학교 도서관에 9급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열람과와 정리과에서 일본서·중국서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도서 분류·정리·수정 일을 하였으며, 1984년 7급 공무원으로 승진된 후 현재까지 7급 공무원으로 일본서·중국서 정리 업무를 하고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 2004년 3월 현재 ○○대 도서관 사서직원 총 34명 중 6급은 11명으로, 7급 임용 후 6급 승진 소요연수는 각 6년 8개월부터 13년에 이르며 평균 약 9년 반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7급 14명 중 진정인을 제외한 13명이 현 직급에 임용된 지는 4년에서 10년에 이르는데, 진정인은 7급에 임용된 지 20년이 되도록 승진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였다.

위원회는 김모씨가 장기간의 근무경력과 일본서·중국서 정리업무에 필요한 언어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함께 근무하는 직원의 다수가 김모씨의 업무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근무평정을 한 평정자 역시 김모씨의 업무능력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외적으로 하위의 평정점수를 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1999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도서관장에게 김모씨가 근무경력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평정점수를 받은 이유에 대해 문의하자 도서관장은 김모씨가 ‘정신지체’ 장애인이어서 6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2000년에는 김모씨가 승진후보자 1순위였는데도 참석한 위원들이 도서관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승진에서 배제된 바, 이는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학교 총장에게 김모씨에 대한 평정과 승진 심사 과정에서 연속 가해진 장애인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대학교 근무성적평정지침 등에 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 금지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3) 선거방송에서의 수화 통역 미실시로 인한 차별

“지난 제17대 총선 후보자합동연설회 등에서 자막 또는 수화통역 방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각장애 선거인을 차별했다”며 한국농아인협회 대표 주모씨가 2004년 4월 각 정당 대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2조 제2항 및 제82조의2 제10항에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자막 또는 수화 통역 영상을 임의로 방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조사 결과 △과거 선거법에서는 합동연설회의 경우 현장에서 수화 통역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지만 △2004년 3월 12일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합동연설회 대신 TV를 통한 후보자 토론회 등이 지역별로 실시되었고, △제17대 총선의 선거방송에서는 해당 방송사의 중계방송 기술상의 문제 또는 재정이 지원되지 않는 법정 비초청 후보자 토론회라는 이유 등으로 인해, 총 272회의 방송 토론회 중 75%인 205회에 대해서는 자막 또는 수화 통역 영상을 방영하고 나머지 67회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고 할 때,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국가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해야 하고 △국가적인 행사의 방송 등에 대해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영상을 방영하는 것이 마땅하며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각장애 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 및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방송에 자막 또는 수화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 5.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나이 차별은 연령의 많고 적음을 이유로 기회를 박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고용 영역, 재화·용역·교통수단·주거시설 등의 이용 영역, 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등의 이용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구제(합의종결)한 사건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차별

이모씨는 2003년 5월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연령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2)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최초 시험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40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공개전형 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응시연령 제한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체력과 업무습득 능력 등을 고려해 정해졌고 △이는 교직사회의 원활한 순환구조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며 △젊은 나이에 교직에 뜻을 두고 이에 헌신할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의 능력은 다년간의 학생지도와 연수 경험을 통해 함양되며, 특히 학생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상당기간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했으며 △연령제한이 없을 경우 합격할 때까지 계속 교원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현상이 발생해 국가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일반직 공무원의 응시 연령제한 및 교원의 정년이 62세인 점 등을 감안하여 40세로 연령을 제한한 것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40세 이하의 자만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체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원으로서의 능력은 연령에 의해서가 아닌 교원 자격증 취득과정 및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임용 전에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교직사회의 원활한 순환구조 유지를 위해서라는 것이 일정한 연령 이상의 사람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만큼의 합리성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원은 교육이라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직무·신분·조직의 특성이 일반직 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 △교원임용 시험은 이미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양성 및 임용과정도 특수하다는 점 △40세 이상의 교원자격증 취득자도 정년까지 교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고, 그 기간에 교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응시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는 단서조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시연령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교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일부 지역의 초등학교원 임용시험에만 적용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40세로 연령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경우 교원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는 나이에 의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이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다.

## (2) 해외파견교사의 직급별 나이 차별

“교육공무원을 해외로 파견할 경우 교장은 58세, 교감은 56세, 평교사는 46세 이하인 자로 차등적 제한을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2003년 3월 김모씨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의 자격조건을 직급별로 차등 규정하고 있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별표1은 합리적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해외의 한국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젊은 교사의 파견을 원하고 있는 점 △여러 측면에서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교사를 파견해야 할 필요성 △학교내 교장과 교사 사이의 위계가 대부분 연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 △경력과 나이가 많은 교사를 파견할 경우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인해 파견교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공무원을 해외로 파견할 때 직급별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외 한국학교의 학부모와 학생의 경우 교사의 희망연령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약 25%가 ‘나이는 상관없다’고 응답했으며,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41~50세의 경력이 많은 교사를 원하는 대답이 42%로 가장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젊은 교사를 선호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교사를 선발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하

고자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도는 차별적 나이 제한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교사의 경력이 높아질수록 봉급이 많아지지만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전체적인 임금을 고려할 때 나이 많은 교사를 파견할 경우 전체 파견교사의 수가 감소하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6.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일정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집단(학생, 공무원, 변호사, 기간제 교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신분 차별은 이러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이나 재화·용역 등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기간제 교원에 대한 방학 중 보수와 퇴직금 지급 차별

서모씨 등 3명은 “기간제 교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방학기간 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차별”이라며 해당 학교 교장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경기도 양주군 ○○중학교 기간제 보건의교원으로 근무하던 서모씨의 경우 방학기간에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학교측은 방학 중에는 학생이 거의 등교하지 않아 기간제 보건의교원이 학교에 근무할 필요성이 없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기간제 보건의교원의 방학 중 기간은 교재연구 및 학생지도 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간이 되어야 함은 정규직 보건의교원과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중학교장에게 미지급된 방학 중 보수를 서모씨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고양시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인 조모씨와 군포시 ○○고등학교 기간제



교원인 박모씨가 계약기간을 2002년 3월 2일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정하여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학교측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한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형식상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에서 제외된 기간이 새로 학기가 시작되는 각 첫날 하루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판단해 이같이 권고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2003년 3월 기간제 교원을 정규 교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해당 학교장, 교육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차별행위 중지 및 기간제 교원에 대한 운영지침 등 행정규칙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9월 1일자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운영지침 개선안을 마련해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규칙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

## (2) 호봉 산정에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차별

김모씨는 2003년 1월 현 직장인 서울지하철공사에 입사하면서 정규직 근무 경력만 인정하는 규정에 따라 ○○건설(주)의 계약직 경력(5년 6개월)을 인정받지 못해 호봉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공사는 입사 전 경력 인정 기준에서 비정규직 경력이 제외된 것은 △1988년 8월 경력합산심의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경력 인정 기준 설정’에 근거한 것이며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그 범위가 넓어 객관적인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입사 전 기업(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상장업체) 경력이 정규직인 경우에는 현 업무와 동종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70%를 인정하면서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인정했다.

또한 서울지하철공사가 △임시직의 광범위성 등으로 경력 인정상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현재 정규직에 한하여 입사 전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추세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을 떠나 동일한 경력자를 비정규직이라고 차별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에게 기업 경력 인정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행위를 시정 또는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3) 일용잡급직 영양사 급여 차별

2003년 5월 최모씨 등은 “경기도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잡급직 영양사들이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식품위생직 공무원이나 일용잡급으로 임용된 영양사들은 『식품위생법』에 정한 영양사 자격을 소지한 자들로 △각급학교에 영양사를 두도록 한 근거 규정(『학교급식법제』 7조, 『식품위생법』 제35조)에서도 양자가 다르지 않고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 또한 각 학교의 규모에 따라 분장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임무는 규정(『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 제4항)과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용잡급으로 임용된 영양사의 급여는 연간 약 1,000만원으로 식품위생직 공무원 9급으로 임용된 영양사의 연간 급여액(초임 호봉) 1,600여 만원의 60%에 지나지 않고, △이들의 근무여건이 서로 다르지 않음에도 일용잡급 영양사들에게는 방학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기간에서도 제외하는 등 서로 다른 대우를 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경기도교육감은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는 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자들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용된 일용잡급직 영양사와 학교급식 전담직원으로서의 업무는 같으나 △



원활한 학교급식 추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와 각종 사안의 대응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각급학교에 영양사를 두도록 한 학교급식법 등 근거규정이 다르지 않고 △식품위생직 영양사나 일용잡급직 영양사의 업무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일용잡급으로 임용된 영양사들이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방학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행위 등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인정해 경기도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이와 같은 현상이 비단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의 공통된 문제라 판단하고, 각 시·도 교육청 관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잡급 영양사에 대한 차별행위를 시정하도록 감독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 (4) 연구직 공무원 호봉 산정에 대학강사 경력 불인정 차별

조모씨(38세)는 2003년 1월 ○○광역시 문화예술과 연구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 초임 호봉에 가까운 호봉 산정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2004년 6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경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에 정하고 있는 초임 호봉표에 의거, 초임호봉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경력이 있는 연구직 공무원의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 3 ‘연구직 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는 대학의 시간강사 경력을 제외한 국·공·사립학교의 동일 분야에 종사한 정규·임시·기간제 교원 근무경력을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진정인은 1999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대학교에서 주당 4~6시간, 1998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약 4년간 ○○대학교에서

주당 3시간씩 각각 강의한 경력이 있으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대학의 시간강사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해 대학의 주당 수업시간수에 따라 시간강사 경력을 5할부터 10할까지 합산 대상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학 시간강사 경력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유사 경력에 해당하지 않고 △시간강사 경력을 유사 경력으로 인정할지는 비정규직 경력 인정문제와 연관지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연구직 공무원이나 대학의 시간강사 모두 지속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해야만 하고 △동일 분야 경력이 있을 경우 국·공·사립학교에 근무한 교원 경력 및 기간제 교사나 임시 교사 경력을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비전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간강사 경력을 경력 합산에서 배제하고 호봉을 산정한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대학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의 일정부분을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여 이를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하도록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연구직 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개정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 7.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은 태어난 나라 또는 성장한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교수 등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내국인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입국하여 연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법체류하는 문제도 있으나 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해 내국인에 비해 저임금, 부당한 근무조건, 부당한 교육·직업훈련시설 이용제한 등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진정사건의 처리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외국인 조교수 재임용 차별

외국인 이모씨는 ○○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해당 학과의 다른 전임 교수들과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고 △내국인 교수와 동등한 과정을 거쳐 전임조교수로 승진했음에도 ○○대학교측이 본인에 대한 조교수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자 2003년 1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이모씨는 1999년 ○○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두 차례에 걸쳐 전임강사로 재임용됐고, 2002년 4월 1일 내국인 교수와 동등한 심사과정을 거쳐 업적평가점수 300점 기준에 795점을 받아 조교수로 승진했다. 그러나 ○○대학교는 자체 교원인사규정 제11조 제3항(‘외국인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계약제(비정규직 의미)로 할 수 있다. 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을 근거로 이모씨에 대한 조교수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임을 통보한 뒤, 이모씨가 맡았던 조교수 자리(1명)를 초빙교수 1명과 겸임교수 1명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대학교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계약제로 할 수 있고 △조교수 자리를 겸임교수 1명과 초빙교수 1명으로 바꾼 것은 중국지역학과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진행됐으며 △교수인사위원회에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인준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학교측이 교원인사규정에 ‘교원의 지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전임교원과는 별도로 대우교원, 객원교원, 겸임교원, 연구교원, 초빙(강의전담)교원, 석좌교수로 나누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른다면 ○○대학교는 이모씨를 전임교원 신분인 전임강사로 임명한 것이고, 전임교원 신분이라면 사립학교법 및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는 중국지역학과의 장기발전계획을 이유로 전임교원인 이모씨에 대해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임했는데,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밖에 위원회는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1조 제3항이 “외국인 및 내국인 전임교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조항 없이, 일방적으로 외국인 전임교원에 한해 계약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을 차별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교는 2002년 12월 30일 이 규정을 삭제한 바 있는데, 위원회는 “자진 삭제한 조항을 적용해 이모씨를 해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학교 총장에게 이모씨에 대한 조교수 재임용 심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2) 개인택시면허 발급시 타지역 무사고 경력 불인정 차별

배모씨는 △대구에서 택시운전을 14년간 하다가 2002년 1월 경주로 이사해 2년이 지난 후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2003년 9월 관련 규정이 경주시 관내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자신이 개인택시면허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차별이라며 2004년 4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는 면허 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2년에 타지역 운전경력만 있는 사람이 경주시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해, 경주시내 운전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택시면허 발급 대기자들의 반발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주시 택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학술용역 결과 보고서와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타지역 경력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는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진정인의 택시운전 경력은 관외 14년, 경주 관내 2년 3개월이며 △경주시는 2003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대상자 우선순위에서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서 ‘관내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개정하여 진정인은 개인택시면허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또 최근 3년간 『경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중 실제로 발급된 대상을 보면 2001년 15명, 2002년 12명, 2003년 17명이며 △경주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은 자 중 관외 경력을 인정받아 면허를 받은 사람은 2000년에 1명, 2001년에 1명이 있었다.

위원회는 △경주시의 주장대로 관련 법령에 관할관청이 면허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정해진 순위 내에서의 기준설정 및 변경에 대한 것으로 △100% 인정하던 관외 무사고 경력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은 법령에서 위임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며 △실제 관외 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사람은 2000년 1명, 2001년 1명밖에 없고 △경주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경주시 관내 운전경력이 3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이미 있어 △이것만으로도 관외 경력으로 개인택시면허 신청자를 제한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술용역 결과는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서 관외 경력을 인정하는 지역이 인정하지 않는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고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관내 경력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학술용역 결과를 이유로 타 지역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경주시장에게 개인택시면허 발급 신청시 타지역 무사고 운전 경력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8.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성적 지향이란 일반적으로 성적 정체성과 달리 본인의 의식이나 자각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향이라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어떤 성의 사람에게 성적으로 끌리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성적 지향성은 특정한 성의 상대방에게 성적·감정적 그리고 애정적으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성적 지향성의 개념에는 감정에 의한 성적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동성애자란 자신과 같은 성의 사람에게 정서적·성적·신체적으로 끌리는 성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처리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2003년 12월 “헌혈 전 실시하는 문진표의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는 문항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가목은 “의사 또는 간호사는 채혈 전에 문진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헌혈기록카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혈기록카드 중 문진사항 15번에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는 질문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 부작용을 방지하고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자에 대해 문진을 실시하는데, 헌혈자의 건강상태 및 수혈 전파성 감염질환(간염, 매독, 에이즈, 말라리아, 광우병 등)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문진의 주요 내용으로 △문진을 통해 현행 혈액검사법에 의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 에이즈 항체 미형성기에 있는 사람 등 각종 수혈전파성 감염질환자 및 위험성이 있는 헌혈 지원자의 헌혈을 사전에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문진사항은 헌혈자가 에이즈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이성과의 성접촉과는 달리 동성에 대해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혈액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참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에이즈는 성접촉의 대상이 동성인지 이성인지에 따라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 감염자와 감염 확률이 높은 방식의 성접촉을 했을 때 감염되는 것으로 △단순히 동성간의 성접촉만으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문진사항은 △에이즈 감염 확률이 없는 동성애자를 헌혈에서 배제하고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인 것처럼 간주되어 온 잘못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일반인의 에이즈 예방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한, 여성간의 성접촉에 의한 에이즈 감염 확률은 극히 낮아 문진표에 남성에 대



해서만 동성과의 성접촉 여부를 묻고 있는 외국(미국·캐나다·영국·일본)의 경우를 볼 때, 이 문진사항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동성간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문진사항을 개정하되, 최소한 동성간 성접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남성에게만 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 9. 기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기타 진정사건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인간의 침해사건, 법령제도 개선, 입법재판, 재산권, 회사, 기타 단체, 기타 진정 등 7개 영역으로 분류된다.

기타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유형은 [표 2-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339건의 진정접수 중 1,258건을 종결 처리하였는데, 종결건수를 기준으로 권고가 15건으로 1.1%이며, 기각은 59건으로 4.5%이다. 한편 각하는 1,181건으로 88.2%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6] 기타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 분   | 진정접수<br>(전년사건 이월) | 처리유형     |      |        |          |     | 조사진행<br>(전년사건 이월) |
|-------|-------------------|----------|------|--------|----------|-----|-------------------|
|       |                   | 소 계      | 권 고  | 기 각    | 각 하      | 이 송 |                   |
| 소 계   | 1,339             | 1,258    | 15   | 59     | 1,181    | 3   | 81                |
| 비율(%) | 100.0             | 94.0     | 1.1  | 4.5    | 88.2     | 0.2 | 6.0               |
| 2002년 | 571               | 389      | 2    | 6      | 381      | —   | 182               |
| 2003년 | 416(182)          | 293(71)  | 2(1) | 10(10) | 281(60)  | —   | 123(111)          |
| 2004년 | 352(234)          | 282(223) | 1(9) | 10(23) | 268(191) | 3   | 70(11)            |

※ ( )는 전년까지 접수된 사건 중 이월되어 종결 및 처리 중인 사건수

### | 제 3 절 | 평 가

우선, 2004년에는 고용 차별에 대한 진정이 어느 해보다 두드러지게 많았다. ‘순경 채용시 남녀 응시연령 차별’, ‘장애인에 대한 승진 차별’,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차별’, ‘외국인 조교수 재임용 차별’ 등 고용 영역에서 성별, 출신국가, 나이, 장애 등 다양한 사유의 진정이 제기되었다.

위원회가 권고 등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차별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한 것은, 공정한 고용기회의 제공을 통해 기회의 평등을 구현해 내는 시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원회법에 명시된 18개의 차별 사유 중 사회적 신분에 대한 진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그 중 ‘기간제 교원’,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불인정’, ‘일용직 영양사 임금차별’ 등 비정규직 관련 진정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 해석하여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이라는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셋째, 조사과정 중 당사자간 합의종결을 유도하여 진정을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한 사건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학칙상 학생의 정치활동 불가 등 평등권 침해’, ○○고등학교의 ‘종교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어린이집 시설장 채용 응시연령 및 정년제한 차별’, ‘○○대학교 장애학생 성추행’ 사건 등을 조사 중 합의종결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헌혈 전 실시하는 문진표가 동성간의 성접촉이 에이즈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문진 사항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위원회법에 명시된 18개 차별사유 중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사건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고 동성애자도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진정사건 처리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차별시정 업무에 대한 기획 및 차별 행위 사건에 대한 적극적 조사·구제 활동이 다소 미흡하였다.

2005년 위원회는 차별시정 업무 총괄기관으로서 차별행위의 유형 및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행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구제업무를 추진할 것이다.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 제1절 | 개 요

유엔이 국가의 인권교육 의무를 거듭 강조하고 있듯이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침해 및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과 공무원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는 등 인권교육의 인적·물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인권교육의 사회적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2004년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인권교육을 포함시켜 2007년 이후 5개년간의 인권교육 계획 권고안을 준비하는 한편,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의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 인권교육의 장기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힘썼다.

또한 학교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재 개발,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인권교육 실천사례 및 문예작품 공모, 교사연수 등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인권 전문강사 인력 양성훈련과 기업 차별예방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교육자료 개발연구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 영역의 인권교육 기반 조성에도 기여하였다.



## | 제 2 절 | 주요 추진실적

### 1. 인권교육의 장기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

#### (1) NAP 인권교육 분야 권고안 마련을 위한 활동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의 의무를 촉구하고 권장하는 유엔의 ‘인권교육10년’(UN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에 부응하는 인권교육 NAP(National Plan of Action)를 추진하고자, 2003년에 진행한 인권교육 실태와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에 이어 2004년에는 인권교육 분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총 8회에 걸친 NAP 인권교육 분과회의를 통해 인권교육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학교 영역에서의 인권교육 내용 강화 등 4개 과제, 공공기관 영역에서의 예비자 양성과정의 인권교육 강화 등 4개 과제,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일반 대중을 위한 인권교육·홍보 강화 등 4개 과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비정부기구·학계 전문가 등의 협력체계 마련 등이 정리되었다.

#### (2)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의 콘텐츠 개발

위원회는 학교, 직장이나 가정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권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http://edu.humanrights.go.kr>)을 2003년에 구축하고 콘텐츠를 개발해 오고 있다.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은 인권배움터(교수-학습기능), 인권지식터(지식정보 제공기능), 인권체험터(감수성 향상기능)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에 개발한 인권배움터의 교수-학습 콘텐츠는 행정공무원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의 이해’, ‘행정과 인권’, ‘어린이·청소년 권리의 이해’, ‘사회적 약자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정은 사례 제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통한 문제제기, 생각해보기, 알아보기, 적용하기 등 체험학습을 위한 학습구조로 구성되어 학습효과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인권지식터의 콘텐츠는 위원회의 실태조사 연구자료·교육자료·정책자료·결정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인권체험터는 인권 사진·만화 등을 전시하는 사이버 갤러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은 인력과 제도의 보완, 시험운영을 거쳐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 2.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 (1) 교육자료 개발과 활용

위원회는 학교교육에 인권교육을 통합하기 위해 2003년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연구'에 이어 2004년에는 교재용 책자로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와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를 발간하였다. 이 교재들은 학습자의 발달수준에 따른 계열성 및 다른 교과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인권교육 과정을 교사가 학교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04년 전국의 각급 학교에 이 교재가 배부되어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 이해를 넓히고 인권수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12월에는 각 지역 교육청과 교원연수원의 장학사·연구사를 대상으로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각급 학교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초등학교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발달수준과 학습운영의 특성에 따라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의 프로그램 매뉴얼, 교사용 지침서, 학생용 워크북으로 개발되었다. 개발



된 프로그램은 2005년에 책자와 CD로 제작, 각 지역 교육청 및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올려 교사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인권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02년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약자의 인권문제를 소재로 한 인권동화를 발간해 왔으며, 이를 인권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매뉴얼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2004년에는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차별과 편견을 소재로 한 창작동화집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와 교육 안내서 <피부색은 달라도 모두가 평등합니다>를 발간하였다.

이 동화집은 작품의 일부를 만화로 구성하여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동화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초등학교에 무료로 배부하여 인권교육 보조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의 구성내용은 [표 2-5-1]과 같다.

[표 2-5-1]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구성

| 제 목         | 내 용                                                   | 작가  |
|-------------|-------------------------------------------------------|-----|
| 반두비         | 방글라데시에서 온 노동자 자녀와 한국 어린이와의 우정                         | 김중미 |
| 아주 특별한 하루   | 몽골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본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                  | 박관희 |
| 혼자 먹는 밥     | ‘불밥’이라는 딱지 속에 하루하루를 불안과 외로움으로 보내는 외국인 노동자 가족 이야기      | 박상률 |
| 마, 마미, 엄마   | 베트남인 엄마를 둔 수연이네를 중심으로 한 이웃간의 갈등과 화해                   | 안미란 |
|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 1960년대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고모의 이야기와 이웃에 사는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꿈을 대비 | 이상락 |

## (2)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및 교사연수

위원회는 학교현장에 적합한 어린이 인권의식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교육

인적자원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 5개 초등학교를 인권교육 연구학교로 지정, 2년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권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대평(부산), 송도(인천), 오리(경기 성남), 쌍용(충남 천안), 의령(경남 의령) 초등학교는 위원회로부터 연간 800만원의 예산과 함께 인권교육 관련 교재,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 등의 지원을 받는다. 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 교과 및 재량·특별활동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 중심의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시에 학교현장을 친인권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연구학교 지정기간이 완료되는 2005년 말에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우수 사례는 다른 초등학교에도 전파할 계획이다. 이는 학교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각 학교 현장 속에 인권을 정착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 인권교육의 확대에 대비하여 2회에 걸쳐 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다. 인권교육의 개념과 원리, 참여형 인권교육 기법 등의 교육을 통해 교사의 인권지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교육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위탁 운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수 후 중등분야에서 자율적인 인권교육 모임이 구성되기도 하였다.



천안 쌍용초등학교의 인권교육 공개수업 (2004.11.2)



천안 쌍용초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관련 미술작품 (2004.11.2.)



[표 2-5-2] 초·중등학교 교사대상 인권교육과정 운영 현황

| 구 분 | 대 상   | 인 원 | 교육기간                 | 주요 프로그램                                 |
|-----|-------|-----|----------------------|-----------------------------------------|
| 1차  | 초등 교사 | 34명 | 2004.10.8. ~ 10.10.  | 인권교육의 역사와 필요성<br>외국의 인권교육 현황<br>인권 수업하기 |
| 2차  | 중등 교사 | 30명 | 2004.10.15. ~ 10.17. |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br>학교 인권교육 방안<br>직무연계 현장학습 |

한편 위원회는 교원 연수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2004년 교원연수에 ‘인권교육 지도능력 제고’ 항목이 편성되도록 하였다. 또한 대학 인권교육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학 당국에 인권강좌 개설을 요청하는 등 대학에서 인권강좌가 확대되도록 힘쓰고 있다.

### (3) 인권교육 실천사례 및 인권 문예작품 공모

위원회는 2003년부터 인권교육 실천사례 및 인권 문예작품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사업은 인권교육 실천 우수교사를 시상하여 초등학교의 인권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독서지도나 재량활동 시간에 위원회 발간자료나 자체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권교육 실천사례를 공모하여 시상하는 것이다.

인권 문예작품 공모사업은 어린이 및 일반 시민의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초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 독후감, 표어, 그림, 플래시 부문의 작품을 공모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공모전 후속조치로 인권교육 실천사례 수상작을 모아 <인권교육 실천사례 집>을 발간·배부하였으며, 인권 문예작품 수상작은 사이버 인권교육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2004년 총 434편의 응모작 중 최우수상 수상작은 [표2-5-3]과 같다.

[표 2-5-3] 최우수상 수상자 명단

| 인권교육 실천사례                                                        | 인권 문예작품                                                                                                                                                                                                 |
|------------------------------------------------------------------|---------------------------------------------------------------------------------------------------------------------------------------------------------------------------------------------------------|
| <p>김술(천마초등학교 교사)</p> <p>&lt;키 작은 아저씨, 키 큰 아저씨! 모두모두 사랑해요&gt;</p> | <p>플래시 부문 일반부 신정영</p> <p>플래시 부문 학생부 정진웅(경기 안산경영정보고등학교)</p> <p>독후감 부문 김사라(대구 남산초등학교)</p> <p>편지 부문 이서윤(경남 의령초등학교)</p> <p>동시 부문 황정민(경기 포리초등학교)</p> <p>표어 부문 정혜수(서울 삼성초등학교)</p> <p>그림 부문 박준제(부산 대평초등학교)</p> |

### 3.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 영역 인권교육 기반 조성

#### (1) 공공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법집행 공무원 등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권교육 강사단을 구성, 운영해 왔다.

2004년에도 경찰·검찰 등 법집행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일선 치안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과 신입검사, 소년보호직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직렬별 인권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강사단의 전문교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1월에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표 2-5-4] 강사단 강의활동 실적

| 구분    | 경찰 분야 | 검찰 분야 | 출입국 분야 | 소년보호 | 기타 분야<br>(검찰·교정 공통) | 계     |
|-------|-------|-------|--------|------|---------------------|-------|
| 횟수    | 26    | 4     | 4      | 6    | 4                   | 44    |
| 인원(명) | 3,080 | 197   | 155    | 370  | 155                 | 3,957 |



위원회는 각 국가기관의 인권교육 강사인력을 발굴하여 인권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각 기관이 자체적인 교육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정·검찰·경찰 분야 소속의 인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이 교육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맡아 진행했다.

위원회는 약 20회에 걸쳐 위원회를 방문한 1,200여 명에 대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자양고등학교·난곡중학교·한국교원대학교 학생, 노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위원회 등 다양한 곳에서 위원회를 방문하였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은 자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총8회에



노원청소년수련관 학생들의 위원회 방문 (2004.7.27)

걸쳐 소속 경찰관 800명을 위원회 방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이들의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는 동시에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로 삼았다.

[표 2-5-5] 교정·검찰 분야 인권교육 운영 현황

| 분야 | 대상          | 인원  | 교육기간                 | 주요 프로그램                                                              |
|----|-------------|-----|----------------------|----------------------------------------------------------------------|
| 교정 | 교정직·보호직 공무원 | 35명 | 2004.9.15. - 9.17.   | 인권교육 관련 지식의 함양<br>인권감수성 및 인권옹호태도 강화<br>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br>효과적인 인권교육 기법 |
| 검찰 | 검찰직 공무원     | 25명 | 2004.9.20. - 9.22.   |                                                                      |
| 경찰 | 경찰직 공무원     | 37명 | 2004.10.25. - 10.27. |                                                                      |

한편, 법집행 분야 인권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 경찰연수기관, 사법연수원 등과 기관협의를 통해 인권강좌를 개설하도록 하였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전국의 조건부 신고시설 담당 공무원 800여 명에게 5회에 걸쳐 인권특강을 실시하였다.

## (2) 기업 차별 예방교육 시행을 위한 연구

위원회가 2003년 시행한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장애 등 16가지 조사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차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위원회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사건은 전체 진정사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관행이 생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잡아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차별 진정사건의 74.3%(2003년 12월 31일 기준)가 고용상의 차별에 관한 것으로 재화 등 공급·이용상의 차별이나 교육시설 등 이용상의 차별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내 주요 기업의 차별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시행에 앞서, ‘기업대상 차별예방교육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방안 수립의 객관적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고용 차별 실태 및 교육 요구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은 무엇보다 차별적 고용관행을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감수성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관련법이나 규정 또는 차별예방 지침 등을 소개하여 차별에 대한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종이나 업무환경의 차이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차별예방이 기업에 어떤 이익을 주는지 검증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할 때 차별예방 교육이 현실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차별 판단지침 마련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조건정비와 병행하여 차별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할 예정이다.



## 4. 인권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1) 인권 영화 제작 및 보급

#### 가. 두 번째 인권 영화 <다섯 개의 시선> 제작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사전예방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인권 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위원회는 2002년 <여섯 개의 시선>에 이어 2004년에 두 번째 인권 영화 <다섯 개의 시선>을 제작했다. 류승완, 박경희, 정지우, 장진, 김동원 등 5명의 감독이 참여하였고, 차별을 주제로 한 옴니버스 방식으로 35mm 극장 상영용으로 제작되었다(러닝타임 총 111분). 이는 2002년 인권 영화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국민의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우리 사회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차별문제를 드러내고 나아가 사전예방 효과를 얻고자 한 것이다.

두 번째 인권 영화는 탈북 청소년, 장애인, 비정규직, 중국동포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일상화된 차별문제를 다뤘다. 장애인 소녀가 직접 출연하여 그 일상을 담담하게 보여 주거나, 이미 죽고 없는 주인공을 대신한 카메라가 이야기를 쫓아가거나, 가해자의 의식을 들추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됐다.

[표 2-5-6] 인권 영화 2 제작 현황

| 감독  | 제 목            | 내 용                                                           | 러닝타임 |
|-----|----------------|---------------------------------------------------------------|------|
| 박경희 | 언니가...이해하셔야 돼요 |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당당히 맞서는 다운증후군 소녀 은혜 이야기                           | 22분  |
| 류승완 | 남자니까 아시잖아요     | ‘남자’라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주인공을 통해 본 차별 실태 만상                       | 20분  |
| 정지우 | 배낭을 멘 소년       | 두 탈북 청소년이 남한 정착 후 맞닥뜨리게 되는 소외와 단절에 관한 이야기                     | 26분  |
| 장 진 | 고마운 사람         | ‘주중’이라는 이름과 달리 주말에도 밤낮을 바뀌서 일하는 고문 수사관을 통해 비정규직 이야기를 하는 블랙코미디 | 24분  |
| 김동원 | 종로, 겨울         | 2003년 겨울 서울의 어느 길거리에서 일어 죽은 중국동포, 영화의 카메라는 그 1년 전 궤적을 쫓는다     | 19분  |

## 나. 인권 영화 <여섯 개의 시선> 보급

2002년 제작한 <여섯 개의 시선>은 2003년 11월 전국 55개 극장에서 개봉되어 약 3만 3,000여 명이 유료 관람하였다. 일반 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이라는 개발 취지에 따라 <여섯 개의 시선>은 DVD 및 비디오 출시, 공중파 TV 및 케이블 TV 방영, 인터넷 상영, 모바일 서비스, 국내외 영화제 초청 등 다양하게 보급되었다. 특히 <여섯 개의 시선>은 국내외의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는데 2005년 1월부터는 일본 도쿄 등 76개 도시의 개봉관에서 상영될 예정이다[표 2-5-7 참조].

한편 <여섯 개의 시선>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각급 교육기관의 교재와 공무원 교육용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전국 중·고·대학교에서 수업용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2003년 12월 법무부 약 500명, 대검찰청 약 500명,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지방검찰청 약 1,200명이 단체 관람하였고, 2004년 5월에는 경찰종합학교 생도들이 관람하였다.

[표 2-5-7] <여섯 개의 시선> 국제영화제 초청 현황(2004. 12. 현재)

| 영화제 이름                 | 시 기      | 장 소        | 비 고               |
|------------------------|----------|------------|-------------------|
| 제4회 전주 국제영화제           | 2003.4.  | 한국 전주      | 개막작               |
| 제1회 블라디보스톡 국제영화제       | 2003.9.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                   |
| 제13회 후쿠오카 국제영화제        | 2003.9.  | 일본 후쿠오카    |                   |
| 제22회 밴쿠버 영화제           | 2003.9.  | 캐나다 밴쿠버    |                   |
| 제47회 런던 국제영화제          | 2003.10. | 영국 런던      |                   |
| 제8회 부산 국제영화제           | 2003.10. | 한국 부산      |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특별언급' |
| '필마지아' 아시아 영화제         | 2004.1.  |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                   |
| 제27회 예테보리 영화제          | 2004.1.  | 스웨덴 예테보리   |                   |
| 파리 아시아 영화제             | 2004.3.  | 프랑스 파리     |                   |
| 일본문화성 주최 한국 독립영화제 2004 | 2004.3.  | 일본 도쿄      |                   |



| 영화제 이름             | 시 기       | 장 소       | 비 고      |
|--------------------|-----------|-----------|----------|
| 라스팔마스 영화제          | 2004. 3.  | 스페인 라스팔마스 |          |
| GVAC 아트센터          | 2004. 4.  | 스페인       |          |
| 발렌시아필름인스티튜트        | 2004. 4.  | 스페인       |          |
| 서울 여성영화제           | 2004. 4.  | 한국 서울     |          |
| 제17회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 2004. 4.  | 싱가포르      |          |
| 제51회 시드니 영화제       | 2004. 6.  | 호주 시드니    |          |
| 홍콩 - 필름마트          | 2004. 6.  | 홍콩        |          |
| 시네마닐라 국제영화제        | 2004. 6.  | 필리핀 마닐라   |          |
| 제53회 멜버른 국제영화제     | 2004. 7.  | 호주 멜버른    |          |
| 홍콩 아시아 영화제         | 2004. 7.  | 홍콩        |          |
| 제8회 샌프란시스코 아시안 영화제 | 2004. 8.  | 미국 샌프란시스코 |          |
| 2004 뉴욕 한국영화제      | 2004. 8.  | 미국 뉴욕     |          |
| 새로운 재능, 젊은 영화제     | 2004. 8.  | 타이완 타이페이  |          |
| 제1회 이스라엘 국제여성영화제   | 2004. 9.  | 이스라엘      |          |
| 일한영화제              | 2004. 9.  | 일본 오사카    |          |
| 캐나다 한국영화제          | 2004. 10. | 캐나다       |          |
| 홍콩 아트센터 좋은영화제      | 2004. 11. | 홍콩        |          |
| 제3회 UK 한국영화제       | 2004. 11. | 영국        | 5개 도시 순회 |
| 가나자와 커뮤니티 영화제 2004 | 2004. 11. | 일본 가나자와   |          |

※ 제13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 상(천주교 주교회의) 영화부문 수상(2003. 12.)

※ 제4회 장애인 영화제, 제6회 고딩 영화제, 3·8 세계여성의 날 96주년 기념 여성노동영화제 외 다수 국내 영화제 초청

## (2)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제작

인권 애니메이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의식을 지적하고 차별을 차이와 구별하는 인권감수성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되었다. 애니메이션은 수용자 층의 연령구분과 표현방법의 한계가 없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는 위원회가 기획·제작한 움니버스 장편으로, 인권(차별)을 주제로 애니메이션 감독 여섯 명이 참여하였다.

장애인의 현실을 다룬 ‘낮잠’(유진희 감독),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룬 ‘자전거 여행’(이성강 감독), 사회에 만연한 고정된 남녀 성역할을 지적한 ‘그 여자네 집’(5인 프로젝트팀), 사회적 소수자 차별 이야기 ‘동물농장’(권오성 감독), 외모 차별을 다룬 ‘육다골대녀(肉多骨大女)’(이애림 감독), 입시 위주의 교육문제를 꼬집은 ‘사람이 되어라’(박재동 감독)로 총 여섯 편의 움니버스 형식이다.

[표 2-5-8] 감독별 애니메이션 제작 현황

| 감독       | 제목               | 내용                                                        | 러닝타임    |
|----------|------------------|-----------------------------------------------------------|---------|
| 권오성      | 동물농장             | 서로 다른 다양한 모습이 그대로 인정되길 바라는 염소 이야기                         | 15분 30초 |
| 박재동      | 사람이 되어라          | 대학에 가야만 사람이 되는 고릴라의 이야기를 통해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을 꼬집음              | 13분     |
| 유진희      | 낮잠               | 무형성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의 교육권, 이동권 문제를 제기     | 13분     |
| 이성강      | 자전거 여행           |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다 세상을 떠난 주인공의 자전거가 찾아가는 이주노동자의 삶               | 10분     |
| 이애림      | 육다골대녀<br>(肉多骨大女) |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외모로는 살아가기 힘들다며 별도의 ‘무기’를 강요하는 외모 지상주의를 우화로 표현 | 10분     |
| 5인 프로젝트팀 | 그 여자네 집          | 맞벌이 부부의 일상을 통해 본 사회에 만연한 고정된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이야기               | 11분     |

2005년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영화제 출품과 일반극장 상영을 시작으로, 구민회관 등 국민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영공간을 활용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TV 방영, 비디오와 DVD 제작 및 보급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교육 및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 (3) 인권 포스터 제작, 배포

위원회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단 한 장에 압축하여 함축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고 장소의 제약이 없어 2차적 활용도가 높은 포스터의 장점을 활용하여 인권 포스터 16점을 제작하였다.

완성된 포스터는 포스터별로 활용 목적과 접근성·가독성 등을 감안하여 전국의 초·중·고·대학교(약 11,000곳),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약 850곳), 관공서(약 4,350곳), 시민사회단체 등에 배포되었다. 한편 세계인권선언기념 제56주년을 맞이하여 위원회 청사 로비와 광주 일곡도서관에서 인권포스터전이 열렸다.



차별예방을 위해 제작된 인권포스터

지하철 1·2·3·4호선(2004.12.20.~2005.1.2.), 지하철 5·6·7·8호선(2004.12.6.~12.13.), 부산지하철 등에도 인권 포스터가 게시되었다.

[표 2-5-9] 작가별 추진 내역

| 번호 | 이름  | 주제    | 번호 | 이름  | 주제           |
|----|-----|-------|----|-----|--------------|
| 1  | 고강철 | 차별 전반 | 9  | 안상수 | 이주노동자        |
| 2  | 김도형 | 피부색   | 10 | 안성금 | 노인           |
| 3  | 김두섭 | 차별 전반 | 11 | 윤호섭 | 나이           |
| 4  | 김영철 | 학력    | 12 | 이나미 | 성 소수자(트랜스젠더) |
| 5  | 문승영 | 차별 전반 | 13 | 이 섭 | 학력, 비정규직     |
| 6  | 박금준 | 소수자   | 14 | 이성표 | 소수자          |
| 7  | 박불똥 | 성차별   | 15 | 최준석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 8  | 안병학 | 성차별   | 16 | 홍성담 | 성차별          |

또한 인권 포스터를 활용해 ‘2005년 인권달력’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월간 <인권>의 지면을 통해 각 포스터를 소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인권 포스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 (4) 인권 만화책 <십시일反> 활용

2002년 위원회가 기획·제작한 인권 만화책 <십시일反>은 2003년 8월 초판 5,000부 발행을 시작으로 2004년 12월까지 9쇄(33,000부)가 발행되었다. 또한 공공기관(도서관 등)과 고등학교에 배포하여 인권교육 및 인권홍보 강화를 위해 활용하게 하는 동시에 국민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일반 유통도 병행 실시했다. 한편 <십시일反>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도서, ‘책따세(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 모임)’ 겨울 청소년 권장도서, 전교조 추천도서 등으로도 선정됐다.

### 5. 월간 <인권> 발간

위원회는 2003년 8월 위원회 활동 홍보 및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정기월간지 <인권>을 창간해, 그동안 국가인권위 소식과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현안을 취재 기사, 기고문, 인터뷰 기사, 만화, 사진 등의 형식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월간 <인권>은 2004년 12월 현재 통권 17호를 발행(총 발행 부수 약 490,000부)했고, 인권 전문가, 시민단체, 도서관, 국가기관, 언론, 기타, 정기구독 신청자 등에게 배포했다. 또한 위원회는 2004년 5월 웹진 ‘인권’(www.humanrights.go.kr/hrmonthly)을 창간해 온라인을 통한 인권홍보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월간 <인권>의 주요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표 2-5-10] 월간 <인권> 주요 내용

| 호 수                      | 특집(기획)                                   | 인권이 만난 사람               | 기타 주요 기사                     |
|--------------------------|------------------------------------------|-------------------------|------------------------------|
| 2003. 8월호<br>(통권 1호)     | - 인권 영화, <여섯 개의 시선><br>- 국가인권위원회가 바꾸는 세상 | 허병두 승문고 교사              | 세계의 창 - 물, 인권인가? 인권인가!       |
| 2003. 9월호<br>(통권 2호)     | -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br>- 인권, 이만큼 더             | 참여성노동복지터<br>전순옥 대표      | 현장 - 정신건강, 사회가 함께 푼다         |
| 2003. 10월호<br>(통권 3호)    | - 권고를 말한다<br>- 인권 편지를 쓰자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br>이란주 대표    | 세계의 창 - 숨겨진 아파트트헤이트,<br>달릿   |
| 2003. 11·12월호<br>(통권 4호) | - 입사지원서로 보는 우리 사회의 차별<br>- 서점에서 만난 인권    | ‘들꽃 피는 마을’<br>이장 김현수 목사 | 세계의 창 - 드 멜로의 죽음과<br>비엔나 +10 |
| 2004. 1월호<br>(통권 5호)     | - 반갑다 NAP<br>- 차별&국가인권위 여론조사             | 사진작가 이재갑                | 세계의 창 - 정보통신 기술은 사람을<br>위한 것 |
| 2004. 2월호<br>(통권 6호)     | - 한국 사회의 피부색 차별<br>- 폐지, 사회보호법           | 정미례 전북여성센터<br>대표        | 휴먼필 - 나는 차별 속에서 살아왔다         |
| 2004. 3월호<br>(통권 7호)     | - 여덟 살, 인권을 만나다<br>- 국제인권규약으로 본 대한민국     | 김동원 푸른영상 대표             | 제3의 시민, 도시의 노인들              |
| 2004. 4월호<br>(통권 8호)     | - 비정규직, 봄날은 없다<br>- 구금시설과 인권             | 안경환 서울대 법대<br>학장        | 사형제                          |
| 2004. 5월호<br>(통권 9호)     | - 학교, 인권에 윈크하다<br>- 16대 국회와 인권, 인권위      | 권인숙 명지대 교수              | 현장 - 사형제 청문회                 |
| 2004. 6월호<br>(통권 10호)    | - 난민협약 비준 10년의 대한민국<br>- 국가보안법의 추억       | 에바다학교 권오일<br>교감         | 세계의 창 - '아부 그라이브'의 충격        |
| 2004. 7월호<br>(통권 11호)    | - 여름 휴가 10%, 인권에 쓰자<br>- 진정·상당 2만건 시대    | ‘작은누리’ 망치선생<br>박형규      | 현장 - 정신병원의 올드보이              |
| 2004. 8월호<br>(통권 12호)    | - 갈등, 평화적으로 풀시다                          | 사형수들의 어머니<br>조성에 수녀     | 여전히 세상의 끝에 있는 섬, 소록도         |
| 2004. 9월호<br>(통권 13호)    | - 끌리면 오라, 세계인권기구대회                       | 사진작가 최민식                | 현장 -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
| 2004.10월호<br>(통권 14호)    | - 2004년, 세계의 인권                          | 히나 질라니 인권옹호<br>특별보고관    | 역사의 경계에도 삶은 존재한다             |
| 2004.11월호<br>(통권 15호)    | - 1096일의 발자취                             | 태백지역사회연구소<br>원기준 소장     | 새벽바다로 나가는 사람들                |
| 2004.12월호<br>(통권 16호)    | - 정보사회와 인권                               | 빈곤문제연구소<br>류정순 소장       | 미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

## 6.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 홍보

### (1) 인권 TV 캠페인

위원회는 차별 예방 및 진정권을 홍보하기 위해 2004년 11월부터 12월까지 TV 캠페인(‘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세상이 보입니다’)을 진행했다. 이는 MBC, KBS에서 96회(회당 40초)에 걸쳐 방영되었다.

인권 사진집 <눈·밖에·나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중 ‘Another Korean’에 실린 1세대 혼혈인들의 사진(사진작가 이재갑)을 배경으로 “단지 피부색이 다를 뿐, 나는 한국인”이라는 혼혈인 배기철씨의 독백을 담아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연출 박명천 감독).

이 캠페인은 높은 호소력을 인정받아 광고 포털 사이트(www.tvcf.co.kr)에서 네티즌이 뽑은 베스트 광고 1위에 선정(2004. 12. 27.~2005. 1. 31. 현재)되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미디어 다음’에 ‘인권위 TV광고 잔잔한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KBS 2TV <VJ특공대>에서 캠페인 내용과 캠페인에 출연한 배기철, 안성자, 박근식씨 등 혼혈인의 삶이 보도되었다.

위원회는 2005년에도 2004년에 진행한 TV 캠페인을 연이어 방영함으로써 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연속 노출을 통해 캠페인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2) 언론 홍보

위원회는 2004년 한 해 동안 총 175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언론사 사회부(64곳), 논설위원실(19곳), 시민단체(215곳) 등에 배포되었으며 사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및 정부부처 등에도 배포했다. 2004년의 경우 위원회 활동경험이 축적되면서 단순 권고에 대한 취재보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건수는 2003년 122건이



었으나 2004년에는 179건으로 늘었다.

또한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및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8회(출입기자 5회, 지역기자 3회)에 걸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밖에 외국 언론기관 및 해외 인권단체에 위원회 활동상을 전파하기 위해 42건의 중요 보도자료를 영어로 번역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2004년의 경우 위원회의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기획홍보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중앙일보> ‘빈곤층 아동의 인권’, <동아일보> ‘한국사회의 차별’, <주간동아> ‘인권과 현장 - 차별을 넘어’, KBS(1TV) ‘한국사회의 차별 실태’ 등의 기획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해 새롭게 접근했으며, 지역순회 인권상담 과정에서 지역 언론 기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한 위원회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홍보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2004년 1년 동안의 보도자료와 신문기사 등을 모아 <보도자료집>과 <기사모음집>을 각각 1,200부씩 발행하여 국회, 언론사, 시민단체, 정부기관 등에 배포했다. 이 자료집에는 2004년 한 해 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권 현안과 위원회의 제반 활동 사항이 담겨 있다.

### | 제 3 절 | 평 가

위원회는 2004년에 △인권교육의 장기적·제도적 기반구축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 영역 인권교육 기반조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NAP 인권교육 분야 과제 선정 등 인권교육 중장기계획 수립활동은 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으며,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 역시 인터넷을 활용한 인권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등 위원회의 학교 인권교육 자료 개발과 초·중등학교 교사연수, 인권교육연구학교 운영 등의 활동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으며,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소재로 한 인권 동화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와 인권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발간·배포 및 인권 문예작품 공모 등의 활동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권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검찰, 경찰, 교도관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연수과정에 인권강좌를 개설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기반 구축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로 불리는 군대, 다수인 보호시설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다. 또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정교화나 기초 교재의 개발이 미흡하여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아울러 향후 시민사회 영역의 인권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인권 홍보에서는 인권 영화 <여섯 개의 시선>의 경험을 토대로 두 번째 인권 영화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인권 애니메이션을 완성했다. 또한 16명의 작가가 참여해 인권 포스터를 제작했다.

<여섯 개의 시선>은 2004년 내내 세계 각국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개봉된 후 7개 도시로 확대 개봉되었다.

만화책 <십시일反>은 9쇄(33,000부)를 발간하여 2004년 한 해 내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의 다양한 독자들에게 다가갔다. 월간 <인권>은 매달 정기적으로 인



권 현안을 전달하며 인권 정보를 축적하고 다양한 필자의 인권 관련 칼럼들을 게재했다. 특히 학교 도서관, 병원, 은행 등에서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인권>을 접할 수 있게 했다. 웹 서비스로 누리꾼의 접근성도 높였다. 이 밖에 서울에서 열린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를 국내외 언론에 적극 홍보해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한편 2004년 한 해 동안 위원회의 활동 및 결정내용을 신속하게 보도자료로 작성해 언론기관과 시민단체에 배포함으로써, 위원회의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왔다. 또한 차별과 관련한 기획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 | 제 1 절 | 개 요

1993년 유엔 비엔나 회의는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채택하면서 국가인권기구가 비정부기구(NGO)와 정부를 이어 주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간단체와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위원회법 제19조는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지닌 인권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2004년은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 현안인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정보인권,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해였다. 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민간경상보조금사업’ 및 ‘시민실천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을 인권단체와 공동 협력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인권활동을 활성화하고 협력의 기틀을 강화하였다. 또한, 간담회 및 ‘인권활동가 인권강좌’ 등을 개최하여 인권단체들과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2004년은 위원회가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 인권기구와 교류협력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다. 위원회는 2002년 11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들의 모임인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APF)에 가입한 이래, 2004년 4월 세계 69개국의 국가인권기구들의 대표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2004년 9월에



는 제9차 APF 연례회의와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를 위원회 주관으로 한국에서 개최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하여 세계 인권 현안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따른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함으로써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 | 제 2 절 | 주요 추진실적

### 1. 인권단체와 협력 강화

#### (1) 공동 협력사업 추진

지난해에 이어 2004년에도 인권단체와 공동 협력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시민실천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특화된 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한 여건 조성은 물론 인권의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3년 초기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과 사업 참여 단체들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공동 협력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민간경상보조금사업’은 인권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04년에는 26개 단체를 선정, 총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지원사업 분야는 △인권 신장을 위한 새로운 분야의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국제조약 관련 및 국민적 과급효과가 큰 사업 △지역 연대사업 등 네트워크 구축 효과가 큰 사업 등으로 하였다.

[표 2-6-1] 2004년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 현황

(단위:천원)

| 연번  | 사 업 명                                             | 단 체 명                   | 보조금     |
|-----|---------------------------------------------------|-------------------------|---------|
| 1   | 데이터베이스 정보인권 지침 개발 및 출판                            | 진보네트워크                  | 7,000   |
| 2   | 2004 청소년 모의법정 대본 공모 및 공연사업                        |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 7,000   |
| 3   | 국내 외국인 난민 인권실태조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5,000   |
| 4   | 성적 소수자 전문 상담센터 기초작업                               | 동성애자인권연대                | 5,000   |
| 5   | 환자권리 확보를 위한 차별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활동                      | 건강세상네트워크                | 7,000   |
| 6   | 시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률 입법을 위한 캠페인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6,000   |
| 7   | 수화로 엮은 인권비디오 보급                                   | (사)한국농아인협회              | 7,000   |
| 8   | 실업자 노동인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조직화 방안 모색               | 서울여성노동조합                | 7,000   |
| 9   | 공유 라이선스 및 운동모델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통한 정보공유의 권리보장          | 정보공유연대 IPLeft           | 4,000   |
| 10  | 군인의 전화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 위한가족협의회 | 6,000   |
| 11  | ‘장애아 놀자’-대구시 거주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 장애인지역공동체                | 6,700   |
| 12  | 무학·저학력 성인학습자와 노인 인권교육                             | 가톨릭여성회관                 | 4,000   |
| 13  | ‘아동인권관련 생활환경 및 제도개선 활동’ 인권 지킴이                    | 안산YMCA 아동인권센터           | 6,000   |
| 14  | 환경관련 인권침해 해외소송사례 연구                               | 환경정의시민연대                | 5,000   |
| 15  | 원폭피해자 구술 증언기록 사업                                  |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            | 5,000   |
| 16  | ILO총회 참가 및 독일 주요 도시 순회 세미나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6,200   |
| 17  | 해외 한국기업 노동자 인권 워크숍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7,000   |
| 18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전략                                    | 천주교인권위원회                | 6,300   |
| 19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공청회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 5,000   |
| 20  | 북한인권 국내의 연대활동                                     | (사)좋은벗들                 | 4,000   |
| 21  | 종교인권단체 네트워크 개발사업 및 종교인 인권 아카데미                    | 원불교인권위원회                | 5,000   |
| 22  | 아동보호 국제기준의 국내적용을 위한 연구조사를 통한 기준수립과 기준실현을 위한 홍보캠페인 |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 7,000   |
| 23  | 인권상담 ‘365 인권 Hot-Line’                            |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 6,000   |
| 24  | 부산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구축                             | 부산인권센터                  | 6,000   |
| 25  | 인권 학술 심포지엄-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 한국가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 5,000   |
| 26  | 미군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사업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4,800   |
| 합 계 |                                                   |                         | 150,000 |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3년 제정된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에 따라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지원사업 및 단체는 [표 2-6-1]과 같다.

지원사업 중 대표적 우수사례는 가톨릭여성회관에서 수행한 ‘무학·저학력 성인 학습자와 노인 인권교육’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회 소외계층인 무학·저학력 성인과 노인들에게 인권을 주제로 제작한 한글 교재로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글을 몰라 접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 전반적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함은 물론, 노인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산 YMCA 아동인권센터가 수행한 ‘아동인권 관련 생활환경 및 제도개선 활동’은 놀이터 사용 주체인 어린이들이 직접 지역 관내 놀이터 시설물의 설치 기준, 유지관리 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어린이 인권 지킴이’ 활동 프로그램으로 아동 인권학습에 좋은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 지역공동체의 ‘장애야 놀자! - 대구시 거주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인권 교육 프로그램’은 대구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한 후 이를 기초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이해 매뉴얼을 발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비장애 학생들에게 장애인은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보통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장애인 친구와 사귀면서 지켜야 할 예의 등을 교육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실천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여, 국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자 2003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2004년에는 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18개 차별 영역에 대한 사업공모를 실시하여 16개 사업(총 1억 2,500만원)을 선정, 추진하였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2003년 사업운영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수행 단체들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중간발표 및 평가,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이 조기 정착되도록 하였으며, 사업명 및 수행단체는 [표 2-6-2]와 같다.

[표 2-6-2] 2004년 시민실천프로그램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 연번  | 사 업 명                                                         | 단 체 명           | 보조금     |
|-----|---------------------------------------------------------------|-----------------|---------|
| 1   | 장애인 시험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우 시험차별 개선단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1,000  |
| 2   | HIV/AIDS 인권지침서 발간작업 및 배포<br>HIV/AIDS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주간사업 및 열린토론회 |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 10,000  |
| 3   | 여성장애인 차별 없는 평등세상 만들기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8,000   |
| 4   |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 차별 해소를 위한 시민행동                               |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10,000  |
| 5   | 신문에서 나타난 소외계층 보도사진 모니터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6,000   |
| 6   | 이주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다문화사회                                     |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9,000   |
| 7   | 북한이탈주민 자녀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br>“상대를 존중하면 교실이 넓어져요”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 5,000   |
| 8   | 차별을 넘어 평등한 부부관계 맺기 “부부재산은 공동의 것”                              | 한국여성의전화         | 8,000   |
| 9   | 이주노동자 차별방지를 위한 고용주 인권교육                                       | 아시아의 친구들        | 6,000   |
| 10  | 저소득 실업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사이버 캠페인                                    |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 8,000   |
| 11  | 청소년의 평등노동권에 대한 의식향상과 청소년 노동 차별관행 개선을<br>위한 창구개설 및 운영          | 대전여민회           | 9,000   |
| 12  | 장애비장애 통합 놀이터 매뉴얼 개발 및 통합놀이터 만들기 조례제정<br>운동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 8,000   |
| 13  | 청소년인권 환율 만들기 운동                                               | 군산YMCA          | 7,000   |
| 14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문화교육 및 행<br>동 프로그램 개발            |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7,000   |
| 15  | 장애우와 함께하는 인권 이야기                                              |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 6,000   |
| 16  |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 7,000   |
| 합 계 |                                                               |                 | 114,000 |



대표적 우수사례로, 목포경실련의 ‘장애인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 차별 해소를 위한 시민행동’은 2003년의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 사업의 연속사업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교재를 개발하고 △현장교육 위주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장애인 주차구역 지킴이 활동 등 시민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장애인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을 신장하고 사회통합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한 ‘2004 풀뿌리 시민운동 사례공모’에서 입상하기도 하였다.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은 이주노동자 및 그들의 사회·문화·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인권 캠프, 아시아 푸드 페스티벌, 아시아 문화 한마당 등을 펼치는 ‘이주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다문화 사회’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이 사업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시민 접근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사업의 전형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상대를 인정하면 교실이 넓어져요’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인식과 태도개선을 촉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속한 학급에서 통합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인식 및 태도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2) 간담회 및 업무 설명회 개최

2004년 위원회는 대구·청주·춘천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의 인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총 72개 단체에서 106명이 참석하였다. 지역 간담회에서는 위원회 사업에 대한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다양한 인권



강원지역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2004.5.20.)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2004년 2월, 41개 인권단체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참석 단체들이 제시한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주요 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3) 인권교육 강좌 운영

인권단체 상근 활동가의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 강좌 프로그램을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획, 운영하였다. 2004년에는 강원·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두 차례 실시하여 총 42개 단체에서 85명이 참석하였다. 강좌는 인권법 이론, 국제인권기구 활동 동향, 국가인권위원회 활용방법 등 인권 활동가로서 실무에 필요한 법률지식 및 상담 기법 등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단체간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의 인권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 (4) 인권 취약현장 방문

인권 취약현장 방문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약자·소외 계층을 방문, 어려움을 체험하여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4년 위원회는 독거노인들이 거주하는 ‘쪽방촌’(영등포역 부근), 무의탁 노인·중증 장애인·어린이들의 공동생활체 시설인 ‘나눔의 동산’(강원 춘천), 이주노동자들의 상담 및 생활보호시설인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경기 안산), 무의탁 장애인 자활·보호시설인 ‘지계의 집’(경기 양평),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뽕배학교’(서울 장충동) 등 총 8곳을 방문하였다.

### (5) 인권정책 토론 활성화를 위한 ‘배움터’ 시설 개방

위원회는 청사 내의 ‘배움터’를 무료로 개방, 인권단체들이 각종 학술행사, 세미



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 여론 형성과 인권운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토론회’,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NGO의 역할강화 및 연대방안’ 등 2004년에 총 179회의 행사가 배움터에서 열렸다. 위원회의 2002년 배움터는 개방 이후 2004년까지 인권단체 등에 의해 총 527회 이용되었다.

#### (6) 지역 인권영화제 개최 및 행사 참석 등 교류사업

지역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고양하고 지역 인권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 처음으로 ‘지역순회 인권영화제’를 지역 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획, 개최하였다. 대구·청주·춘천 3개 지역의 도심공원 및 캠퍼스에서 <여섯 개의 시선> 등 총 22편의 인권 영화를 상영했는데 2,000여 명의 시민과 청소년 등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위원회는 인권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상호 협력·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신년하례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장애인 인권상 시상식, 외국인노동자병원, 참여연대 후원의 밤 등 각종 행사에 120여 회 참석해 사업에 대한 후원과 위원장상 수여, 축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활동을 했다.

## 2. 세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및 국제협력체제 구축

#### (1) 제9차 APF 연례회의 및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개최

위원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2004년 아·태 지역 15개국 국가인권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제9차 APF 연례회의와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등 두 개의 규모 있는 국제회의를 치뤘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제9차 연례회의(The 9th Annual Meeting of

the 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2004년 9월 13일 총 47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APF의장에 선출되었으며,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의 국가인권기구의 잠재적 역할, 국가인권기구의 조사결과와 권고의 후속조치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등 APF 사업 및 주요 사안에 대해 심층토론이 이루어졌다.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제3장 특별사업(181쪽)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 (2)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국제회의 참가

위원회는 2004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4주간 참가하였다. 이 기간에 위원장을 포함한 대표단은 APF 회의, 국제조정위원회(ICC) 연례회의, APF 회원국과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지역팀(Geographic Unit) 회의 및 APF 회원국과 인권고등판무관실 국가기구팀(National Institutions Unit) 회의에 참가하였다.

APF 회의에서는 주로 인권고등판무관실과 APF의 협력, 그리고 제9차 APF 연례회의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국가기구에 대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ICC 연례회의에서는 신임 ICC 의장을 선출하고,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장애인 권리협약과 인권교육에 대한 주제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회의에서 위원장은 9월에 개최될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대한 준비상황을 보고하고, 각국 국가인권기구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대표단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인권 메커니즘의 효율적 기능을 다루는 국가기구 세션(의제 18b)’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이라크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라크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한편, 위원장은 이 기간에 버트란트 람차란(Mr. Bertrand G. Ramcharan) 인권고등판무관 권한대행과 모텐 키아룸(Mr. Mortem Kjaerum) 신임 ICC 의장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였으며,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등 20여 개 국제



인권 NGO를 만나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가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2004년 유엔에서 주관한 ‘사회권의 사법판단 적합성’에 대한 국제 워크숍, 유엔 장애인협약 제3차 특별위원회 및 제36차 아동권리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여 인권 현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발표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인도에서 개최된 제4회 세계사회포럼, 테러리즘의 영향과 반테러리즘 조처에 관한 아시아 회의 및 아시아시민사회포럼 등 국제 인권 NGO에서 주최한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표 2-6-3] 국제회의 참가 현황

| 주 관         | 회 의 명                        | 회 의 목 적                                       | 기 간           | 지 역  |
|-------------|------------------------------|-----------------------------------------------|---------------|------|
| 유엔<br>(7회)  | 유엔사법판단적합성 워크숍                | 아·태지역 협력 및 사회권의 사법판단적합성에 대한 국내외적 법철학 관련 정보 공유 | 1.24.~30.     | 몽 골  |
|             | 제12차 아·태지역 워크숍               | 아·태지역의 인권관련 지역적 협력 도모                         | 2.28.~3.6.    | 카타르  |
|             | 제60차 인권위원회                   | APF, ICC 회의 참가 및 인권위원회 모니터링                   | 4.3.~25.      | 스위스  |
|             | 제57차 세계보건기구 총회               | 세계보건기구(WHO) 건강권과 관련된 인권문제의 세계동향 파악            | 5.15.~19.     | 스위스  |
|             | 제3차 장애인 특별위원회                | 장애인권리협약(안)에 대한 논의 모니터링                        | 5.22.~30.     | 미 국  |
|             | 제36차 아동권리위원회                 | 아동권리위원회 활동 모니터링                               | 5.30.~6.3.    | 스위스  |
|             | NAP관련 아태지역전문가 회의             | 아태지역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토론              | 10.19.~24.    | 태 국  |
| APF<br>(3회) | 제8차 APF 연례회의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와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                     | 2.13.~21.     | 네 팔  |
|             | 인권교육 NAP 워크숍                 | 아태지역의 인권교육 NAP 개발사례 연구                        | 7.9.~15.      | 뉴질랜드 |
|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훈련 프로그램          | 국제인권기준 점검 및 국가인권기구 사업 모색                      | 11.30.~12.12. | 태 국  |
| NGO<br>(4회) | 세계사회포럼                       | 세계사회포럼(WSF) 모니터링                              | 1.15.~22.     | 인 도  |
|             | 인권과 인도주의법 훈련 프로그램            | 무력분쟁관련 법적, 정치적 개념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모               | 10.11.~15.    | 태 국  |
|             | 테러리즘의 영향과 반테러리즘 조처에 관한 아시아회의 | 테러 관련 회의 모니터링                                 | 11.18.~21.    | 태 국  |
|             | 아시아시민사회포럼                    |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관련 아시아 지역 활동 모니터링                  | 11.20.~26.    | 태 국  |

### (3) 외국 인권기구와 교류협력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위원회는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뿐만 아니라 외국의 국가인권기구와 교류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직원들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선진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이탈리아 인권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Human Rights), 상원 인권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양성평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와 터키의 인권보호협회(IHD-Turkish Human Rights)를 방문했으며, 지금까지 교류가 없었던 유럽과 아프리카의 그리스 인권위원회(Greek Human Rights Commission)와 이집트 국가인권위원회(Egyptian National Council for Human Rights)를 방문하여 상호 협력의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앞으로 아시아지역의 국가인권기구와 인권 NGO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사업을 모색하고자 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홍콩에 있는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를 방문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개선을 위한 실무연수 중 국제이주기구(IOM) 방문 (2004.10.21)

[표 2-6-4]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 방문 현황

| 방 문 기 관                                                         | 방 문 목 적                              | 방 문 인 원      | 방문기간       |
|-----------------------------------------------------------------|--------------------------------------|--------------|------------|
| 이탈리아<br>· 정부부처간 인권위원회<br>· 상원인권특별위원회,<br>· 양성평등부<br>터키 : 인권보호협회 | 직원 인권마인드 함양 및 선진 사례 발굴               | 차별조사2과장 등 9명 | 6.27.~7.3. |
| 그리스, 이집트 인권위원회                                                  | 선진국가인권기구 활동상황 파악 및 교류협력 증진           | 김만흠 위원 등 5명  | 11.13.~20. |
| 태국 국가인권위원회<br>홍콩 아시아인권위원회                                       | 아시아지역 국가인권기구 활동상황 파악 및 NGO와의 교류협력 증진 | 박경서 위원 등 5명  | 11.13.~19. |



#### (4) 차별금지법령집 등 자료집 발간

위원회는 차별금지법령 제정에 참고하고자 이미 모범적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미국, 호주 등 5개국의 9개 법령을 선별·번역하여 <차별금지법령집>을 영문과 국문으로 발간하였다.

법령집에는 미국의 공민권법 제7편(1964) 및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1967), 캐나다 인권법, 영국의 동일임금법(1970) 및 성차별금지법(1975), 호주의 인권및기회평등위원회법(1986), 장애인차별금지법(1992) 및 북부주(州) 차별금지법, 홍콩의 가족지위차별금지법이 실려 있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 인권제도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엔 인권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을 번역·발간하였다. 인권해설집 시리즈로 2004년에 <국제인권장전>, <고문방지>, <유엔 특별보고관> 및 <국가인권기구 안내서> 등 4권을 발간했으며, 2005년에 추가로 14권을 발간할 예정이다. 해설집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대학 도서관 및 관련 NGO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 제 3 절 | 평 가

2004년은 인권단체들과 협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한 차원 높은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 해였다. 우선, 2003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사업’과 ‘시민 실천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은 인권운동의 활성화 및 국민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였고, 시행 초기의 미비점을 보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이 내실화 되었으며 안정적 공동 협력사업으로 정착하였다.

또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인권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협력방

안을 모색하였으며, 지역 인권운동 활동가들을 위한 인권교육 강좌 프로그램을 지역 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획·운영하여 활동가들의 실무능력을 높이고, 지역단체간 상호연대를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2004년에 처음으로 시도된 지역 인권 영화제는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영화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앞으로 인권단체와 상시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상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단체) 및 외국의 국가인권기구와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지난 3년 동안 APF 정회원 가입(2002. 11.), 지역대표(2004. 2.) 및 의장 피선(2004. 9.) 그리고 ICC 정회원 가입(2004. 4.)과 아울러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2004. 9.)함으로써 단기간에 국제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각종 국제 인권회의에 참석하고 외국 국가인권기구를 방문하여 정보교환과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APF, ICC에서 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 인권 현안에 대해 여러 국가인권기구와 공동사업을 기획·추진하는 한편 발전권, 환경권, 정보와 인권, 아동 및 장애인의 권리 등 주요 국제인권 이슈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 인권보호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각종 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핵심 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국제협력 사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특별사업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 제 1 절 | 추진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4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서울 롯데호텔 국제회의장에서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1991년 파리에서 제1차 대회가 개최된 이후 유럽, 미주, 아프리카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4개 지역별로 순환하여 2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후원을 받는다.

대회의 개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의 적극적 요청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이 대회의 개최를 통하여 국내적으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편 사회전반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국제 및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인권기구와 시민사회간 연대를 강화하고, 테러 및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논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국제인권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 제 2 절 | 대회

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2004년 2월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실무운영단을 발족하였다. 또한, 의제와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행사 홍보를 위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홈페이지를 제작·운

영하였다.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는 신임 인권고등판무관 루이스 아버(Ms. Louise Arbour) 등 국제인권 전문가와 유엔 관계자 60여 명, 61개국 국가인권기구 대표 119명, 국내외 NGO대표 6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모두연설, 분과별 주제발표와 토론, 전체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회 마지막 날에는 서울선언문(Seou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대회는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대주제로 하여 분쟁과 대테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1분과), 분쟁과 대테러, 시민·정치적 권리와 법치(2분과), 분쟁상황에서의 국가인권기구의 역할(3분과), 분쟁과 테러리즘 맥락에서의 이주문제(4분과), 분쟁 맥락에서의 여성의 권리(5분과) 등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대회에서 채택된 서울선언문에는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과제 및 대테러 조치의 국제적 인권기준 부합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를 유엔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향후 ICC 연례회의에서 서울선언 이행사항을 보고하는 절차도 명시되었다.

한편, 9월 13일과 14일 오전에는 이번 대회에 대한 NGO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 NGO 대회(NGO Pre-Meeting)가 개최되었는데, 이 NGO 대회에는 100여 명의 국내외 인권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대회 시작 전날인 9월 13일에는 14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들이 모여 제9차 APF 연례회의를 별



제7차 세계인권기구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루이스 아버 UN 인권고등판무관(가운데)과 노무현 대통령(오른쪽) (2004.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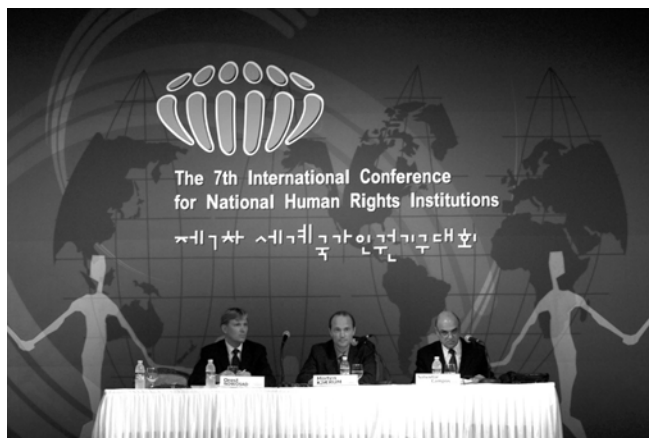
도로 개최하였다.

### | 제 3 절 | 평가 및 향후 계획

이번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이라크 전쟁을 비롯해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테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과 대테러라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국가인권기구들이 개최한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였다. 또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권 NGO 대표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하여 국가인권기구 대표들과 활발한 토론을 벌임으로써 국가인권기구와 NGO간의 새로운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위원회는 설립된 지 3년 만에 세계 국가인권기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인권사회에서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귀중한 경험을 갖게 되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서울선언문에 명시된 서울 결의(Seoul Commitment)의 후속작업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 대회 주회의장 (2004.9.13)





##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 제 1 절 | 개요

국가보안법은 법조문 자체의 반인권성과 법 적용 및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로 인해 시급히 개폐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먼저 국내적으로, 대북한 봉쇄와 안보가 핵심이던 냉전 시기에 제정되고 운영되어 온 국가보안법은 민주화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개폐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적이 아닌 통일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면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활발해졌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이미 북한은 국제법적으로 독립국가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9조, 제18조, 제19조 등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제인권기구 특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받았다.

이러한 국내외적 요구에 부응하여 2003년 초부터 국가보안법을 연구·검토해 온 위원회는 2004년 8월 23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이하 TFT) 운영, 실태조사 연구용역(‘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과 공청회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 관련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결정한 것이다.

## | 제 2 절 | 권고 내용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이른바 좌파 불순분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1948년 12월 1일 제정· 공포된 비상조치법이다. 그러나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법 운용과정에서 반민주성 및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위험 시비가 그치지 않았다. 2001년 11월 25일 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청하는 40여 건의 진정 및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위원회는 2003년 1월 7일 전원위원회 제3차 워크숍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TFT를 발족하기로 결의했으며 같은 해 2월 3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TFT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을 체계적·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TFT는 2004년 7월까지 총 16회에 걸친 회의와 세 차례의 간담회 및 공청회, 법 운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2004년 7월 26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원회에서는 TFT 보고서,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조한 후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적인 법률인지의 여부를 역사적· 법률적· 현실적 측면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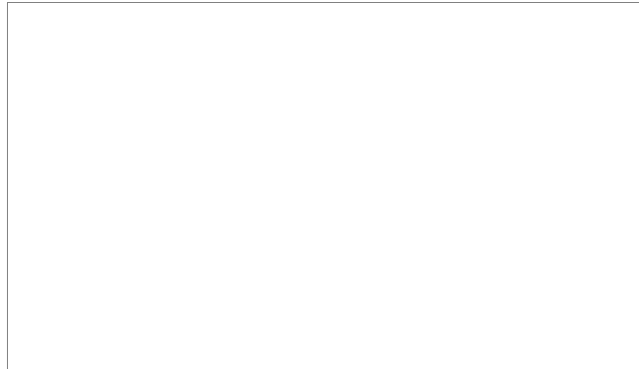
국가보안법 관련 공청회 (2004.5.20.)

먼저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1948년 12월 총 6개조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좌파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으로써

태생적으로 반인권적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개정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무술경관을 동원해 야당의원들을 끌어낸 후 시도된 제3차 개정(1958년 2·4파동, 여당 단독 개정)이나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한 국가보위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결정에 대한 브리핑 (2004.8.24.)

입법회의에서의 6차 개정(1980), 야당원의 표결 기회를 봉쇄하고 의결한 7차 개정(1991)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의 개정 절차는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법률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행위형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는 예비·음모 행위는 물론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위형법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반국가단체의 규정 자체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원칙도 위배하고 있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 학문, 예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제7조 찬양·고무 죄는 헌법상의 언론·출판·학문·예술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위축하고 형벌과잉을 초래할 소지가 크고, 제10조 불고지죄는 침묵의 자유 등 인간의 가장 은밀한 내심의 영역을 침해하여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국가보안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국가보안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 법익을 비롯한 규제행위 대상은 원칙적으로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 그리고 공안을 해하는 죄의 장

과 겹치고 있어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에는 국가보안법에 상응하는 법이 없고 북한 형법의 내용이 우리 형법의 내란·외환·간첩죄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불법행위의 경우 기타 특별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남 전략 및 법체계의 변화 없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국가보안법의 심각한 ‘반인권성’에 대한 논의는 국제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되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그 폐지를 권고해 왔다. 또한, 북한은 유엔 동시 가입으로 독립국가의 지위를 얻었으므로 ‘한반도 북측을 무단 점령한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사실상의 국가’로 보는 게 변화된 시대적 환경과 국제법 질서에 맞는 해석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까지 열린 현실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주장하면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 제 3 절 | 평가

이와 같은 이유로 위원회는 몇 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제거할 수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역사적 관점, 법률적 관점, 그리고 현실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연구·검토한 후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신장에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 제 1 절 | 추진 배경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은 우리 사회의 현 단계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NAP는 한 국가의 중장기 인권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부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정책추진, 평가단계까지 인권보호 및 인권신장을 고려하는 인권주류화(human rights mainstreaming)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NAP 추진은 “각 나라의 정치적·문화적·역사적 환경과 실정에 맞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권고안에서 비롯되었다. 지금까지 15개국 이상의 국가가 NAP를 수립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2001년 5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는 2006년 6월 30일까지 NAP를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2002년부터 NAP 권고안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 | 제 2 절 | 추진 내용

위원회는 출범 초부터 NAP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2년과 2003년에는 외국 NAP 사례 등 기초자료 수집, 유엔 NAP 핸드북 번역 및 각국의 국제기구 권고사

항 이행 사례 연구·검토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2004년에는 NAP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팀, 추진기획단과 전문가 자문팀 등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NAP 각 분야별 현황과 실태파악 및 정책 방안 연구를 위하여 25건의 기초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NAP 실무팀은 기초 현황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 대상수, 타당성, 실현가능성, 심각성, 예산비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국제적 활동 분야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선정했다. 이 과제는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추진기획단 발족식 (2004.2.24)

추진기획단과 각 권리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NAP전문가 자문팀의 검토를 거쳐 NAP 권고안에 담아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 정리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NAP권고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총 86개의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NAP권고안에 담아야 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받았다. 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에 NAP사이트를 마련하여 NAP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정책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NAP권고안 작성과 향후 이행점검 단계에서 적극 반영될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에 따라 NAP 권고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구성했다.

### | 제 3 절 | 평가와 향후 과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정리하여 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NAP실무팀의 지속적 활동과 10여 차례에 이르는 추진 기획단 회의 및 총 25개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NAP 권고안 마련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2005년 위원회는 현재까지의 추진결과를 토대로 NAP권고안 초안을 마련한 후 간담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시민단체 및 국민과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협의과정을 거치는 한편, 정부부처와 정책관계자협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NAP권고안을 작성할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

### | 제 1 절 | 추진 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은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8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위원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면서, 위원회 업무와 조직 및 진정사건의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법은 인권단체와 정부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제정되었으며, 이 과정에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실제 법 운영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조사권, 권고의 실효성 등 여러 미비점이 발견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2004년 1월 29일에는 퇴직 인권위원의 공직취임제한규정(제11조)이 위헌판결을 받아 효력이 정지되기도 하였다.

법 개정(안)이 처음 논의된 것은 16대 국회에서다. 사무총장을 정무직으로 하는 개정안(2001. 12. 10. 이상수 의원 대표발의)과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2003. 12. 1.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2004년 5월 16대 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17대 국회가 시작된 후 예비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안 등 3개의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다.

[표 3-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재천 의원 안은 위원회 독립성 강화, 조사권 강화, 지방사무소 설치,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04년 6월부터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2004년 10월 차별시정 기능을 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표 3-4-1]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 발의 현황

| 의안별       | 찬성   | 발의(제출)      | 추진 상황                                | 주요 내용                      |
|-----------|------|-------------|--------------------------------------|----------------------------|
| 최재천 의원(안) | 150인 | 2004.12.10. | ◦ 법사위 상정 : 2004.12.28<br>◦ 제1소위 심의 중 | 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많은 부분 개정사항 포함 |
| 유선호 의원(안) | 37인  | 2004.7.2.7  | "                                    | 지방사무소 설치                   |
| 정성호 의원(안) | 18인  | 2004.8.13.  | "                                    | 퇴직 인권위원 공직취임제한규정 삭제        |
| 정부 제출(안)  |      | 2005.2.17.  | -                                    | 차별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             |

## | 제 2 절 | 개정안 주요 내용

### (1) 위원회로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정부는 차별시정 업무를 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정부안은 먼저, 노동부가 수행하던 『남녀고용평등법』의 고용평등위원회 관련 업무와, 여성부가 관장하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관련업무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차별시정 기능을 통합하여 위원회가 관장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 소위원회 형태로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효과적인 차별시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애, 출신지역, 혼인 여부 등 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개념을 명확히 하고, 차별개념 및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희

롱 등 다른 차별영역도 조사 및 구제가 가능하도록 조사대상에 명시하였다.

셋째, 위원회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장애 등 분야별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합의권고 절차 없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 (2) 위원회 독립성 및 기능 강화

최재천 의원 발의안은 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의되었다. 위원회의 세출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원회 조직 및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며,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조직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였다. 또한,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등 사무처 조직 확대 및 사무총장의 대외협력·조정기능 강화에 따라 상임위원을 사무총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차장을 2인 신설하였다.

둘째, 국책사업의 시행착오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과 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정부의 법령·정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구금 및 보호시설에 진정함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설수용자 면담시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직원 입회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수사 중인 사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하며, 시설방문 조사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신청권, 동행명령권, 통신사실 조회 및 조사 중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였다.

넷째, 강제력이 없는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여부 및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 제 3 절 | 향후 추진 계획

위원회는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를 거친 후 최종 입장을 정리하여 국회 심의과정에 위원회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고, 2005년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위원회법 개정(안)이 개정·공포되면, 가능한 최단시일 내 차별시정 기능의 일원화를 위한 후속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원회법 시행령, 위원회 직제령 및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여성부 등 타 부처로부터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인수인계하여 업무이관 과정 중 국민의 권리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를 어떤 형태로 설치할 것인지 논란이 일면서, 위원회에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시정은 현재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므로 앞으로 논의 경과를 지켜본 후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이 강화, 발전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할 것이다.



## 차별금지법(안) 제정 추진

### | 제 1 절 | 추진 배경

위원회는 차별적인 관행이나 제도,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더욱이 위원회법상의 차별의 개념 및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위원회법의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2003년 중점과제로 선정, 이를 추진하였다. 먼저 차별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여 외국의 사례와 차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조문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추진위원들로 별도의 조문팀을 구성하여 차별금지법안(이하 법안)을 구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검토 과정에서 법안의 구성 방향을 차별의 개념, 위원회법에서 명시한 18가지 사유와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교육기관의 이용 등 3가지 영역을 기반으로 불합리한 차별의 내용,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의 조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별 관련 부처와 협의하였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원회는 차별유형의 구체적인 적시를 비롯하여 구제수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관련 부처와 협의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2003년 입법 추진이라는 목표를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2004년에도 차별금지법안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 | 제 2 절 | 주요 추진실적

2004년 위원회는 추진위와 조문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그동안 거론된 주요쟁점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게 검토 하였다. 추진위는 발족 이래 전체회의 9회, 3개 분과별 회의 각 3회, 분야별 검토회의 각 2회를 개최하였으며, 조문팀은 36차례 팀회의 및 8회에 걸쳐 조문 검토회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법안의 각 조문에 대한 수정·보완 및 근거자료 확보,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였으며, 법안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차별금지관련법 및 차별시정기구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법안 관련 논의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 | 제 3 절 | 평가 및 향후 계획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의 중요성 및 법안 구성의 어려움 등을 감안, 전문가 참여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하반기에 부처간 차별시정기구 정비 논의가 진행되면서, 시정기구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작업이 불가피하게 지체되었다.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차별시정기구를 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이를 위한 위원회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위원회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뒤, 차별을 적극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북한인권사업

### | 제 1 절 | 추진 배경

2003년 4월 16일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유럽연합이 상정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우리 정부는 남북한 관계를 고려하여 이 결의안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들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여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국내에서는 북한인권 개선 및 탈북자 보호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2004년에도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다시 통과되었고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탈북자 입국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탈북 및 국내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위원회는 국회와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북한인권사업을 전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북한인권 개선 및 국내 입국 탈북자의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진정도 접수하였다. 위원회는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인권 실태 파악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 | 제 2 절 | 활동 사항

2004년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토론회와 중국 현지 조사를 통해 재외 탈북자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토론회

는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6.30.), ‘재외탈북자의 인권 실태 변화와 관련국들의 정책’(12.22.) 등 두 차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국내 입국 탈북자, 탈북자 지원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탈북 동기 및 경로, 해외 체류시 생활, 탈북지원 단체의 활동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재외탈북자의 인권 토론회 (2004.12.22.)

또한 중국 현지 조사는 6월과 10월 하순, 베이징과 연변 일대에서 재외공관의 탈북자 보호활동, 탈북자 면담, 탈북 지원 인사 및 중국측 전문가 면담, 북·중 국경지대 방문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의 활동을 통하여 탈북자의 탈북 동기 및 중국에서의 생활,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정부의 대책 등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탈북자 보호 및 탈북 현상의 근원적 해결 방안에는 탈북자, 탈북지원 단체, 한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북한내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유엔 관련 회의를 참관하였다. 2004년 12월 1일 서울 삼성동 강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은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내외의 동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되었다.

심포지엄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인권’ 등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특별연설(대독)과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국회의원 등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심포지엄에서는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내외 동향과 북한인권 실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회의를 참관하여 북한인권 관련 논의 내용을 모니터링하였다.

### | 제3절 | 평가 및 향후 계획

북한인권 관련 사업은 주로 재외 탈북자의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었으며, 북한내 인권상황 및 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미진하였다.

2005년 위원회는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인권 및 북한내 인권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입국 탈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내실 있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2004.12.1.)



#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 인권정책 업무의 기반 강화 및 적극적 수행

### 1. 차별시정 업무 등 확대 개편

여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 기능을 위원회로 통합·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과 시행령, 직제령 및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차별시정위원회와 차별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차별시정 기능이 단일화되는 과도기에 국민의 권리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법·제도적 기반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차별시정 기구의 설치를 계기로 위원회는 차별 관련 진정사건의 조사·구제는 물론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차별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개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논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내 통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에 대한 의견표명을 비롯하여 개인의 유전자정보와 지문·홍채 등 신체정보의 이용,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 설치·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검토 및 의견표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위원회로서는 2005년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더욱 전문화하는 한편, 관련 인권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구 설치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2. 중·장기적 인권정책 방향제시와 인권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2005년 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을 정부에 권고하여 중·장기적 인권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입안 과정 및 정책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또한 차별시정기구 설치 일정에 발맞추어 차별금지법 성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위원회의 차별행위 시정업무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나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에 이어 그동안 실태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검토를 진행해 온 사형제도, 군사법제도, 비정규직, 생명윤리법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북한인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와 각종 의견수렴에 주력해 왔으나 2005년에는 국내 입국 탈북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3.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 점검

설립 초기부터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온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인권 관련 규약이나 협약 중 유보조항에 대하여 정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유보조항 철회를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에 대한 법조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난민수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난민의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주목하여 난민 관련 외국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국제난민법』 기초연구를 진행하여 전문적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관련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4. 인권정책 업무기반 강화

2005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업무지침을 마련해 업무를 표준화하고, 실태조사 기

본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과제의 선정에서부터 연구결과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차별시정 업무 수행이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함에 있어 관련 부처 협의와 정보교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4년에 구성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003년부터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발을 준비해 온, 구금시설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유형분석 및 예방지침도 그동안의 변화된 관련 법령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다.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의 문헌 번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미국 EEOC,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 유럽 인권재판소 등 주요 인권기구에서 발간한 문헌까지 번역 대상을 확대하여 최신 인권 관련 정보를 국내에 보급하고, 이 자료를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 상담 및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인권보호 기능 강화

###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의 효율성 제고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등 상담 관련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을 발간하는 한편 진정접수 및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정비하고, 업무 관련 세부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별 입법 배경, 취지, 목적, 외국 사례, 관련 판례 및 결정, 관련 법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법 집행자에게는 법 적용의 범례 및 기준을 제시하여 법 운용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이 법에 의한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면전진정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면전진정 업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위원회 출범 후 3년 동안 민원 내용을 검토하여 민원사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민원업무 처리 매뉴얼을 제작함으로써 크게 증가하고 있는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진정인 소속 구급시설별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여 진정처리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구급시설 관련 통계 산출을 용이하게 하고, 피진정기관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진정 접수 분류 기준을 더욱 정확하게 마련할 것이다.

### 2. 인권침해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위원회는 진정처리 절차의 간소화, 조사업무의 표준화, 조사관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진정사건 처리율을 높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 개발, 권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인권침해 판단지침 마련 등은 조사 및 구제의 효율화와 안정화를 위해 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므로 과제 해결을 위해 다음 사업들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인권 취약분야에 대해 직권조사를 활성화할 것이다. 인권 취약분야부터 장단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둘째, 보호시설이나 군대 등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보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위원회 권고 등에 대한 정기적 이행 점검과 분석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넷째, 합의종결에 대한 연구·분석·실행을 통해 새로운 조정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안착시킬 것이다.

다섯째, 조사 및 구제업무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인권침해 유형별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회 결정사례 및 각 판례, 결정례를 수집 분석하여 활용도를 높일 것이다.

### 3. 차별시정 기능 확대·강화

2005년은 위원회법 개정과 함께 노동부, 여성부의 차별시정 업무가 우리 위원회로 통합되어 특히 고용 차별, 성희롱 및 남녀 차별 사건의 증가가 예상되는 해다. 따라서 국가적 차별시정 업무에 대한 통합기관으로서 이에 걸맞는 역량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차별사유별 판단기준과 차별예방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예컨대 차별사유 중 사회적 신분 차별 사건의 경우 사회적 신분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란은

많은,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차별 영역 중 고용과 교육기관 등의 영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있지만 재화와 용역 영역은 그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많다.

둘째, 진정사건 처리에 집중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차별이 심각하지만 진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기획조사·직권조사 등이 미흡하였다. 향후 차별이 만연한 분야에 대한 현장조사,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획조사 과제를 발굴하고 직권으로 조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차별로 판단하여 피진정인(기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사건에 대하여 일부 피진정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고용차별 진정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민간기업의 경우 권고 수용률이 낮은 경향성을 보여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다.





##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1.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위원회는 유엔의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결의에 발맞추어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교원 연수과정에 인권 관련 내용과 인권과목을 포함시키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강화할 것이며, 2004년에 개발한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이어 중·고등학교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학급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의식 고취 연수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인권교육 연구학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전파할 예정이며, 대학에 인권강좌가 개설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협의·지원·모니터링하면서 예비법조인, 예비 교사 양성기관인 법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등에 인권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2. 공공기관 관계자 인권교육 지속적 추진 및 대상 확대

위원회는 앞으로 경찰훈련기관 및 법무연수원의 각 교육과정에 개설된 인권과목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모니터링할 것이며, ‘인권과목’이 ‘인권과정’으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도 자체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군대, 다수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 우리 사회에서 인권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3. 인권교육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정책조정을 통하여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인권교육의 개념에 대한 혼란, 인권교육 지침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시각차를 정리하여 그 개념을 정립하고 지침을 개발하는 등 인권교육 체계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 교육 시스템인 ‘사이버인권배움터’를 활용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콘텐츠를 계속 확대·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 4.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위원회는 2005년에도 인권감수성 향상에 효과적인 매체인 영화·만화·사진 등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차별 예방과 인권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2004년에 제작한 인권영화 <다섯 개의 시선>과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는 극장 개봉 및 해외영화제 출품, 비디오 및 DVD 출시, 모바일 서비스, 인터넷 영화관 상영, TV 방영 등을 추진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선학교 등 각급 교육기관에서 상영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차별 예방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 인권문화 콘텐츠를 사이버상에서 체계적으로 보급하는 사이버 인권문화마당을 준비하고 있다.

인권 현장, 인권 현안분석, 인권 정보, 지구촌 인권소식 등을 담은 정기 간행물인 월간 <인권>의 내용과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웹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및 음성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2004년 개발한 차별예방 TV 캠페인(‘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세상이 보입니다’)

다')을 2005년에 연속 방영함으로써 반(反)차별 메시지 전달 효과를 배가할 것이다. 또한 TV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정책 홍보용으로 배정된 전국 120여 개 전광판을 활용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사무소 설치, 위원회법 개정안 적용, 차별시정 업무 시작 등 변화 시기에 맞춰 위원회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 언론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나이, 학력 차별 등 주제별 홍보 계획을 수립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인권 현안이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협력관계 활성화

### 1. 인권단체와 공동사업 내실화

2003년 처음 추진된 ‘민간경상보조금사업’은 그동안 관련 규정 개정과 사업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정착되었다. 또한 인권의식의 저변 확대와 생활 속의 인권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 ‘시민실천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도 인권단체의 실질적 공동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두 사업은 사업 성격이나 추진 목적 등의 차이로 그동안 분리 추진되어 왔으나, 인권옹호와 신장이라는 궁극적인 지향이 같고 사업내용, 사업수행자, 추진방식 등 유사점이 많아 이의 통합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권교육 강좌는 실시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내용을 다양화하며, 사례 발표 및 토론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2. 인권단체와 상시 협력체제 구축

인권단체와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인권단체와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주요 인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단체들과 정기적 부문별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자유권뿐 아니라 사회권 분야 등에서 더욱 다양한 인권단체와 협력관계를 맺을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사업 중 입안 단계에서부터 인권단체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한 우선 사업을 시범 선정하여, 입안·집행·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 3.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국제협력 추진

위원회는 지금까지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물적 토대를 구축해 왔다. 앞으로 한 차원 높은 국제협력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제인권 현안에 대한 체계적 자료수집과 분석활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료 분석집을 발간하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외국의 사례를 수집·분석하며,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것이다. 또한, 국제인권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계 곳곳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연대서한을 발송하는 등 외국 인권기구 및 인권NGO 등과 상시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은 국제사회에서 위원회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국제협력 사업의 다양화 및 내실화

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유엔 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 조약감시기구 및 주제별 실무그룹 회의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앞으로는 발전권, 환경권, 정보와 인권, 아동 및 장애인의 권리 등 주제별 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자료수집과 분석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 인권 현안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 등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 인권보호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 부 록



## 1. 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04. 12. 31. 현재)

| 구 분 /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p>위원장 최영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li> <li>·대전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li> <li>·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li> <li>·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li> <li>·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li> <li>·참여연대 공동대표</li> </ul>   |               |
|  <p>상임위원 최영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녀차별개선실무위원회 위원</li> <li>·경찰청 여성실 여성대책자문위원</li> <li>·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위원</li> <li>·심의평가위원회 위원</li> <li>·한국인권재단 이사</li> <li>·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li> <li>·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li> </ul> | 제1소위원회<br>위원장 |
|  <p>상임위원 김호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신문 편집국 국장, 논설주간</li> <li>·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li> <li>·문화일보 구조조정담당 상무이사 겸 편집인</li> <li>·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li> </ul>                                                      | 제2소위원회<br>위원장 |
|  <p>상임위원 정강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장</li> <li>·남녀차별개선실무위원회 위원</li> <li>·여성특별위원회 비상임위원</li> <li>·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li> <li>·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li> <li>·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li> </ul>               | 제3소위원회<br>위원장 |

| 구 분 /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br>비상임위원 김덕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2회 사법시험 합격</li> <li>·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li> <li>·법무법인 호민 변호사</li> <li>·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li> <li>·국무총리자문기구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li> <li>·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li> <li>·법무부 및 법제처 자체심사평가위원회 위원</li> </ul> |              |
| <br>비상임위원 이홍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8회 사법시험 합격</li> <li>·부산지방변호사회 재무</li> <li>·부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li> <li>·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li> <li>·법무법인 유일 대표변호사</li> <li>·인권정책연구회 이사장</li> </ul>                                               | 제3소위원회<br>위원 |
| <br>비상임위원 김만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li> <li>·미국남가주대 정치학 방문교수</li> <li>·민주개혁국민연합 정책위원장</li> <li>·참여연대 실행위원 및 자문위원</li> <li>·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li> <li>·가톨릭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li> </ul>                                      | 제3소위원회<br>위원 |
| <br>비상임위원 나천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9회 사법시험 합격</li> <li>·사법연수원 교수</li> <li>·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li> <li>·영산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li> <li>·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li> <li>·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li> </ul>                                             | 제2소위원회<br>위원 |

| 구 분 /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br>비상임위원 이해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li> <li>·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공동의장</li> <li>·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이사장</li> <li>·겨레사람북녘동포돕기운동 공동의장</li> <li>·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의장</li> <li>·제1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능운영위원</li> </ul> | 제2소위원회<br>위원 |
| <br>비상임위원 정인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도서관장</li> <li>·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부교수</li> <li>·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li> <li>·대학국제법학회 부회장</li> </ul>                                                    | 제1소위원회<br>위원 |
| <br>비상임위원 최금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li> <li>·법무부 남북특수법령위원회 위원</li> <li>·국세청 국제심사위원회 위원</li> <li>·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li> <li>·건설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li> <li>·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원장</li> </ul> | 제1소위원회<br>위원 |
| <br>사무총장 곽노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li> <li>·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li> <li>·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li> <li>·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li> <li>·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li> </ul>                                |              |

## □ 퇴직 위원 현황(2004년)

| 구 분 /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div>  </div> <div>위원장 김창국</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li> <li>·전주·광주지검 부장검사</li> <li>·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li> <li>·제8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li> <li>·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li> <li>·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li> <li>·한국방송공사 이사</li> <li>·제2기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li> <li>·참여연대 공동대표</li> </ul> |     |
| <div>  </div> <div>상임위원 박경서</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대 사회학과 외래교수</li> <li>·경실련 통일협회 이사</li> <li>·재단법인 크리스천아카데미 부원장</li> <li>·세계교회협의회 아세아 정책위원장</li> <li>·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초빙교수</li> <li>·동북아평화연구소장</li> <li>·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li> </ul>                                            |     |
| <div>  </div> <div>상임위원 유 현</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0회 사법시험 합격</li> <li>·대법원 재판연구관</li> <li>·사법연수원 교수</li> <li>·광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li> <li>·변호사</li> </ul>                                                                                                                      |     |
| <div>  </div> <div>상임위원 유시춘</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li> <li>·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li> <li>·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li> <li>·민예총 이사</li> <li>·공정선거 민주개혁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li> <li>·국민정치연구회 정책실장</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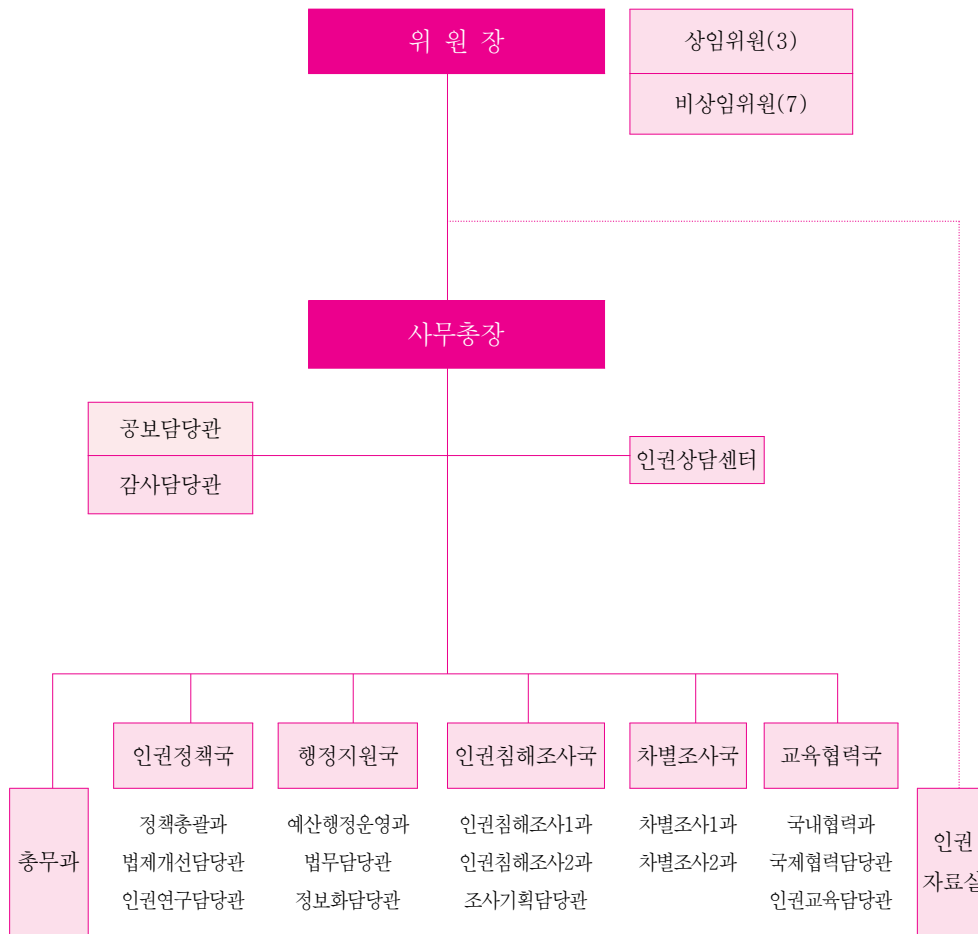
| 구 분 /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div></div> 비상임위원 조미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li> <li>·수원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li> <li>·한국가족법학회 회장</li> <li>·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li> <li>·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li> <li>·수원법조윤리협의회 위원</li> <li>·이주대 법학부 교수 · 법학부 부장</li> </ul> |     |
| <div></div> 비상임위원 김오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6회 사법시험 합격</li> <li>·대법원 재판연구관</li> <li>·사법연수원 교수</li> <li>·서울민 · 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li> <li>·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li> <li>·공증인가 한남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li> </ul>                                    |     |
| <div></div> 비상임위원 신동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 편집위원</li> <li>·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편집위원</li> <li>·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li> <li>·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장 겸 교무담당부학장</li> <li>·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li> </ul>                               |     |

## □ 신임위원

(2005. 4. 현재)

| 구 분 /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div> <div></div> <div>위원장 조영환</div>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li> <li>·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li> <li>·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li> <li>·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li> <li>·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li> <li>·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본부장</li> <li>·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판사</li> <li>·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li> </ul> | 2005. 4. 4<br>임명   |
| <div> <div></div> <div>비상임위원 신혜수</div>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위원</li> <li>·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객원교수</li> <li>·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li> </ul>                                                                                                                                              | 2005. 3. 15.<br>임명 |

- 위원회 : 11명(위원장 1,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7)
- 사무처 : 5국 18과 1소속기관
- 정 원 : 180명



### 3. 예산

(백만원)

| 구 분     | 2003년  | 2004년  | 증 감 |     | 비 고 |
|---------|--------|--------|-----|-----|-----|
|         |        |        |     | %   |     |
| 총 계     | 18,919 | 19,667 | 748 | 3.9 |     |
| 인건비     | 7,199  | 7,670  | 471 | 6.5 |     |
| 사업비     | 11,720 | 11,997 | 277 | 2.4 |     |
| - 기본운영비 | 6,355  | 6,591  | 236 | 3.7 |     |
| - 주요사업비 | 5,365  | 5,406  | 41  | 0.8 |     |

#### (1) 인건비 규모 : 77억원

- 정원(180), 파견(8), 전문계약직(8), 청원경찰(1), 공익요원(13) 인건비
- 공무원 처우개선 4.8% 반영(전 부처 공통)

#### (2) 기본사업비 규모 : 66억원

-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 34억원
-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 경비 : 32억원

#### (3) 주요 사업비 규모 : 54억원

-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4개 사업 20억원
-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접수 및 조사·구제 : 3개 사업 3억원
-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국내외 협조체제 강화 :  
10개 사업, 31억원 계상

#### 4. 위원회 활동일지(2004. 1.~12.)

2004년 1월

- 1월 2일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식 개최(10:30~11:00, 배움터)
  - 주한 독일대사 미카엘 가이어(Mr. Michael Geier) 등 3인 방문, 한국의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향후 독일 인권기구와 협력방안 논의(김창국 위원장)
- 1월 5일
  - ‘2004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참석
- 1월 7일
  - ‘국내거주 화교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월 9일
  -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기본계획 보고회의 개최
- 1월 12일
  - 제1차 전원위원회 개최
  - 일반감호제도 폐지 및 치료감호제도의 대체입법 권고, 한신대 총장에게 조교수 재임용 심사 실시 권고 등 6건 의결
  - 제1차 제1소위원회 개최
  - 법무부 징벌규칙 개정안 의견조회에 대한 검토보고서 논의
- 1월 13일
  - 동티모르 외무장관 라모스 오르타(Dr. Hose Ramos Horta, 노벨평화상 수상자) 방문, 인권 관련 한·동티모르 교류협력 증진 및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하여 의견교환(김창국 위원장)
  - ‘사회보호법 폐지 의견표명’ 기자 브리핑
- 1월 15일
  - 소년소년가장 지원단체 ‘함께 사는 사람들’ 방문(김창국 위원장 등)
- 1월 16일
  - 외국인노동자 지원 및 보호시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방문(김창국 위원장, 박경서 상임위원 등)
  - 제1차 제2소위원회 개최
  - 부산구치소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권고, 수용자 취침시 조도를 낮추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 등 총 202건 의결
  -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2004년 세계사회포럼(WSF) 참가
- 1월 17일
  - 제1차 상임위원회 개최, 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관련 시설방문조사 계획(안) 등 3건 의결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검토의견 국회 송부
- 1월 19일
  - ‘영등포쪽방상담소’ 방문(김창국 위원장, 유시춘 상임위원 등)

|        |                                                                                                                |
|--------|----------------------------------------------------------------------------------------------------------------|
|        | · 제1차 제3소위원회 개최, 미결수용자에게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 허가할 것 권고 등 41건 의결                                                      |
| 1월 23일 | · 인권영화 <여섯 개의 시선> 제27회 예테보리영화제(2004.1.23.~2.2.) 초청                                                             |
| 1월 25일 | · 월간 <인권> 2월호(통권 6호) 발간                                                                                        |
| 1월 26일 | · 제2차 전원위원회 개최<br>200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기업의 채용상 차별관행 조사 결과 등 7건(보고 1, 의결 3, 논의 3) 처리                               |
|        | · 제2차 제1소위원회 개최<br>『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중 개정령안과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수정 권고, 『아동복지법』 중 개정법률안 폐기할 것 권고 등 3건 처리 |
|        | · 인권사진집 <눈·밖에·나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월의 읽을 만한 책’ 선정                                                                  |
|        | · 『국가인권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 제정(훈령 제27호)                                                                                |
|        | · 제2차 제2소위원회 개최<br>제천경찰서 경찰관의 피의자 폭행에 대해 검찰총장에 수사의뢰 등 총 353건 의결                                                |
|        | ·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시민 실천프로그램 개발사업 사업공모 공고(홈페이지, <시민의신문> 광고 : 1.26.~ 2.10.)                                           |
|        |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심사 가능성에 관한 북아시아지역 판사, 변호사 워크숍 참가(교육협력국장, 1.26.~28.)                                        |
| 1월 29일 | · 제1차 인권자료운영자문단 회의 개최                                                                                          |
| 1월 31일 | · 인권관례소식 제21호 발간· 배포(120부)                                                                                     |

## 2004년 2월

|       |                                                                          |
|-------|--------------------------------------------------------------------------|
| 2월 2일 | · 제2차 제3소위원회 개최<br>건강검진결과 발급대장 열람 관련,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할 것 권고 등 42건 의결 |
| 2월 4일 | ·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 제정(훈령 제28호)                                             |
| 2월 5일 | ·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br>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운영 계획(안) 보고(주제 : 인간배아복제와       |

|        |                                                                                                                                                                                 |
|--------|---------------------------------------------------------------------------------------------------------------------------------------------------------------------------------|
|        | 생명윤리) 등 2건 처리                                                                                                                                                                   |
| 2월 6일  |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특수자료취급규정』 제정(훈령 제29호)                                                                                                                                            |
| 2월 9일  | · 제3차 전원위원회 개최<br>진정인 등의 소재불명 등 사유 발생시 사건처리 방안 등 9건(보고 3, 의결 2, 논의 4) 처리                                                                                                        |
|        | · 제3차 상임위원회 개최<br>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추진을 위한 인력 구성(안) 논의 · 의결                                                                                                                           |
|        | · 제3차 제1소위원회 개최                                                                                                                                                                 |
|        | · 제3차 제2소위원회 개최, 총 394건 의결                                                                                                                                                      |
| 2월 10일 | ·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경상대 직장협의회 관련 1건                                                                                                                                               |
|        | · 제4차 상임위원회 개최<br>부안군청 주민투표 방해에 대한 긴급 구제 조치의 건 의결                                                                                                                               |
| 2월 11일 | · ‘2004년 업무설명회’ 개최, 2003년 주요 업무실적 및 2004년 업무 추진계획 설명                                                                                                                            |
|        | · 제4차 제2소위원회 개최, 총 327건 처리                                                                                                                                                      |
| 2월 13일 | · 2004.2.13.~2.21.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되는 APF 제8차 연례회의 참석(위원장, 사무총장, 교육협력국장), 위원회의 2004년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개최 준비 및 제9차 APF 연례회의 서울 개최와 관련 유엔 · APF 등과 회의<br>안전, 일정 및 기술적 ·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협의 |
|        | · 제5차 제2소위원회 개최<br>구제조치 다양화 방안 검토 보고(원안접수) 등 총 80건 의결                                                                                                                           |
| 2월 16일 | · 제4차 제1소위원회 개최<br>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인 정치관계법 관련 권고,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마련 권고                                                                                            |
|        | · 제3차 제3소위원회 개최<br>각 대학 특별전형에서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 응시자격 부여하는 관행 시정 권고 등 33건 의결                                                                                                          |
|        | · 남양주 ‘이주노동여성센터’(2.16.), ‘막달레나의 집’(2.17.),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2.17.), 서울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2.17.), ‘한소리회’(2.19.) 방문                                                                      |
|        | · 공보 제2권제1호 발간 · 배포(검 · 경, 시민단체 등 1300부)                                                                                                                                        |
|        | ·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

- 2월 20일 · 북한인권 관련 독일대사관 서기관(Joachim Mertele) 방문 · 면담(법제개선담당관실), 북한인권 및 탈북자 문제에 대해 논의
- 2003년 세입 · 세출 결산보고서 제출(재정경제부)
- 2월 23일 · 제4차 전원위원회 개최
-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안) 등 6건(보고 1, 의결 5) 처리
- 제5차 제1소위원회 개최
- NAP추진기획단 발족
- 2월 25일 · 인권 만화 <십시일反> 6쇄 발행, 총 20,000부 발행
- 월간 <인권> 3월호(통권 7호) 발간
- 2월 27일 · 제6차 제2소위원회 개최
- 육군교도소 군행형업무처리지침 개정 권고 등 총 136건 의결
- 2004년 인권논문 공모사업(~10.7.)과 우수논문 발굴사업(~7.7.) 실시
- 2월 28일 · <인권판례소식> 제22호 발간 · 배포(120부)

## 2004년 3월

- 3월 2일 ·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2차 아시아 · 태평양지역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지역 협력 워크숍 참가(인권정책국장, 인권연구담당관, 3.2~4)
- ‘어린이 인권의식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전국 5개 초등학교를 2년간 인권교육 연구시범학교로 지정
- 3월 3일 · 인권 영화 ‘그녀의 무게’ <여섯 개의 시선> 여성노동영화제 초청
- 3월 4일 · 사무총장 및 인권정책국장, 각 부처 차관회의 참석,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논의(중앙청사 국무조정실)
- 3월 5일 · 법무부에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 송부
- 3월 7일 · KBS 1라디오 <생방송 일요매거진>에서 매주 일요일 ‘주간인권보고서’ 기획홍보 시작
- 3월 8일 · 제5차 전원위원회 개최
- 장애회의 교육시설 이용차별 조정위원회 회부 등 9건(보고 2, 의결 4, 논의 3)

|        |                                                                                  |
|--------|----------------------------------------------------------------------------------|
|        | 처리                                                                               |
|        | · 제6차 제1소위원회 개최                                                                  |
|        | · MBC TV <아주 특별한 아침> ‘여성주간’ 특집 기획(3.8.~12.5회 보도)                                 |
|        | · 제4차 제3소위원회 개최                                                                  |
|        | 장애에 의한 재화차별(03진차121) 기각 등 43건 의결                                                 |
| 3월 11일 | ·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
|        | · 인권 동화 <장한친구 회완이> (글·윤기현/그림·양상용), 인권교육 입문서 <다르게 함께 사는 세상> (글·박승희 이화여대 교수) 발간 배포 |
| 3월 15일 | · 제5차 제3소위원회 개최                                                                  |
| 3월 16일 |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데이빗(David Hwak) 방문                                                  |
| 3월 17일 | · 제7차 제1소위원회 개최                                                                  |
|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2 제1항 개정 권고 등 총 2건 처리                                            |
|        |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8317호)                        |
|        | · 이라크 인권대표 겸 바그다드대 교수 살만(Reffat S. Salman) 등 3명 방문 (김창국 위원장 접견)                  |
| 3월 18일 |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배움터)                                     |
| 3월 22일 | · 제6차 전원위원회 개최                                                                   |
|        | 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기간제 교원 차별행위 중지 등 총 5건(의결 3, 논의 2) 처리                                |
|        | · <중앙일보> ‘빈곤층 아동인권’ 공동기획(3.22.~31. 5회 보도)                                        |
|        | ·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참석(박경서 상임위원, 송지영, 3.22~28.)                                       |
|        | ·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
|        | ·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정(규칙 제24호)                                                 |
| 3월 26일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추진기획단 발족식 개최, 위원장·상임위원·사무총장·외부위원·추진기획단원 참석                           |
| 3월 29일 | · 제8차 제1소위원회 개최                                                                  |
|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평가[부표] 규정 개정 권고 등                                                     |
|        | · 탈북자교육원 ‘하나원’ 방문(김창국 위원장, 박경서 상임위원, 사무총장, 외부위원, NAP추진기획단 등)                     |
|        | · 제6차 제3소위원회 개최                                                                  |

- 개인택시면허발급 규정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개정 권고(03진기112) 등 67건 의결
- 3월 30일 · <주간동아> 격주간 연속기획 ‘차별을 넘어’ 보도 시작
- 3월 31일 · 제7차 제2소위원회 개최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하여 서면경고 권고 등 총 386건 의결

## 2004년 4월

- 4월 1일 · 월간 <인권> 4월호(통권 8호) 발간
- 4월 2일 · 제8차 제2소위원회 개최  
교도관이 서신을 임의로 개봉하는 검열행위를 전면 금지할 것 등 총 316건 의결
- 4월 3일 ·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참가, 제7차 세계국가인권  
기구대회 및 제9차 APF 연례회의 서울 개최 확정(김창국 위원장, 안경환 서울  
대 법대 학장, 조미경·신동운 위원, 사무총장, 국제협력담당관, 최영란·박  
재만, 4. 3.~25.)
- 4월 6일 · 유엔인권위원회 ‘성적지향과 인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 외교통상부  
제출
- 4월 7일 · 조정위원 8인(곽배희 등) 위촉(2004.4.7.~2005.4.6.)
- 4월 8일 · 제1차 차별행위 조정위원회 개최, 장애인 대입 수능시험장 편의시설 관련  
· ‘군대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 4월 9일 · 제9차 제2소위원회 개최, 총 139건 의결
- 4월 10일 · 4. 13.~16.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 참석(김창국  
위원장, 사무총장)
- 4월 12일 · 제7차 전원위원회 개최  
진정서 용지 및 봉함용 봉투 비치 권고 등 3건(보고 1, 의결 1, 논의 1) 처리  
· 제9차 제1소위원회 개최  
국가기관에 의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인권침해 소지 여부 검토 보고  
(재상정)  
· 제7차 제3소위원회 개최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등 46건 의결

|        |                                                                                                  |
|--------|--------------------------------------------------------------------------------------------------|
| 4월 15일 | · 공보 제2권제2호 발간· 배포(검·경, 시민단체 등 1300부)                                                            |
| 4월 16일 | · 제10차 제2소위원회 개최<br>긴급체포 요건 결여한 위법 체포행위를 한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 수강 권고 등 총 132건 의결                         |
| 4월 17일 | · 제10차 제1소위원회 개최<br>구금시설 독거실의 외벽 창문에 자연채광 및 통풍이 되도록 할 것 등 총 93건 의결                               |
| 4월 19일 | · 제11차 제1소위원회 개최<br>『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등 2건 처리                                       |
| 4월 23일 | · 제2차 차별행위 조정위원회 개최, 장애인 대입 수능시험장 편의시설 관련건                                                       |
| 4월 25일 | · 춘계 체육대회 행사(한강시민공원 광나루지구)                                                                       |
| 4월 25일 | · 인권영화 <여섯 개의 시선> 제17회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초청(2004.4.25.~5.4.)                                            |
| 4월 26일 | · 제8차 전원위원회 개최<br>『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안)』 의결 등 4건(보고 1, 의결 1, 논의 2) 처리                               |
|        | · 제12차 제1소위원회 개최<br>납북자 가족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등                                                        |
| 4월 27일 | · ‘담안선교회’ 방문(김창국 위원장)                                                                            |
| 4월 28일 | · 제5차 상임위원회 개최<br>학교 인권교육 교재개발 기본계획(안), 시민적·정치적 권리 중 언론·출판의 자유분야 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안) 원안 의결 |
|        | · 북한 용천역 참사 재해성금 전달                                                                              |
|        | ·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 개최                                                                           |
| 4월 29일 | · KNCC 인권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석(위원장 축사)                                                              |
|        | · 김창국 위원장, EBS <일요특강>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 한국사회에서의 차별’ 강의 녹화(진행 정현경)                                   |
|        | · 제13차 제1소위원회 개최, 총 57건 의결                                                                       |
| 4월 30일 | · <인권판례소식> 제24호 발간· 배포(120부)                                                                     |
|        | · 제11차 제2소위원회 개최<br>인천남동서 미란다 원칙 미고지건과 관련 인권교육 실시 권고 등 총 59건 의결                                  |

## 2004년 5월

- 5월 1일 · 월간 <인권> 5월호(통권 9호) 발간
- 5월 3일 · ‘We Start 운동본부 발족식 및 빈곤 아동실태 사진전’ 참석(김창국 위원장)
- 5월 3일 · EBS <미래의 조건> ‘어린이날 특집’ 방영 : 2004 아동인권보고서  
· 제8차 제3소위원회 개최  
· 서울지하철공사의 계약직 경력인정 차별 등 49건 의결
- 5월 4일 · 주한 뉴질랜드 대사 대비드 테일러(David Taylor) 등 3인 방문, 위원장 접견
- 5월 6일 · 대구지역 순회 인권상담 및 홍보 행사(5.6.~7.), 언론사 인터뷰 및 관련 기관 간담회, 영화제 개최
- 5월 10일 · 제9차 전원위원회 개최  
· 서울YMCA 총회 여성 배제에 대한 시정 권고(서울YMCA이사장) 등 8건(보고 1, 의결 6, 논의 1) 처리  
· 제12차 제2소위원회 개최  
· 구속전 피의자심문신청권 침해 관련 인권교육 실시 등 총 80건 의결  
· 제3차 조정위원회 개최  
· 장애인 대입 수능시험장 편의시설 관련건 조정 성립
- 5월 11일 · 제2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김창국 위원장, 방송대학 TV ‘국민의 권리기구, 한국의 위원회’ 출연  
· ‘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 5월 12일 · 제14차 제1소위원회 개최, 총 73건 의결  
· 제15차 제1소위원회 개최  
· 『소년원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해 의견표명 등 총 2건 처리
- 5월 13일 · 청주지역 순회 인권상담 및 홍보 행사(5.13~14.), 기자 인터뷰 및 관련 기관 간담회, 영화제 등 개최
- 5월 15일 ·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참석(박경서 상임위원, 5.15.~19.)
- 5월 17일 · 제9차 제3소위원회 개최, 49건 의결
- 5월 18일 · 광주 국립 5·18묘지에서 거행된 제2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참석(김창국 위원장)
- 5월 19일 · 제13차 제2소위원회 개최, 100건 의결

-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9. 14.~17.) 의제,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로 확정
- 5월 20일 · 춘천지역 순회 인권상담 및 홍보 행사(5. 20.~21.), 기자 인터뷰 및 관련 기관 간담회, 영화제 등 개최
- 무의탁 노인, 장애인 및 아동보호시설인 ‘나눔의 동산’ 방문 (김창국 위원장, 사무총장 등)
-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 공청회 개최
- 5월 21일 · 웹진 <인권> 오픈([www.humanrights.go.kr/hrmonthly](http://www.humanrights.go.kr/hrmonthly))
- 5월 24일 · 제10차 전원위원회 개최
-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 개선 권고 등 12건(보고 8, 의결 4) 처리
- 제14차 제2소위원회 개최
-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징벌집행, 과도한 계구사용 및 과도한 집필 제한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등 총 39건 의결
- 5월 27일 · 제16차 제1소위원회 개최
-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공판과정에서 2차 피해자가 되는 점 개선 권고 등 3건(논의 2, 의결 1) 처리
- 5월 31일 · <인권판례소식> 제25호 발간·배포(120부)
- 제10차 제3소위원회 개최
- 부당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 39건 의결
-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6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참가(박경서 상임위원, 5.31.~6.3.)

## 2004년 6월

- 6월 1일 · 6월 월례조회 개최, 강금실 법무부 장관 직원특강
- 월간 <인권> 6월호(통권 10호) 발간
- 6월 2일 ·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기자 브리핑 실시 (KBS 외 약 12명 참석)
- 6월 4일 · 제17차 제1소위원회 개최
- 구금시설내 적절한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의료체계 개선’ 권고

|        |                                                                                                                                           |
|--------|-------------------------------------------------------------------------------------------------------------------------------------------|
|        | 등 총 422건 의결                                                                                                                               |
| 6월 8일  | · 김창국 위원장, 한양대 법과대 및 대학원에 인권법 과목 개설 등에 관해 김종량 총장 면담                                                                                       |
| 6월 9일  | · 제18차 제1소위원회 개최<br>· 제15차 제2소위원회 개최<br>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진술조서에 대해 열람·등사를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검찰보존사무규칙』 및 『사건기록열람·등사에관한업무처리지침』 개정 권고 등 총 108건 의결   |
| 6월 10일 | · 2004년 5월 28일자로 1만 번째 진정을 접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br>· 제19차 제1소위원회 개최, 총 52건 의결                                                                |
| 6월 11일 | · 인권 영화 <여섯 개의 시선> 제51회 시드니영화제(6.11.~25.) 초청                                                                                              |
| 6월 14일 | · 제11차 전원위원회 개최<br>불심검문시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등 13건(보고 9, 의결 4) 처리<br>· 제16차 제2소위원회 개최, 총 100건 의결                            |
| 6월 15일 | · 진정 1만 건 돌파 관련하여 KBS 라디오 <내일은 푸른하늘> 인터뷰 실시(서수정)<br>·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홈페이지 개통(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br>· 공보 제2권제3호 발간·배포(검·경, 시민단체 등 1300부) |
| 6월 17일 | · 독일 쉘츠 변호사(정정희·정준·조건영 교수 동반) 방문, 박경서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과 송두율 교수 사건 관련 논의 등                                                                      |
| 6월 18일 | · 인권상황 실태조사 1차 사업 공고 4개 과제 입찰공고                                                                                                           |
| 6월 21일 |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 설치 관련 부산지역 인권시민단체 대표 방문<br>· 제11차 제3소위원회 개최<br>『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외모흉터 남녀 상이등급 부여 규정 개정 권고(04진차130) 등 130건 의결      |
| 6월 23일 | · 『국가인권위원회법청규정』 제정(훈령 제32호)<br>· 제17차 제2소위원회 개최, 총 82건 의결                                                                                 |
| 6월 25일 | · 진정 1만 건 돌파 관련하여 KBS 라디오 <세상의 아침> 인터뷰 실시 (김형완 인권상담센터소장)                                                                                  |
| 6월 28일 | · 제12차 전원위원회 개최<br>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를                                                                            |

- 개정할 것 권고 등 15건(보고 6, 의결 7, 논의 2) 처리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 지방사무소 설치 관련 광주지역 인권시민단체 대표 방문
  - 무의탁 장애인 자활·보호시설(조건부 미신고)인 ‘지계의 집’ 방문
  - ‘재외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공청회 개최
  - <인권관례소식> 제26호 발간·배포(120부)

## 2004년 7월

- 7월 1일
  - 김창국 위원장,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이 공동 주최한 ‘하월곡동 한달나기’ 1일 릴레이 체험단 참여
  - 월간 <인권> 7월호(통권 11호) 발간
- 7월 5일
  - 제20차 제1소위원회 개최
  - 『공직후보자등의인물정보수집및관리에관한규정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 7월 7일
  - 2004년 우수논문 발굴사업과 관련 우수논문 23편 접수
- 7월 8일
  - 제24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 7월 12일
  - 제13차 전원위원회 개최
  - 순직·전사 변경처리 미통지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등 9건(보고 4, 의결 2, 논의3) 처리
  - 인권 만화 <십시일反> SICAF 코믹어워드 우수기획상 최종후보작 노미네이트
  - 제18차 제2소위원회 개최, 총 85건 의결
  - 제12차 제3소위원회 개최
  - 장애를 이유로 한 기타 차별 등 108건 의결
- 7월 14일
  - 제21차 제1소위원회 개최
  - 전국공공도서관의 무인좌석발급기 주민번호 입력 관련 등 총 1,017건 의결
- 7월 22일
  - 제13차 제3소위원회 개최
  - 교원임용 전 경력 인정 차별 등 38건
- 7월 23일
  - 최영애 상임위원 임명(국회 선출)
- 7월 24일
  - KBS <한국사회를 말한다> ‘국가보안법’ 특집 방영
- 7월 26일
  - 제14차 전원위원회 개최
  - 해외파견교사 직급별 나이제한 차별 건 권고 등 6건(보고 4, 의결 1, 논의 1)

- 처리
- 제22차 제1소위원회 개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개정 권고 등 2건 처리
- 7월 31일
- <인권판례소식> 제27호 발간 · 배포(120부)

## 2004년 8월

- 8월 2일
- KBS 2TV <생방송 세상의 아침> ‘한국사회의 차별’ 연속기획 방영 : 성, 사회적 신분, 외모, 장애, 혼인 여부(8. 2.~5.)
- 8월 3일
- 김창국 위원장, 경찰청 대강당에서 400여 명의 경찰이 참석한 가운데 ‘자기성찰로 만나는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 특강
  - 제14차 제3소위원회 개최
  - 헌혈문진시 성적 지향에 의한 평등권 침해 관련 헌혈문진표 개선 권고 등 32건 의결
- 8월 4일
- 제6차 상임위원회 개최
  - 인권교육 실천사례 및 문예작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등 4건 접수 및 의결
- 8월 5일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심의위원 위촉(윤기원 · 이은우 변호사)
- 8월 9일
- 제15차 전원위원회 개최
  -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기타 차별(재상정) 등 6건(보고 4, 의결 2) 처리
  - 제19차 제2소위원회 개최
  -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권고 등 총 67건 의결
- 8월 10일
- 제7차 세계인권기구대회 자문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 제3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제안창구’ 개설
- 8월 16일
- 제23차 제1소위원회
  - 혼인신고를 위해 출국한 중국동포 배우자에 대한 입국금지해제 및 사증발급 권고 등 총 61건 의결
  - 제24차 제1소위원회 개최
  - 군사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검토

- 공보 제2권제4호 발간 · 배포(검 · 경, 시민단체 등 1300부)
- 제15차 제3소위원회 개최
- 의료와 관련한 인권침해 등 32건 의결
- 8월 23일 · 제16차 전원위원회 개최
-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등 5건(보고 2, 의결 2, 논의 1) 처리
- 제25차 제1소위원회 개최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표명
- 제20차 제2소위원회 개최
- 검찰총장에게 ‘피의자 주거 진술서’ 양식에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명시할 것 등 총 61건 의결
- 8월 24일 · 김창국 위원장, 제249회 임시국회 법사위 결산심사 참석
-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관련 기자 브리핑
- 8월 31일 · 노인 보호요양시설인 ‘에바다하우스’ 방문(김창국 위원장, 최영애 상임위원)
- <인권판례소식> 제28호 발간 · 배포(120부)

## 2004년 9월

- 9월 1일 · 월간 <인권> 9월호(통권 13호) 발간
- 영국의 교정학 교수인 앤드류 코일 교수 등 4인 방문
- 9월 2일 · ‘강원지역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강좌’ 실시(2일간, 44개 단체 55명 참석)
- 9월 직원월례조회, 이돈명 변호사 특강
- 9월 6일 · 제17차 전원위원회 개최
- 개인택시면허 발급시 타지역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권고 등 총 7건 처리
- 제7차 상임위원회 개최
- 북한인권 실태조사 계획(안) 의결 등 2건 처리
- 제26차 제1소위원회 개최, 총 76건 처리
- 제27차 제1소위원회 개최
-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 제11조 제1항 개정 권고
- 제16차 제3소위원회 개최

|        |                                                                                                                                                                                                                                                                                                                                                                                                                                                                                                         |
|--------|---------------------------------------------------------------------------------------------------------------------------------------------------------------------------------------------------------------------------------------------------------------------------------------------------------------------------------------------------------------------------------------------------------------------------------------------------------------------------------------------------------|
|        | 『교원인사관리규정』 개정 권고 등 106건 처리                                                                                                                                                                                                                                                                                                                                                                                                                                                                              |
| 9월 7일  | ·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총점검 프리젠테이션 개최                                                                                                                                                                                                                                                                                                                                                                                                                                                                              |
| 9월 12일 | · 김창국 위원장, 모튼 키에룸(Mr. Morten Kjaerum)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 접견, 국가보안법 폐지와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관련 논의<br>· Pre-ICNI NGO 포럼 개막식 환영사(김창국 위원장)                                                                                                                                                                                                                                                                                                                                                                       |
| 9월 13일 | · 제21차 제2소위원회 개최, 총 107건 처리<br>·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제9차 연례회의 개최(롯데호텔 사파이어룸), APF 의장으로 위원장(김창국) 피선                                                                                                                                                                                                                                                                                                                                                                                         |
| 9월 14일 | · 롯데호텔 피코크룸(36층)에서 루이스 아버(Ms. Louise Arbour) 인권고등판무관, Mr. Orest Nowosad, Ms. Degryse-Bleateau, Mr. Plyn, Ms. Wan-hea Lee 등 관계자 면담 및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오찬사(김창국 위원장, 인권위원, 각 국장 등)<br>· 김창국 위원장, 롯데호텔 제이드룸에서 노무현 대통령, 루이스 아버(Ms. Louise Arbour) 인권고등판무관, 모튼 키에룸(Mr. Morten Kjaerum) ICC의장 면담<br>·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라는 주제로 제7차 세계인권기구대회 개최(9.14.~17.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br>·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개막식에서 김창국 위원장 개회사, 노무현 대통령 축하, 루이스 아버(Ms. Louise Arbour) 인권고등판무관 및 Mr. Morten Kjaerum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낭독 |
| 9월 15일 | · 김창국 위원장, 카자흐스탄 아브딜딘(Mr. Abdildin)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볼랏 바이카다모브(Mr. Bolat Baikadamov) 옴부즈만 대표, 아그노브 아볼(Mr. Argynov Arbol) 옴부즈만 Chief Expert 면담<br>· 박경서 상임위원, Louise Arbour 인권고등판무관을 위한 외교통상부 장관 주최 만찬 참석, 북한·여성 인권 등 인권 전반에 관하여 논의(프라자호텔)<br>·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분과별 회의 개최                                                                                                                                                                                                                                     |
| 9월 16일 | ·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분과별 토론결과 보고 및 전체회의                                                                                                                                                                                                                                                                                                                                                                                                                                                                     |
| 9월 17일 | · 김창국 위원장(박경서 상임위원), 롯데호텔 제이드룸(2층)에서 방한 중인 비티 문타폰(Mr. Vitit Muntarbhorn/태국)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 관련 면담<br>·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전체회의 개최, 서울선언문 채택                                                                                                                                                                                                                                                                                                                                                              |
| 9월 20일 | · 김창국 위원장, 출국 인사차 내방한 몽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접견                                                                                                                                                                                                                                                                                                                                                                                                                                                                  |

- 제18차 전원위원회 개최  
군 의문사 관련 정책 권고 보고 건 등 3건 처리
- 제17차 제3소위원회 개최  
개인택시면허 발급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선순위규정 개정 권고 등 72건 의결
- 9월 22일 · ‘유전자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9월 23일 · 국가인권위원회 국·영문 브로슈어(국문) 제작
- 9월 30일 · <인권관례소식> 제29호 발간·배포(120부)

## 2004년 10월

- 10월 1일 · 월간 <인권> 10월호(통권 14호) 발간  
· 인권교육 실천사례 및 문예작품 공모(~10.31.)
- 10월 4일 · 제18차 제3소위원회 개최  
평등권 침해(수용자 의료보험 배제) 등 57건 의결
- 10월 5일 · 한국영상자료원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에 <여섯 개의 시선> 프린트 1벌 기증
- 10월 7일 · 10월 직원월례조회, 여성학자 오한숙희 직원특강  
· 인권논문 공모 접수, 총 15편 접수
- 10월 8일 · 제8차 상임위원회 개최  
『출입국관리법』 『교육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등 4건 처리
- 10월 11일 · 제19차 전원위원회 개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공로연수 실시 차별 등 7건 처리  
· 제28차 제1소위원회 개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권고  
· 제22차 제2소위원회 개최  
정신지체장애인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피진 정인에 대하여 경고·주의 권고(서울지방경찰청, 강동경찰서) 등 총 99건 처리  
· 교육인적자원부와 2005년 예산 등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협의
- 10월 12일 · 제29차 제1소위원회 개최  
구금시설 내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권고 등
- 10월 13일 · 제9차 상임위원회 개최

|         |                                                                                               |
|---------|-----------------------------------------------------------------------------------------------|
|         | 색각이상자의 고용 차별 연구과제 수의계약체결(안) 원안 의결                                                             |
| 10월 15일 | · 2004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수감(국회 법사위 회의실)                                                            |
| 10월 16일 | · 공보 제2권제5호 발간· 배포(검·경, 시민단체 등 1300부)                                                         |
| 10월 18일 | · 김창국 위원장, Mr. 이스칸다 후센 인도네시아 인권연구개발청장(Dr. 아디 산티카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연구센터 소장, Mr. 마루아할 시만준탁 조사기획과장) 접견 |
|         | · 제19차 3소위원회 개최                                                                               |
|         |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시 남녀 응시연령 차별 개정권고 등 49건 처리                                                        |
| 10월 19일 | · 김창국 위원장, 신임인사차 내방한 임선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접견                                                      |
|         | ·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및 인권교육 관련 전문가 회의 참가(이석준·정영선·강명숙, 10.19.~24.)              |
|         | · 2004년 국외 실무연수 ‘외국인노동자 차별개선을 위한 선진제도 연구’(정병준 외 8명, 10.19.~28.)                               |
| 10월 20일 | · ‘대구지역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강좌’ 실시(2일간, 15개 단체 33명 참석)                                                |
| 10월 21일 | · <인권상당 가이드북2> 제작 완료                                                                          |
|         | · 제10차 상임위원회 개최                                                                               |
|         | NAP환경권 기초현황 실태조사 계약체결건 원안 의결                                                                  |
| 10월 22일 | · 2004 추계 체육대회(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                                                                   |
| 10월 25일 | · 제20차 전원위원회 개최                                                                               |
|         | 민법 중 개정법률안 관련 개정 권고 등 5건 처리                                                                   |
|         | · 제30차 제1소위원회 개최                                                                              |
|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법률안 검토                                                             |
|         | · 제23차 제2소위원회 개최, 총 53건 처리                                                                    |
| 10월 27일 | · 제11차 상임위원회 개최                                                                               |
|         | 국민인권의식조사 계획(안) 수정 의결                                                                          |
|         | ·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심포지엄 개최                                                          |
|         | · 인권교육연구학교 중간 발표회의 개최, 성남오리초등학교의 인권교육연구학교 운영 중간보고                                             |
| 10월 28일 | · 서울 중구 장충동 경동교회내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검정고시, 문화적응 교육실시)인 ‘뚝배학교’ 방문(김창국 위원장, 최영애 상임위원)              |
|         | · 재외탈북자 실태파악을 위한 중국(선양, 옌지) 방문(박경서 상임위원, 서보혁,                                                 |

- 10.28.~ 11.1.)
- 10월 30일 · <인권판례소식> 제30호 발간· 배포(120부)

## 2004년 11월

- 11월 1일 · 제20차 제3소위원회 개최  
채용과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등 총 58건(보고 1, 논의 2, 의결 55건) 처리  
· 월간 <인권> 11월호(통권 15호) 발간  
· 인권용어집 발간(320부)
- 11월 2일 · 우수논문 및 논문공모 심사 실시
- 11월 3일 · <여섯 개의 시선> 네가필름 한국영상자료원에 위탁보존
- 11월 5일 ·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실무운영단평가회의 개최
- 11월 8일 · 제4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진정사건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2건 기각 처리  
· 제21차 전원위원회 개최  
장애를 이유로 한 승진배제 관련 권고 등 6건 처리  
· 제31차 제1소위원회 개최  
실업계고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을 부정입학자로 오인하게 한 해당교수 징계 권고 등  
· 제24차 제2소위원회 개최  
체포통지를 지체하거나 부당하게 면회시간을 제한하는 관행 개선 권고 등 총 53건(인용 5, 기각 21, 각하 22, 조사 중지 3, 합의 종결 2) 처리
- 11월 9일 ·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발간· 배포(각 실과, 국회 등 250부)  
· 인권교육연구학교 경남의령초등학교 중간 보고회 실시
- 11월 10일 · 김창국 위원장(강명득 사무총장직무대리),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최재천 간사, 이은영·양승조·이원형 의원 등) 참석  
· 구금시설 방문 조사 관련 법무부에 협조 공문 발송(휴대전화 및 사진기 반입금지 조치에 대한 재발방지 요청)
- 11월 11일 · 제11차 상임위원회 개최  
직권조사 계획(인천시장 굴비상자, 텔런트 병역비리, 불량만두과동 등 피의사

|         |                                                                                                                                                                                                                                                                                                                       |
|---------|-----------------------------------------------------------------------------------------------------------------------------------------------------------------------------------------------------------------------------------------------------------------------------------------------------------------------|
|         | <p>실 공표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연구학교 인천송도초등학교 중간 보고회 실시</li> </ul>                                                                                                                                                                                                            |
| 11월 12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이주기구(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은디오로 온디아예(Ms. Ndioro Ndiaye) 부사무총장, 브루스 리드(Mr. Bruce Reed) IOM 마닐라 지역사무소장, 고현웅 IOM 서울사무소장 면담(김창국 위원장, 강명득 사무총장직무대리, 나영희 교육협력국장)</li> <li>· 봉함용 봉투 비치 관련, 법무부에 협조 공문 발송(봉함용 봉투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시설측에서 봉투를 제공하도록 요청)</li> </ul> |
| 11월 13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가 인권기구 활동상황 파악 및 교류협력을 위하여 그리스, 이집트 방문(김만흠 위원, 진석규 행정지원국장 외 2인, 11.13.~20.)</li> </ul>                                                                                                                                                                                    |
| 11월 14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지역 인권 관련 기관 활동상황 파악 및 교류협력을 위하여 태국, 홍콩 방문(박경서 상임위원 외 2인, 11. 14.~19.)</li> </ul>                                                                                                                                                                                          |
| 11월 15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P 사회적 소수자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분과회의 개최</li> </ul>                                                                                                                                                                                                                             |
| 11월 16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방한하는 라프트(RAFTO) 인권재단 얀 람스타드(Jan Ramstad) 인권본부장 등 2명 면담, 라프트 인권상 소개, 한국의 인권 및 탈북자 관련 등 논의(김창국 위원장, 최영애 상임위원)</li> </ul>                                                                                                                                         |
| 11월 17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성희롱 예방교육 실시</li> </ul>                                                                                                                                                                                                                                       |
| 11월 18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면전진정 가이드북2&gt; 제작</li> <li>· 태국 방콕, 테러리즘의 영향과 반테러리즘 조치에 관한 아시아회의 참가(최승철·박재만, 11.18.~21.)</li> </ul>                                                                                                                                                                      |
| 11월 19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강사단 워크숍(올림픽파크텔, 11.19.~20.) 개최, 인권침해 및 차별 관련 권고결정례 및 인권교육 방법 등 논의</li> </ul>                                                                                                                                                                                             |
| 11월 20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1차 제3소위원회 개최</li> <li>· 하자보수공사 종류에 의한 산재보상 차별 등 총 34건 처리</li> <li>·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시민사회포럼에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GDs) 관련 아시아 지역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참가(나영희 국장, 11.20.~26.)</li> </ul>                                                                                                     |
| 11월 22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부락해방동맹(部落解放同盟) 사이타마 연합회 나가시마 타이지로 부위원장 외 11명 면담(김창국 위원장, 박경서·최영애 상임위원)</li> <li>· 제22차 전원위원회 개최</li> <li>· 행복추구권 침해(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문제 제도개선) 등 4건 처리, 인권위 3년간 활동보고 및 위원간담회</li> </ul>                                                                                        |

- 제33차 제1소위원회 개최
- 제22차 제3소위원회 개최
-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시 장애인에 대해 대필제 등 필요한 조치 권고 등 104건(보고 2, 의결 99, 논의 3) 처리
- 11월 23일 · 제25차 제2소위원회 개최
- 비변호인과의 접근교통권 침해 관련 재발방지대책 권고 등 총 34건(인용 1, 기각 23, 각하 10) 처리
- ‘지문 등 생체정보 이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11월 24일 · 제13차 상임위원회
-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 소수자 인권 기초현황’ 등 2건 의결
-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3주년 성과 보도자료 배포
- 11월 25일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3주년 기념행사
- 11월 29일 · ‘영·유아기 장애아동교육권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 11월 30일 · CI응용시스템 재정비 및 추가개발
- ‘법정장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실시
- ‘정신과 시설 인권현황 공청회’ 개최
- <인권판례소식> 제31호 발간·배포(120부)
- 스웨덴 라울 왈렌버그(Raoul Wallenberg) 인권 및 인권법 연구소 주관으로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중간 및 고위간부 훈련과정 참가(오병훈, 11.30.~12.12.)

## 2004년 12월

- 12월 1일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월간 <인권> 12월호(통권 16호) 발간
- 차별을 주제로 한 인권 포스터 제작(안상수 등 16명 작가)
- 12월 2일 ·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활용 워크숍 개최(초정약수스파텔, 12.2.~3.)
- 12월 3일 · <인권백서> 발간
- 12월 4일 · <인권상담사례집> 제작

|         |                                                                                                                                                 |
|---------|-------------------------------------------------------------------------------------------------------------------------------------------------|
| 12월 7일  | · ‘학령기 장애아동교육권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
| 12월 8일  | · 제23차 제3소위원회 개최<br>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등 65건(보고 2, 의결 6건) 의결<br>· ‘비정규직법안 관련 간담회’ 개최,                                                           |
| 12월 10일 | · 제56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사 개최(배움터)<br>· 인권포스터전 개최(12. 10.~30.), 위원회 청사 1층 로비                                                                          |
| 12월 13일 | · 제23차 전원위원회 개최<br>의문사위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등 4건 의결<br>· 제14차 상임위원회 개최<br>직권조사 계획(밀양 여중생 성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의결                                       |
| 12월 16일 | · 공보 제2권제6호 발간· 배포(검·경, 시민단체 등 1,300부)                                                                                                          |
| 12월 17일 | · 원폭 피해자 2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
| 12월 22일 | · 김창국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박경서 상임위원 이임식<br>· 제26차 제2소위원회 개최<br>‘알몸신체수색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권고 등 총 178건(인용 2, 기각 35, 각하 137, 조사 중지 2, 합의 종결 2) 의결 |
| 12월 23일 | · 인권동화 활용 워크숍 개최, 인권교육 실천사례와 플래시 작품 수상자 시상식 거행<br>·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도, 상임위원 김호준, 정강자, 위원 이해학, 나천수, 정인섭, 최금숙 임명                                    |
| 12월 24일 | · 최영도 위원장 제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취임식                                                                                                                   |
| 12월 27일 | · 제24차 전원위원회 개최<br>국가인권위원회 운영개요 보고 등 총 4건 처리<br>· 2004년 보도자료집 및 기사모음집 발간                                                                        |
| 12월 28일 | · 최영도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심사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                                                                                                    |
| 12월 29일 | ·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 12월 31일 | · 2004년 종무식, 표창장 전수(모범공무원 1명, 우수공무원 1명, 업무유공 13명)<br>· 월간 <인권> 2005년 1월호(통권 17호) 발간<br>· <인권판례소식> 제32호 발간· 배포(120부)                             |

## 5.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서울선언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2004. 9. 14.~17. 서울

### 서울선언문

#### | 서문(Preamble) |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주제로 하였다. 이 대회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의장의 자문과,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지원 및 협력 하에, 국가인권기구 아시아태평양포럼과 라 프랑코포니(Agence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의 재정지원을 받아 2004. 9. 14.~17.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국가인권기구들은 이번 대회를 훌륭히 조직화한 한국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를 표하며, 기조발제자들의 고무적인 발표와 알찬 토론 및 숙고에 사의를 표한다.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여기에서 서울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합의한 세계인권선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세계적인 조약들을 상기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엔인권헌장과 지역기구를 위시한 그들의 노력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국제적 조약들이 그 조항들을 통해 각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법치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틀 내에서 예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재인식하며,

분쟁과 테러 위협, 대테러 조치로 인해, 국제사회와 개별국가 및 그 국민들이 심각하고 전례가 없는 인권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반추하며,

분쟁과 테러의 위협에 관한 유엔새천년선언(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1269(1999), 1373(2001), 1456(2003), 국제적 테러리즘 제거를 위한 유엔총회 선언문(A/RES/49/60, annex),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문 58/187(2003), 인권과 테러리즘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문 58/174(2003) 및 인권위원회와 지역기구들의 관련 결의문 등, 분쟁 및 테러 위협과 관련한 유엔기구의 많은 결의문과 선언들, 그리고 유엔의 테러리즘 자금조달 금지 국제협약(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을 상기하며,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각국이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난민·인도주의 법을 완전히 준수하면서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들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것에 대해 연대를 표하며,

유엔인권위원회, 특히 국가비상상태에 관한 일반적 언급 29번(General Comment Number 29)(2001)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기구와 특별절차, 그리고 지역기구 및 메커니즘의 결정과 발견에 의해 제공되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지침과 법체계(jurisprudence)를 환영하며,

2002년 코펜하겐선언에서 언급된 학살과 인종청소 및 무력분쟁을 고조시키는 상

황에서의 초기경보 제공과 같은 국가인권기구들의 특별한 역할을 강조하며,

국제적 인권기준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용시킴으로써 인권보호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국가인권기구들의 특별한 역할을 인식하며, 나아가,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의 특별한 법적 토대와 다원주의적 구성으로 인해 국가인권기구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권력과 시민사회간의 대화를 통해 분쟁해결에 공헌할 수 있음에 주목하며,

국제인권시스템에서의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참여 강화를 촉구하며,

세계대회는 다음을 선언한다 :

테러리즘은 인권 전반에 대해 끔찍한 영향을 주는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생명권과 개인안보에 영향을 끼친다. 인권과 법치에 대한 존중은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기본적인 수단이다. 국가안보와 개인의 인권보호는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연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국이 채택한 대테러조치들은 국제인권·난민·인도주의 법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들은 분쟁 상황과 대테러 상황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기본적 인권에 대한 압력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의무의 효과적인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들은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국가인권기구간 특별장치의 개발을 비롯하여 정보 및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 | 일반원칙 |

국가인권기구는 안보 관련 법제정의 인권적 측면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논평을 하고, 불공평과 부정의, 불평등, 불안정을 바로잡아 테러와 폭력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장기적 조치 및 정책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조기경보 메커니즘과 관련한 운영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각국이 조기경보를 위한 메커니즘과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내부와 사회내부의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실행하도록 촉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폭력분쟁시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특별법정과 정책결정기구의 설치에 반대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기구는 폭력분쟁의 맥락에서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파악해야 한다.

그 결과, 국가인권기구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인권 및 인도주의법과 관련한 권고를 제공하거나, 혹은 중재와 같은 전통적 분쟁 해소방법은 물론 대안적 방법의 활용을 적용하고, 장려하며, 지원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와 각국은 이런 분쟁 해소방법을 통합하여 평화적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책을 위한 계획과 전략,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전략은 진실과 화해과정의 요소들과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가 해야 할 역할들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 기금의 설립과 적절한 보상금 지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보다 폭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인권 관련 관심사항을 제시하여 폭력분쟁의 명시적 주장뿐 아니라 그 저의에 대해 주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

해야 한다.

분쟁과 대테러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는 인권문화와 기회균등, 다양성을 증진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 분쟁과 대테러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국가인권기구들은 불공평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비롯한 사회 속의 불공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은 분쟁과 테러리즘을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권리들의 법적 재판가능성(justiciability)을 증진시키고, 취약집단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대테러조치의 차별적 영향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보편적 인권의 전체 범위의 일부로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ESC권리 국제규약 하에서의 의무를 보다 잘 보장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인권향유를 어렵게 하는 부패문제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국가들이 식량안보를 확실히 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이후 테러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의 발전을 막아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들은 각국이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 설립을 결의한 UN총회 결의안(A/57/265)에 따라 빈곤퇴치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들은 국가가 ESC권리 국제규약상의 의무를 완수하도록 촉구해야 한

다. 국가인권기구들은 각국이 ESC권리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도록 장려한다.

### | 분쟁과 대테러 :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법치 |

국가인권기구는 국가에게 모든 형태의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상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들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를 비준하도록 장려된다. 국가인권기구들은 각국이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약(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비준하고, 이 규약을 따르는 국내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기구는 분쟁 이전과 분쟁기간, 분쟁 이후에 CP권리에 대한 효과적 보호를 강조하고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쟁 이전 시기에 국가인권기구는 인종혐오와, 차별, 기본적 권리의 불균등한 제한과 같은 징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분쟁기와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향유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은 반드시 필수적이며 위협의 크기에 비례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들이 이런 조치들의 제한적이고 정당한 적용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는 각국에 대테러법 제정이 성급하게 또는 공적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인권기구는 합법적 절차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본적 의무사항, 인간 존엄성의 존중, 고문과 부당한 대우 및 임의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 침해될 수 있는 권리와 특히 침해되어서는 안 될 기본적 권리의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분쟁 이후 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불처벌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며, 형법의 소급적용을 막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국가인권기구는 죄형법정주의원칙(principle of legality)과 테러리즘 및 테러리즘 관련 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국가인권기구는 대테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국가인권기구는 테러의 원인과 가장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에 대한 대중적 개입과 토론, 의식증진과 같은 예방적 활동을 해야 한다. 사법부, 공공행정부, 안보군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여기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국가인권기구는 미디어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정기적 검토를 통해 소수자와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영향을 비롯한 대테러조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한다.

### | 분쟁과 테러의 맥락에서의 이주문제 |

테러리즘과 분쟁상황은 이주노동자와 출신국을 떠나 있는 사람들, 국내 실향민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끼쳐 왔다.

이주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기준이 존재하지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을 비준하지 않은 나

라들에 수용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이주노동자와 난민, 망명자, 국내실향민, 인신매매 피해자에 관한 국제기준의 국가적 이행을 보장하고 증진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국가가 비준하도록 옹호하고,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이슈들, 특히 여성 및 아동 이주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고려할 때, 조약기구 감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가 무력분쟁에서의 아동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의 추가규정을 비준하도록 장려한다.

이민자 송출국, 경유국, 수용국의 국가인권기구들은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들 사이의 상호적, 지역적 협력관계를 수립하도록 권장된다.

국가인권기구들은 UN 난민판무관 및 다른 UN 지역기구, NGO 등과 협력하여 난민과, 망명자, 이주노동자, 국내 실향민의 경제·사회·정치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경찰과 이민당국의 공정한 절차 및 대우, 수용환경, 서비스의 제공, 고용조건, 가족화합 문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가인권기구는 이주노동자와 난민, 망명자, 국내실향민, 인신매매 피해자, 특히 여성이주자들, 그리고 이들의 재통합을 위한 인권의식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 | 분쟁의 맥락에서 여성의 권리 |

국가인권기구는 잘 보이지 않고, 인식되지 않는 분쟁의 맥락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위한 상담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통해 의식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여성의 경제적 자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분쟁기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벌이며, 진정을 접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가 여성난민과 여성 국내 실향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여기에는 진정접수 메커니즘의 제공, 난민캠프와 국내실향민캠프에 대한 조사, 난민지위 획득 전과 강제 본국송환 전의 수용시설에 있는 여성들로부터 받은 진정에 대한 감시활동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기구들은 여성난민과 여성 국내 실향민을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재건 및 재활 프로그램의 수립과 이행과정이 여성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평화과정의 일환으로 수립된 조사위원회 또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폭력에 대처해야 하며, 공정한 여성의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

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협상시 국가는 남녀평등과 여성우대조치를 위한 헌법 조항을 입법하도록 해야 한다.

#### | 서울 결의(Seoul Commitment) |

이 선언문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인권기구는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

- (a) 이 선언에 명시된 대로 국가 수준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b)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기구들간의 지역적 협력을 도모한다.
- (c) 자국정부로 하여금 유엔에서 대테러조치의 국제인권기준 부합 여부를 감시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설립을 지지하도록 한다.
- (d) 2004년 5월에 개최되는 ICC 연례회의에서 각국 및 지역에서의 후속활동에 대해 보고한다.
- (e) 서울선언의 향후 이행방법을 구체화하도록 ICC에 요청한다.

## 6. 위원회 발간자료

| 연번 | 자 료 명                                                      | 저(편)자                                              | 발행시기     | 담당부서     |
|----|------------------------------------------------------------|----------------------------------------------------|----------|----------|
| 1  |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설명회(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 2004. 2. | 국내협력과    |
| 2  |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2004. 2. | 정책총괄과    |
| 3  |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 한국성폭력상담소<br>(책임연구원 : 권인숙)                          | 2004. 3. | 인권연구담당관실 |
| 4  |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                                  | 한국도시연구소<br>(책임연구원 : 신명호)                           | 2004. 4. | 인권연구담당관실 |
| 5  | 200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4. 4. | 정책총괄과    |
| 6  |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br>: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 2004. 4. | 인권연구담당관실 |
| 7  |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br>: 국가인권위원회 공청회(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 2004. 5. | 정책총괄과    |
| 8  | 재외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br>: 국가인권위원회 공청회(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 2004. 6. | 정책총괄과    |
| 9  | Report on main activities in 2003 & Business plan for 2004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 2004. 7. | 국제협력담당관실 |
| 10 |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제8차 연례회의 참가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4. 7. | 국제협력담당관실 |
| 11 | 외국 차별금지법령집                                                 | 국가인권위원회                                            | 2004. 7. | 국제협력담당관실 |
| 12 | Anti-Discrimination Laws of Foreign Countries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 2004. 8. | 국제협력담당관실 |
| 13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NAP 수립을 위한 아동권 기초현황조사                       | 한국사회조사연구소<br>(연구책임자 : 이용교)                         | 2004. 8. | 정책총괄과    |
| 14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NAP 수립을 위한 교육권 기초현황 조사                      | 한국교육개발원<br>(연구책임자 : 박재윤)                           | 2004. 8. | 정책총괄과    |
| 15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nual Report 2003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 2004. 9. | 정책총괄과    |

| 연번 | 자 료 명                                                                                                                   | 저(편)자                                                    | 발행시기     | 담당부서     |
|----|-------------------------------------------------------------------------------------------------------------------------|----------------------------------------------------------|----------|----------|
| 16 |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 구정화 등저,<br>국가인권위원회 엮음                                    | 2004. 9. | 인권교육담당관실 |
| 17 | 유전자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자료집)                                                                                     | 정규원 등                                                    | 2004. 9. | 정책총괄과    |
| 18 | 인권상담 가이드북 2                                                                                                             | 국가인권위원회<br>인권상담센터 지음                                     | 2004.10. | 인권상담센터   |
| 19 |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자료집)                                                                            | 김태천 등저                                                   | 2004.10. | 법제개선담당관실 |
| 20 | 인권상담사례집(2004)                                                                                                           | 국가인권위원회<br>인권상담센터 엮음                                     | 2004.11. | 인권상담센터   |
| 21 | 지문 등 생체정보이용, 무엇이 문제인가 :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자료집)                                                                                | 이은우 등                                                    | 2004.11. | 정책총괄과    |
| 22 | 영·유아기 장애아동교육권의 쟁점과 대안 : 장애인교육권 보호·향상을 위한 1차 토론회(자료집)                                                                    | 조광순 등                                                    | 2004.11. | 정책총괄과    |
| 23 | 인권백서 : 2004 제1집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br>발간위원회                                    | 2004.11. | 정책총괄과    |
| 24 | 법정장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 서동우 등                                                    | 2004.11. | 인권연구담당관실 |
| 25 | 정신과 시설 인권현황 공청회(자료집)                                                                                                    | 현명호 등                                                    | 2004.11. | 조사기획담당관실 |
| 26 | 기업 대상 차별예방 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br>한국여성연구원                                       | 2004.11. | 인권교육담당관실 |
| 27 |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결과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4.11. | 국제협력담당관실 |
| 28 | The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National Human Rights<br>Commission Republic of<br>Korea | 2004.11. | 국제협력담당관실 |
| 29 |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 김중미 등저, 윤정주 그림                                           | 2004.11. | 인권교육담당관실 |
| 30 | 피부색은 달라도 모두가 평등합니다 : 외국인노동자 인권교육 안내서                                                                                    | 이란주, 설동훈                                                 | 2004.11. | 인권교육담당관실 |
| 31 | 각국의 국가이행보고서에 대한 UN 권고<br>1.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관련국제규약<br>2. 시민적및정치적권리관련국제규약<br>3. 여성차별철폐협약 4. 아동권리협약<br>5. 인종차별철폐협약 6. 고문방지협약 | 국가인권위원회                                                  | 2004.11. | 법제개선담당관실 |

| 연번 | 자 료 명                                                                                                 | 저(편)자                                              | 발행시기     | 담당부서     |
|----|-------------------------------------------------------------------------------------------------------|----------------------------------------------------|----------|----------|
| 32 | 우리나라 국제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UN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 2004.12. | 법제개선담당관실 |
| 33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자료집)                                                                                      | 이완희 등                                              | 2004.12. | 정책총괄과    |
| 34 | 국제인권장전 : 유엔인권해설집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 2004.12. | 국제협력담당관실 |
| 35 | 고문방지 : 유엔인권해설집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 2004.12. | 국제협력담당관실 |
| 36 | 유엔특별보고관 17가지 관련 FAQ : 유엔인권해설집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 2004.12. | 국제협력담당관실 |
| 37 | 국가인권기구 :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 설치와 강화 관련 안내서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 2004.12. | 국제협력담당관실 |
| 38 |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 안경환 저,<br>인권교육담당관실                                 | 2004.12  | 인권교육담당관실 |
| 39 |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제9차 연례회의 참가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4.12. | 국제협력담당관실 |
| 40 | Final Report of the 9th Annual Meeting – The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 2004.12. | 국제협력담당관실 |
| 41 | 2004 보도자료집 : 2003. 12. 1. – 2004. 11. 30.                                                             | 국가인권위원회                                            | 2004.12. | 공보담당관실   |
| 42 | 2004 기사모음집 : 2003. 12. 1. – 2004. 11. 30.                                                             | 국가인권위원회                                            | 2004.12. | 공보담당관실   |
| 43 |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 2004.12. | 법제개선담당관실 |
| 44 | 색각이상자(색맹,색약)의 고용 등에 대한 차별 연구                                                                          | 한림대학교<br>(책임연구원 : 주영수)                             | 2004.12. | 차별조사1과   |
| 45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침해분야: 제1집 (2004)                                                                     | 인권침해조사국                                            | 2004.12. | 인권침해조사1과 |
| 46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차별행위분야: 제1집 (2004)                                                                     | 차별조사국                                              | 2004.12. | 차별조사1과   |
| 47 | 학령기 장애아동 교육권의 쟁점과 대안: 장애인 교육권 보호·향상을 위한 2차 토론회(자료집)                                                   | 문상중 등                                              | 2004.12. | 정책총괄과    |
| 48 |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보장방안과 쟁점: 장애인 교육권 보호·향상을 위한 3차 토론회(자료집)                                            | 김주영 등                                              | 2004.12. | 정책총괄과    |
| 49 | 우수논문 및 인권논문 수상집 2004                                                                                  | 국가인권위원회                                            | 2004.12. | 인권연구담당관실 |
| 50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분야: 제11집(2004)                                                                     |                                                    |          |          |

## 7. 보도자료(2004.1.1.~12.31.)

| 보도자료명                       | 보도일자       |
|-----------------------------|------------|
| 국가는 치료소홀로 사망한 수용자에 배상해야     | 2004-01-02 |
| 적법절차 아니라면 경찰의 압수도 인권침해      | 2004-01-05 |
| 독학사도 차별 없이 교사자격 취득해야 한다     | 2004-01-06 |
| 국내거주 화교 77%, "취업에서 차별받고 있다" | 2004-01-07 |
| 경찰관의 과도한 긴급체포는 인권침해         | 2004-01-08 |
| 차별적 국가기술시험 응시자격 사라진다        | 2004-01-09 |
| 동티모르 대통령 영부인 및 외무장관, 인권위 방문 | 2004-01-12 |
|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 2004-01-13 |
| 조교수를 채용용 심사없이 해임하는 것은 차별    | 2004-01-15 |
| 수용자 진료시 외부 의료진 적극 활용해야      | 2004-01-19 |
| 교도소 수용자도 편안하게 잠잘 권한이 있다     | 2004-01-26 |
| 미결수용자도 종교집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 2004-01-27 |
| "금속테 아닌 안경 휴대 허가가 원칙" 권고수용  | 2004-01-29 |
| 인권위 "2004년도 업무설명회" 개최       | 2004-02-01 |
| 체포시 형사피의자 폭행 경찰관 검찰에 수사의뢰   | 2004-02-02 |
| 건강검진결과발급대장의 관행적 열람은 사생활 침해  | 2004-02-09 |
|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          | 2004-02-11 |
| 법무부 징벌계구규칙안 수정의견 표명         | 2004-02-12 |
| 혼혈인 73.3%, "피부색 때문에 놀림받았다"  | 2004-02-16 |
| 정치관계법 및 그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의견표명  | 2004-02-17 |
| 채용시 특정분야경력 요구는 평등권 침해       | 2004-02-18 |
| 경찰관의 수배 해제 미조치는 인권침해        | 2004-02-19 |
| 조사실 수용중이라도 기본권 보장되어야        | 2004-02-20 |
| 교도소 수용자, 연속징벌 및 감독소홀로 사망    | 2004-02-20 |
|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 권고      | 2004-02-23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기획단 발족         | 2004-02-24 |
| 장애인특별전형시 장애유형 제한은 응시기회 차별   | 2004-02-25 |
| 김창국 위원장 국제조정위원회 대표위원 선출     | 2004-02-26 |
| 인권위 검찰총장에 현직검사 수사의뢰         | 2004-03-02 |

| 보도자료명                                  | 보도일자       |
|----------------------------------------|------------|
| 재야인사 집회참석 방해 경찰관 검찰에 고발                | 2004-03-03 |
| 자백 얻기 위해 피의자에 가혹행위 서초경찰서 경찰관 검찰총장에 고발  | 2004-03-04 |
|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 조사                    | 2004-03-08 |
| 수용자 연대책임 전가는 인권침해                      | 2004-03-09 |
| 교도소내 징벌방 1인당 0.9평으로 넓혀라                | 2004-03-10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회               | 2004-03-17 |
| 인권위, 인권정책관련 관계기관 협력체제 강화               | 2004-03-17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 2004-03-18 |
| 인권위,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실시                | 2004-03-22 |
| 인권위, 기간제교원에 대한 방학 중 보수와 퇴직금 지급권고       | 2004-03-25 |
| “경찰관의 수배해제 미조치는 인권침해” 권고 수용            | 2004-03-31 |
| 개인택시면허발급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는 평등권 침해        | 2004-04-01 |
| 전과자의 사면복권정보 누락처리는 인권침해                 | 2004-04-06 |
|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접견교통권 침해 경찰관 징계 및 채임자 경고 권고 | 2004-04-06 |
| ‘군대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 2004-04-08 |
| 숙직실 등 밀실조사는 인권침해                       | 2004-04-10 |
| 피의자 가족에게 체포구속 사실 통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 2004-04-12 |
| 교도소 수용자 사생활 비밀 침해 안돼                   | 2004-04-13 |
| 인권위, 지역순회 인권상담 및 홍보활동                  | 2004-04-20 |
|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및 인격적 모욕은 인권침해     | 2004-04-21 |
| 직장에 「체납과태료징수 안내문」 발송 인권침해              | 2004-04-22 |
|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시민을 찾아갑니다                   | 2004-04-27 |
| 김창국 위원장, 만기출소자 민간갱생보호시설 방문             | 2004-04-27 |
| 인권위,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 실시                | 2004-04-28 |
| 납북자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파악 필요                 | 2004-04-29 |
| 인권위, 부산교도소장에게 “위암수용자 항암치료비 부담” 권고      | 2004-05-03 |
| 피의자 소재 파악 과정에서 동명이인이 피해받지 않아야          | 2004-05-04 |
|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북도민을 찾아갑니다                   | 2004-05-04 |
| 독학사도 교사자격 취득 길 열려                      | 2004-05-06 |
| 방법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해야  | 2004-05-10 |
| ‘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 2004-05-11 |

| 보도자료명                                          | 보도일자       |
|------------------------------------------------|------------|
| 호봉산정시 비정규직 경력 인정 않는 것은 차별                      | 2004-05-12 |
|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원도민을 찾아갑니다                           | 2004-05-12 |
| 긴급체포 요건 해당 여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 2004-05-13 |
| 장애인고용의무에 있어 적용제외 폐지해야                          | 2004-05-17 |
| 서울YMCA 여성회원의 총회의결권 불허는 평등권 침해                  | 2004-05-18 |
| 국가인권위원회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개최                    | 2004-05-19 |
|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 주제로 공청회 개최                     | 2004-05-20 |
| TV선공개 사용, 수용자 연대책임 묻지 않기로                      | 2004-05-21 |
| 구속전피의자심문신청권 침해 경찰관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권고         | 2004-05-24 |
| 피의자가족에 체포사실 통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 2004-05-25 |
| 원격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배제는 평등권 침해                       | 2004-05-26 |
| 자연채광과 신선한 공기 향유할 권리 인정                         | 2004-05-27 |
| 일용잡급직 영양사 급여를 식품위생직공무원 영양사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 2004-05-31 |
|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종교집회종교교육 참여 허용                     | 2004-06-01 |
| 인권위,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04-06-02 |
| 정해진 방법 외 계구사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 2004-06-03 |
| ‘과천경찰서 재야인사 감금사건’ 재정신청                         | 2004-06-07 |
| 고졸출신 경력자 특급전력기술자 배제는 평등권 침해                    | 2004-06-08 |
| 인권위 진정 1만건 넘어                                  | 2004-06-09 |
| 환자 장기 입원 등 신체의 자유 침해한 부산지역 정신병원장 검찰총장에 고발      | 2004-06-10 |
|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가 신상정보 누출 염려 없이 정규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 2004-06-14 |
| 대학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 개선 필요                           | 2004-06-16 |
| 안동교도소 수용자 감독소홀로 사망                             | 2004-06-17 |
| 나이 어린 피의자에게 폭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는 야간조사는 인권침해        | 2004-06-18 |
| 인권위 차별사건 진정 “조사 중 해결” 증가                       | 2004-06-21 |
|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 등사거부는 알 권리 침해                     | 2004-06-22 |
| 불심검문은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 2004-06-23 |
| 폭언한 수용자에게 가혹행위한 교도관 경고                         | 2004-06-24 |
| 달라지는 구금시설, 인권위 권고 수용률 97%                      | 2004-06-28 |
| 얼굴홍터에 대한 등급지정 남녀동등해야                           | 2004-06-29 |
| 김창국 위원장, 무의탁 장애인 자활보호시설 방문                     | 2004-06-29 |

| 보도자료명                                             | 보도일자       |
|---------------------------------------------------|------------|
| 인권위, ‘재외 탈북자 인권현황과 과제’ 공청회                        | 2004-06-30 |
| 응급치료가 덜 끝난 피의자 연행은 인권침해                           | 2004-07-05 |
| 정신질환 수용자, 징벌 위주 처우 개선할 것                          | 2004-07-06 |
| 불법집회를 우려해 피해자들을 강제로 경찰버스에 태워 먼 곳에 하차시킨 것은 신체자유 침해 | 2004-07-07 |
|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권리보장 위한 정책 필요                      | 2004-07-08 |
| 규정준수 않은 피의자 면회금지는 인권침해                            | 2004-07-09 |
| 피의자 지문 강제채취는 인권침해                                 | 2004-07-12 |
|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제한은 평등권침해                              | 2004-07-13 |
| 입국불허 대상 외국인에게 이의신청권 부여해야                          | 2004-07-15 |
| 도서관 이용시에도 시민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 2004-07-19 |
| 수용자 개인정보 임의수집 허술한 관리는 인권침해                        | 2004-07-23 |
| 최영애 상임위원 임명                                       | 2004-07-23 |
| 인권위, “기간제 교사 퇴직금 등 지급권고 미수용” 공표                   | 2004-07-27 |
| 해외파견교사의 차등적 나이제한은 평등권침해                           | 2004-08-02 |
| 순직·전사 변경처리 미통지는 유족의 알 권리 및 명예권침해                  | 2004-08-05 |
| 헌혈문진표의 동성간 성접촉 여부 질문 합리화해야                        | 2004-08-09 |
| 인권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제안창구’ 개설                | 2004-08-10 |
| 2004년 상반기 검·경사건 권고수용율 75%                         | 2004-08-17 |
| 인권위, “분쟁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주제로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개최  | 2004-08-19 |
| 혼인신고 위해 출국한 중국동포의 입국을 허용하라                        | 2004-08-20 |
| 수사관이 임의로 한 피의자 면회금지는 인권침해                         | 2004-08-23 |
|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2004-08-24 |
| 재판이 진행중인 병역기피 혐의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는 인권침해               | 2004-08-25 |
| 수용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무관 처방에 따라야                         | 2004-08-30 |
| 피의자 주거진술서 작성전 진술거부권 고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 2004-09-01 |
| 수용자 서신 분실되는 일 없어야                                 | 2004-09-02 |
| 인권위,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개최                          | 2004-09-06 |
| 교정작품전시회 출품 수용자의 저작권 보호해야                          | 2004-09-09 |
| 인권위, 제9차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 개최               | 2004-09-11 |
| 대용감방의 인권침해 즉각 해소해야                                | 2004-09-13 |
| 김창국 위원장·UN인권고등판무관 오늘 일정                           | 2004-09-14 |
| 제7차세계대회개막식 “분쟁과 테러도 인권을 통해 극복해야”                  | 2004-09-14 |

| 보도자료명                                        | 보도일자       |
|----------------------------------------------|------------|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담               | 2004-09-16 |
|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서울 선언” 채택                    | 2004-09-17 |
| 인권위, ‘유전자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 개최         | 2004-09-22 |
| 경찰, 불심검문시 반드시 신분증 제시해야                       | 2004-09-24 |
| 연구직공무원 호봉산정시 대학강사경력 인정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           | 2004-10-04 |
| 9개 공기업, 직원채용시 나이 및 학력 제한 모두 폐지               | 2004-10-14 |
|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타지역 무사고경력 인정않는 것은 차별행위            | 2004-10-18 |
| 경찰, 수사시 장애인청소년 등 피의자의 심신상태 살펴 적절히 보호조치할 의무있다 | 2004-10-25 |
| 순경채용시 남여 응시연령 차등적용은 차별                       | 2004-10-26 |
|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 2004-10-27 |
| 경사가 급한 보도교 설치로 통행불편을 초래한 것은 인권침해             | 2004-10-28 |
| 인권위의 부산지역 정신병원장 고발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 공소제기          | 2004-10-29 |
| 법적 근거없이 수용거실내 CCTV 설치 운영은 인권침해               | 2004-11-01 |
| 부안 핵폐기장건설 추진절차 행복추구권 등 침해                    | 2004-11-09 |
| 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 의무화 필요                          | 2004-11-10 |
| 인권위, 인천시장 굴비상자, 텔런트 병역비리, 불량만두과동 사건 등 조사     | 2004-11-11 |
|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관행 사라져야                    | 2004-11-16 |
| 학생의 부정입학의혹과 관련한 유인물 배포행위는 인권침해               | 2004-11-18 |
| 피의자 가혹행위 경찰관 불구속 기소                          | 2004-11-19 |
| 인권위, ‘지문 등 생체정보 이용,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 개최    | 2004-11-23 |
|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3주년에 즈음하여                         | 2004-11-24 |
| ‘정신과시설에서의 인권문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개최      | 2004-11-30 |
| 인권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2004-11-30 |
| 인권위, ‘법정장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04-11-30 |
| 인권위,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 권고                 | 2004-12-02 |
| 인권위, ‘인권백서’ 출간                               | 2004-12-03 |
| 필기능력의 장애가 시험응시권 제한의 이유가 되어선 안 돼              | 2004-12-06 |
| 인권위 학령기 장애아동 교육권 보호·향상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2004-12-07 |
| 세계인권선언 제 56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                    | 2004-12-10 |
| 밀양여중생 집단성폭행 피해자 인권침해 직권조사 착수                 | 2004-12-13 |
| 밀양여중생 집단성폭행 피해자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발표              | 2004-12-29 |





●

국가인권위원회  
2004 연간보고서

---

인쇄일 | 2005년 4월 18일  
발행일 | 2005년 4월 20일  
발행인 | 조영환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우 100-842  
<http://www.humanrights.go.kr>  
전 화 | (02) 2125-9726  
팩 스 | (02) 2125-9728  
인 쇄 | PR프린테크 (02) 2236-8787(代)

---

비매품